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85-01

기술유출 · 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2023. 12.

특 허 청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기술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연 구 기 간 : 2023년 5월 8일 ~ 12월 8일
○ 주관연구책임자 :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 구 원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 연 구 원 : 이 혁 (인터폴 파견관 경정)
· 연구보조원 : 허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연구보조원 : 이경주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과정)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목 차

그림 목차

표 목차

요 약 문

1. 제목

기술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 간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자의 외국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체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국제공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기술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공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기술침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침해 유형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3. 연구내용

제1장에서는 기술침해와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로써 보호되는 기술의 종류를 확인하고 금지되는 침해행위와 침해 시 처벌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기술유출은 내부자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으며 인력 스카우트, 해킹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수출과 공동연구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검거 건수, 산업별 유출 건수, 유출의 동기, 처벌 현황 등을 확인하여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공조와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와 절차, 국제공조의 기본원칙과 체결현황, 최근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공조 내용,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체계, 미국의 저장통신법, 코리안데스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는 크게 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공조의 범위가 넓지만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여 소

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인터폴 공조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조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당 국가 수사기관의 재량적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실무상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사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와 주요국의 기술유출 수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유출 공조수사 사례와 사이버범죄 관련 공조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국내 사례로는 디스플레이 유출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수사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해외 사례로는 DuPont v. Kolon, US v. Ibrahim Dimson 페인 등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수사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확립하고 수사기관의 역략 활용 및 사법경찰관의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특성에 맞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4. 결론

국제공조수사는 다양한 국가와 기구가 관여하는 만큼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장기적·정책적 관점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다자간 조약) 가입, 미국의 CLOUD법 행정협정 체결, 치안협력약정을 통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단기적·사안적 관점에서는 인터폴을 적극 활용하거나 외국 수사기관과 공동수사팀을 구축하고 기술유출범죄 단속 관련 상호파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락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제공조의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출입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활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같은 국제 포럼에 참가하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유출범죄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적 범죄인 기술침해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요국의 경찰 등 수사기관 및 이민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 미국·유럽과 공동수사 및 국제공조 요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으며 기술유출범죄 국제협력센터를 신설하여 범죄실태조사, 수사 지원, 법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 U M M A R Y

1. Title

Establish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to Respond to Technology Infringement

2.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intense competition among nations to secure advanced technology, coupled with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to take the lead in advanced technolog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technology leakage crimes. Despite the need for procedures to swiftly identify, apprehend, and confiscate the proceeds of crime from foreign-based perpetrators involved in technology leakage,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overseas leakage of core technologies from South Korea.

In situations where the response manual for incidents of overseas leakage of industrial and core technologies is inadequate, it is crucial to promptly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This is necessary to minimize losses due to technology infringement and to efficiently conduct related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into incidents of technology infringement by analyzing the types of technological infringements and related legal frameworks.

3. Research content

In Chapter 1,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technology infringement was conducted. Initially, to define the content and scope of technologies eligible for protection,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protected by law were identified. Additionally, acts prohibited and the corresponding penalties for infringement were examined. Technology leakage is most commonly perpetrated by insiders, but it can also occur through activities such as personnel scouting and hacking. Furthermore, technology infringement may occur during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exports and collaborative research. Various statistics were utilized to examine the number of apprehensions, industry-specific incidents of leakage, motives behind leakage, and the current status of penalties. This comprehensive analysis aimed to provide an overall background for incidents of technology

infringement.

In Chapter 2,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onducted. Fundamentally,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and procedures, basic principles and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cent trends were examined. Additionally,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hailand was reviewed, along with the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in Europe,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in the United States, and matters concerning the Korean Desk.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can be broadly divided into cooperation through criminal justice and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has a broad scope but is relatively complex in procedure, resulting in longer processing times. On the other hand, Interpol cooperation allows for swift processing but has limitations in terms of cooperation scope, relying on discretionary collaboration from the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 Chapter 3, an analysis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functions related to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s in both domestic and major foreign countries was conducted to propose efficient investigative techniques for practical investigations. Additionally,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echnology leakage cooperation investigations and cybercrime-related cooperation cases was carried out to derive implications. Domestic cases included incidents such as display leakage and the illegal IPTV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Indonesia. International cases included DuPont v. Kolon, US v. Ibrahim Dimson, and other cases.

4. Conclus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involve various countries and organizations, requiring a multifaceted approach. From a long-term and policy perspective,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through the signing of multilateral agreements such as the Cybercrime Prevention Treaty, entering into administrative agreements like the U.S. CLOUD Act, and for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through 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s is crucial. From a short-term and case-specific perspective, actively utilizing Interpol or establishing joint investigation teams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introducing mutual dispatch mechanisms related to technology leakage crime enforcement is desirable.

In terms of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pecial law enforcement division of the Patent Office needs to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mmigration authorities. Furthermore, to facilitate the smooth extradition of criminals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s is essential. Participating in these forums can enhance information sharing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Lastly, diver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curb transnational crimes like technology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nd strengthen networks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immigration authoritie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 key countries. Simultaneously conducting joint investigations and reque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other major countries is necessary. Additionally, utilizing diplomatic channels to request cooperative investigations can be an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would be desirable, aiming to facilitate various policy tasks such as crime trend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support, and legal assistance on an international scale. This center could serve as a hub for addressing and coordinating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technology leakage crimes.

제1장 현 황

제1절 보호대상 기술의 정의와 범위

1. 개요

기술(技術)이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으로 오늘날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기술의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기술 유출', '기술 침해', '기술 탈취'에서 일컫는 기술은 재산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요하는 기술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들을 법률로써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기술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이 있다.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기술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3년, 가장 최근에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각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 본 보고서는 국내 주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공조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둔다. 따라서 각 법률과 판결에서 정의하는 기술의 개념을 확인하되, 연구의 특성상 기술의 개념과 범위를 어느 하나의 정의에 한정하기보다는 기술의 해외유출과 공조수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영업비밀

가. 개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즉,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 비밀로 관리될 것 ④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공지성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란 영업비밀정보가 특정 매개체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구입·열람·복사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1] 즉, 영업비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하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2]

(2) 경제적 가치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영업비밀정보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경제적 가치성에 관하여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3] 즉, 영업비밀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정보이어야 한다.

(3)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4]

비밀관리의 정도는 두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완화되었다. 1991년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5년 법 개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정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였다. 2019년 법 개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와 ‘유지’ 부분을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비밀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유용성

영업비밀은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이어야 한다. 다만 유용한 정보라고 하여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보호를 하는데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유용성은 경제적 가치성과 구분된다는 견해와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는 유용성을 영업비밀 자체가 사업 활동에 효용성이 있는 유익한 정보

1)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2면.
2) 대법원 2022. 6. 16. 2018도51판결.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4) 이규호,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22권 제1호, 2020, 38면.

인가의 문제로 보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로서 생산공정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등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5] 반면, 후자는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성은 실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유용성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6]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이라고 하면서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7]

(5)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품 설계도, 설계방법, 제조방법, 제조공정,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실험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들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정보로는 고객의 명부, 고객정보, 주문서, 판매지침서, 시장조사결과보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8] 기타 경영상의 정보로는 재무관리정보, 조직관리정보, 사무관리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나. 침해행위 및 처벌

(1) 침해행위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침해행위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영업비밀침해행위는 크게 ‘부정 취득 관련 침해’와 ‘비밀유지의무자 관련 침해’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가목은 부정 취득과 관련한 침해행위의 기본형이며 나목, 다목은 이에 대한 사후적 관여행위이다.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목), 사후적 관여행위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나목), 부정하게 취득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목)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써 금지된다.

라목은 비밀유지의무자와 관련한 침해행위의 기본형이며 마목, 바목은 이에 대한 사후적 관여행위이다.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목),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마목),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목)은 영업비밀침해행위로써 금지된다.

---

5)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4면.
6)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 제54권 제8호, 2005, 10면.
7)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라20045 결정.
8) 윤태식,「부정경쟁방지법」, 박영사, 2021, 324면.

(2) 처벌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된다. 단,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벌칙규정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규정(제2조)을 인용하지 않고 별개의 구성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규정과 벌칙규정을 비교 분석하면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침해행위가 있으며, 침해행위규정에는 없으나 벌칙규정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고의와 목적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범죄구성요건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법 제2조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제1~3호)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목). 둘째,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 유출하는 행위(나목).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다목)가 그 내용이다(제1호).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서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제3호)도 위와 같은 법정형에 처한다. 단, 벌금형일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18조 제1항). 위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였지만 미수에 그치는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며[9],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흔히 국내침해로 일컫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고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3. 영업상 주요자산

영업상 주요자산은 영업비밀보호법상 비밀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는 볼 수 없지만 재산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9)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11] 즉,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이 충족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전의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 내지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되었음에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사안이 종종 발생하였다. 영업비밀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법리가 구성되었고,[12] 형사 실무에서는 요건이 완화된 업무상배임죄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13]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이며,[14] 기술침해 사건에서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회사의 경쟁업체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양태로 나타난다. 또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15]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재직 당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을 취득하였지만 퇴사 시에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보았다.[16] 한편, 다른 사안에서 법원은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7]

4.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가. 산업기술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각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이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

1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12) 이효진, 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아주법학, 법학연구소, 2019, 208면.
13) 정유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39면.
1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01판결.
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16)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1)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4)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6)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9)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현재 각목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의 수는 약 3,600개 정도로 파악된다.[18] 산업기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범위를 단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기술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기술의 발달이나 시장상황 및 정부정책 등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9]

현재 산업기술의 종류에는 국가핵심기술, 산업첨단기술, 산업신기술, 전력기술, 환경 관련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등이 있다. 한 가지 예로 산업첨단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다. 산업첨단기술은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지정된다.

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기술이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에 한정한다. 산업기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고시하는 것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일반적인 통상 기술의 것보다 높다. 따라서 산업기술은 영업비밀 요건 중 하나인 '경제적 유용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20]

18) 손승우등, 『산업보안법』, 케듀아이, 19면.
19)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10면.
20) 손승우등, 『산업보안법』, 24면.

<표 1> 산업기술의 종류

종류	근거 법률	정의	소관
국가핵심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고시)
첨단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며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기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고시)
신기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5조의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인증)
전력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삭제	-
환경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및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환경부장관 (인증)
건설기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내 최초의 특정 건설기술 및 기존 기술의 개량 중 일정한 기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보건 신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 (인증)
뿌리기술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지정)

나.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및 제9조).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 함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다른 기술에 비하여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로서 활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21] 또한,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21) 송동수·허정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조 제70권

다는 것은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13개 분야에서 총 75개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2023년 12월 기준).[22]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한 종류이지만 특히 중요도가 높은 기술로써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자를 관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표 2> 국가핵심기술 현황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11	2	4	9	9	8	5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합계
7	4	4	7	3	2	75

다. 침해행위 및 처벌

(1) 침해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사하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부터 제4호는 일반적인 기술침해행위이다.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제1호),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취득 후 제1호 또는 제2호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사용·공개하는 행위(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가 개입된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취득 후 제1호 또는 제2호가 개입된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공개하는 행위(제4호)는 침해행위로써 금지된다. 비밀유지의무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기록의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제4호, 법조협회, 2021, 10면.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호.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6호의3)도 금지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5호부터 제6의2호, 제7호는 국가핵심기술 침해와 관련한 내용이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그 기술을 외국기업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하는 행위(제5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하는 행위(제6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외·인수합병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하는 행위(제6호의2)는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로써 금지된다(제7호).

마지막으로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제8호).

(2) 처벌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는 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처벌된다. 유형은 크게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침해(제1항)와 산업기술의 국외침해(제2항), 일반침해(제3항), 중과실 취득에 의한 침해와 적법한 용도 외 사용·공개(제4항)로 구분된다.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하는 행위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한 침해, 사후관여자에 의한 침해(중과실 제외)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

법 제36조 제2항의 보호객체는 산업기술이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중과실에 의한 침해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4조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제1호),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한 침해(제2호), 사후관여자에 의한 침해(제3호), 미승인 또는 거짓에 의한 수출(제5호), 미승인 또는 거짓에 의한 인수·합병(제6호), 미신고 또는 거짓에 의한 인수·합병(제6호의2), 기술 반환·삭제 거부(제6호의3), 수출 중지 등 명령 불이행(제7호), 적법한 용도 외 사용·공개(제8호) 행위가 구성요건을 이룬다.

제36조 제3항은 보호객체에 해당하는 기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국외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고의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침해 유형이다(흔히 국내침해로 일컫는다). 제14조의 중과실에 의한 침해(제4호), 미승인 또는 거짓에 의한 인수·합병(제6호), 미신고 또는 거짓에 의한 인수·합병(제6호의2), 적법한 용도 외 사용·공개(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항은 중과실로 기술이 침해당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 후 사용·공개하는 행위(제4호)와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

용·공개하는 행위(제8호)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위 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 있을 경우 몰수하며,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36조 제5항).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하며(제36조 제7항), 이를 예비·음모한 자도 불법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7조).

5. 그 외 기술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전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 제1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유사하나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본 법 제15조에 따라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며, 구체적인 침해행위는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제1호),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공개·제3자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취득 후 사용·공개하는 행위(제3호 및 제4호),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제5호),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하는 행위(제6호),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자가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대한 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7호), 적법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전략기술을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제8호)로 구성된다.

전략기술을 침해한 자는 본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 20억원을 병과받는다(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부터 제8호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제15조 제4호·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항), 제15조 제4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항). 나아가 정부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과정에서 습득한 전략기술 자료 및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사용·공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5항).

나.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기술의 개념은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의 개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규정에 따르면 보호 대상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기 때문에 침해받은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요건과 같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3호).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써 금지된다.

다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규정할 뿐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형사 실무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주로 적용한다.[2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며[25] 이는 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을 말한다(방산기술보호법 제2조 및 제7조). 방위사업기술은 해당 국방과학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된다. 방위산업기술의 지정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절차와 유사하고 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정책적 입법 성향이 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26]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와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침해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유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

23) 최동준, 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관련법의 기술 개념, 침해유형 및 법적 보호수단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통권 제72호, 2021, 286면.

24) 이 외에도 피해 중소기업기술의 성격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최동준, 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관련법의 기술 개념, 침해유형 및 법적 보호수단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통권 제72호, 2021, 295면.

처하며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 각종 기술자료

위 기술 외에도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이 있다.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 기술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제2조 제15항),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보호 대상 기술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제2조 제9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시행령 제1조의3).

하도급법상 기술은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중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요구하며, 상생협력법상 기술은 경제적 유용성만 충족하면 기술자료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확인한 법령별 기술자료 중 상생협력법의 기술자료 범위가 가장 넓으며, 영업비밀보다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기술 침해 유형

1. 내부자에 의한 유출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특정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자료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경쟁 기업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이다. 내부자는 좁은 의미에서 기업이 정규적으로 고용한 임직원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협력 또는 하청업체의 직원, 단기 프로젝트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 외부 컨설턴트 등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인적구성원을 포함한다.[27)]

기술 유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2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01건의 사건에서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무려 91%(92건)에 달하였다.[28)] 또한, 경찰이 2017년부터 2021년 6월 사이 적발한 527건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71%(375건)가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29)] 이는 내부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기술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안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기업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양적으로 증가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은 기술을 유출하려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30)]

유출자는 주로 기술자료를 USB 혹은 CD와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반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외부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2021년 국내 2차전지회사의 퇴직 연구원 2명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상용 이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31)] 이외에도 출력하거나 화면을 캡쳐 또는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할 수 있으며, 중요 내용의 대화를 녹취 및 녹화하여 기밀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32)]

2.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유출

기술 유출은 핵심인력 스카우트(Hiring Away)를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급여, 복지, 승진 등 좋은 조건으로 경쟁 기업의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기술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비

27) 최관,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5, 78면.
28)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2022.11.28.
29) 지식재산위원회,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2022, 3면.
30) 윤한성, 내부자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한 디지털 지적자산의 집중화 방안:I사의 추진사례, 산업혁신연구 제29권 제2호, 산업개발연구소, 2013, 56면.
31) 보안뉴스, "되풀이되는 국가기술 유출... 지난 5년간 중대 피해 살펴보니
", 2023.8.1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0625 (최종방문일 2023.12.6.)
32) 최관,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78면.

밀의 '취득'을 해석함에 있어 "문서나 파일 등의 유체물로 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3] 일반적 지식이 아닌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전문적·특수적 지식을 이전 기업에서 지득하여 경쟁기업에 사용할 경우 기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내부 인력이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침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맺어 일정 기간 내 퇴직자가 동종 기업 또는 특정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34]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자를 자국으로 영업시키기 위해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급여와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며 업계와 무관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을 설립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우회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실정이다.[35]

3. 수출 또는 인수·합병

기술의 수출은 기술의 소유권이나 실시권,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2호). 인수·합병(M&A : Merger and Acquisition)은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와 기업들이 하나의 단일 회사가 되는 합병(Merger)을 의미한다.[36]

수출과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 효율 증대, 사업 규모의 확장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2000년대부터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받으려는 시도가 급증하였다. 2007년 국내 S자동차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유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37] 상대적으로 외관상 불법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과 거래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 유출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외로 이전된 기술은 2018년 기준 22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기준 82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38] 또한, 수출 대상 국가로 중국이 가장

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34) 이창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럽헌법연구 통권 제31호, 유럽헌법학회, 2019, 76면.
35) 한국일보, ""중국 헤드헌터, 삼성·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 한국 인력 빼가려 '호시탐탐'", 2023.5.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716120000250 (최종방문일 2023.12.6.)
36) 김진수·이준규, 기업인수·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20면.
37) 파이낸셜뉴스, "檢 '하이브리드 기술유출 의혹' 쌍용車 압수수색(종합)", 2008.7.4., https://www.fnnews.com/news/200807041808100021?t=y (최종방문일 2023.12.6.)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침해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39]

최근 2022년, 국내 기업(L社)이 해외 기업(G社)과 배터리 합작회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명목으로 핵심 제조 노하우가 담긴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40] 수출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핵심기술이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것인지 거래 과정 중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기술자료를 요청받을 당시에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표 3> 년도별 수출 승인·수리된 국가핵심기술 (출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건수	22	64	43	76	82	287

<표 4> 2021, 2022년 국가핵심기술 심사·신고 건수 (출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정보통신	조선	철강	합계
2021년	14	8	7	5	6	16	2	58
2022년	21	3	13	5	1	7	3	53

4. 사이버 공격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도 기술이 탈취될 수 있다. 이는 해킹, 이메일, 웹하드, 메신저 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사이버 공격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도 데이터 전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A社은 동종 경쟁업체인 B社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제휴 숙박업소의 정보를 유출 당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41] 그리고 2023년 7월, 대만의 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사건이 있었다.[42] 해커

38) 동아일보, “[단독]현지정부서 기술 요구, 해외인력 이탈… 곳곳에 기술 유출 구멍”, 2023. 6. 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07/119646676/1 (최종방문일 2023.12.6.)
39)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청이 파악한 총 63건의 기술유출 현황 중 과반수 이상(34건)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경찬·정진수·정군남,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5-AA-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40면.
40) 동아일보, “[단독]GM-포드, 韓 배터리 합작사에 기술공유 요구“, 2022.2.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04/111565555/1 (최종방문일 2023.12.6.)
41)조선일보,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 2022.8.26.,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8/26/BNRMJG45ZNB7BCW7UMAJ47ACII/(최종방문일 2023.12.6.)
42) 조선일보, ““923억원 내놔라” 랜섬웨어 해킹에 TSMC도 당했다”, 2023.7.3.,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7/03/ZYZEG3SKRBDWPOADYIRQNSNIEM/ (최종방문일

는 탈취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복구하는 조건으로 7000만달러(약 923억원)를 요구하여 회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렇듯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 유출은 경쟁 기업이 특정 자료를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경쟁 기업과 무관하게 기술자료를 볼모로 금전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4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43] 백업 파일의 랜섬웨어 감염률도 전년도 대비 19.8% 증가하였다. 랜섬웨어 공격 방식은 단순히 자료를 암호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백업 파일의 자료까지 탈취 및 삭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돈벌이 해킹'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다.

5. 공동연구, 계약 등

이 외에도 공동연구 계약, 하도급 거래, 위·수탁 계약 등을 통하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공동연구는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계약조건 확인, 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계획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기술 및 제품 관련 연구인력, 연구성과, 연구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검토 초기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44]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권리화되기 이전의 아이디어나 권리화가 어려운 사업 모델들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45]

하도급 거래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하여 문제 된다. 거래 지위를 악용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46] 하도급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기술자료를 교부하였지만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기술만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뒤 원사업자가 단독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수급업자가 개발한 기술을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도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47] 이른바 갑을 관계로 점철되는 하도급거래는 수직적 관계에서 기인한 경직성 문제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48]

2023.12.6.)

43) NEWSIS, "경기불황에 '돈벌이' 해킹 늘었다…상반기 침해사고 40% '껑충'", 2023. 7. 3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31_0002396411&cID=13111&pID=13100 (최종방문일 2023.12.6.)

4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유출대응 실무 가이드라인, 2006, 73면.

45) 지식재산위원회,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2022, 28면.

46) 중소기업 중앙회, 2018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2018.8, 8면.

47) 박성수·이정훈,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226면.

48) 김성원·이환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82면.

제3절 기술 침해 발생 현황

1. 검거 현황

가. 경찰청 통계

경찰청은 매년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을 기준으로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1,153건 발생하였으며, 2010년 40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7년에는 140건 적발되었다.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사 인력과 재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사건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술을 탈취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술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유출에 취학한 산업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49)]

<표 5> 년도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출처:경찰청)

년도	건수	년도	건수
2010	40	2016	114
2011	84	2017	140
2012	140	2018	117
2013	97	2019	112
2014	111	2020	135
2015	98	2021	89

나. 국가정보원 통계

국가정보원은 2003년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를 설립한 이후부터 국내 첨단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기관에 비하여 적발 건수는 적지만 규모 면에서는 주로 대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을, 기술 분야 면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건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49) 설민수,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원인: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110-111면.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국가정보원은 총 128건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39건이었다.[50] 해당 자료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 침해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2017년-2023.6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 (출처: 안철수 의원실, 국가정보원)

구분 (단위: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계
산업기술	24	20	14	17	22	20	11	128
국가핵심기술	(3)	(5)	(5)	(9)	(10)	(4)	(3)	(39)

2. 침해 주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검거한 기술유출사건 581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473건(81.4%), 외부자에 의한 유출이 108건(18.6%)이었다.[51] 내부자에 의한 침해는 외부자에 의한 침해보다 4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도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해 주체를 더 세분화하였는데, 2017년 기준 전직 직원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현직 직원이 14.8%, 협력업체 8.0%, 경쟁기업 6.8%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과 2015년 통계도 마찬가지로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각 69.2%, 75.8%로 가장 높았다.[52]

<표 7> 2015년-2017년 기술정보 외부 유출 관계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단위:%)	전직 직원	현직 직원	협력 업체	경쟁 기업	용역 업체	고용 외국인	기타
2017년	69.3	14.8	8.0	6.8	2.3	1.1	4.5
2016년	69.2	11.5	5.8	17.3	0.0	0.0	0.0
2015년	75.8	11.7	5.5	4.4	0.0	0.0	2.6

50) 조선일보, “최근 7년간 국가핵심기술 39건 유출... 반도체 최다”, 2023.8.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8/20/BTF4P7473RGVDEO2AG6K3JXXKU/ (최종방문일 2023.12.3.)
51)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52)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2018, 113면.

3. 산업별 유출 현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사이 발생한 658건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정밀기계(반도체) 분야가 167건(25.4%)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101건(15.3%), 화학·생명공학 96건(14.6%), 정보통신 45건(6.8%), 자동차 41건(6.2%), 조선 34건(5.2%) 순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서도 2017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발생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 중 반도체 분야가 31건(2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도체 다음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29건(22.7%), 전기·전자 14건(10.9%), 자동차 11건(8.6%)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두 통계를 종합하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술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기술경쟁력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국가 발전 및 경쟁력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2015-2022년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 현황 (출처: 오영훈 의원실, 경찰청)

구분	정밀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보 통신	조선	화학 생명공학	기타	합계
건수	167	101	41	45	34	96	174	658
(%)	(25.4)	(15.3)	(6.2)	(6.8)	(5.2)	(14.6)	(26.4)	(100)

<표 9> 2017년-2023.6년 분야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출처: 안철수 의원실, 국가정보원)

구분	반도체	디스 플레이	전기 전자	자동차	정보 통신	조선	기타	합계
건수	31	29	14	11	9	8	26	128
(%)	(24.2)	(22.7)	(10.9)	(8.6)	(7.0)	(6.3)	(20.3)	(100)

4. 기업규모별 유출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검거한 기술유출사건 581건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출이 518건(89.2%),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출이 63건(10.8%)이었다.[53] 또한,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발생한 해외 기술유출사건에서 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건(5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서는 42건(33%),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10건(8%)의 기술유출이 발생하였다.

<표 10> 2017년-2023.6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출처: 안철수 의원실, 국가정보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합계
건수	42	76	10	128
(%)	(33)	(59)	(8)	(100)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위험·취약 수치가 41.1%인 반면에 중견기업은 11.2%, 대기업은 2.5%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은 보안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기술침해의 표적이 되기 쉽다.[54] 또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임직원의 연봉이 높지 않아 경쟁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제시할 경우 인력 이탈로 인한 기술침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림 1] 중소/중견/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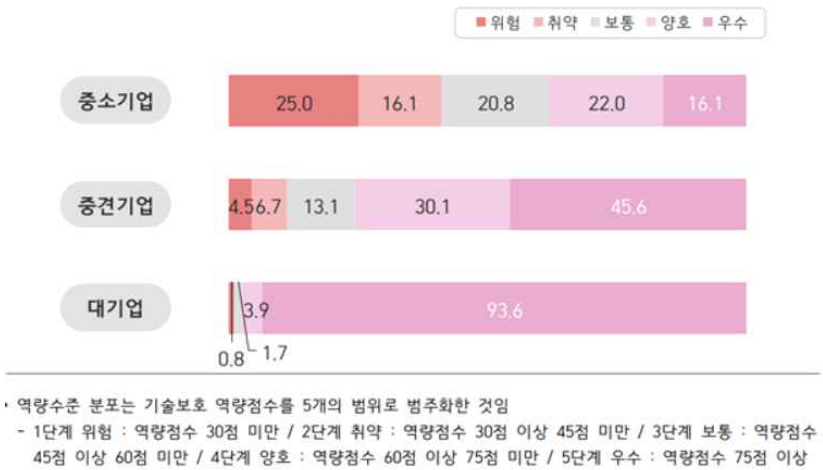

53)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54)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57면.

5. 동기 및 원인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 유출의 동기는 개인영리 61%, 금전유혹 22%, 인사 불만 8%, 처우 불만 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55] 기술유출 범죄의 본질은 재산권 침해에 있으므로 여타 재산범죄의 동기와 유사하게 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 유출의 주된 원인을 조사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허술한 보안 관리·감독체계가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직원의 부족한 보안의식 46%, 개인적 이익 추구 30%, 처우 불만 22%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56] 이 조사는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보안 관리와 같은 외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었는데 허술한 보안 관리·감독체계를 제외하면 낮은 보안의식, 사익 추구, 처우 불만과 같이 기술유출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11> 2004년-2011년 기술유출 동기 (출처: 국가정보원)

구분	개인영리	금전유혹	인사불만	처우불만	기타	합계
비율 (%)	61	20	8	6	5	100

<표 12> 2017년 기술유출 사고 발생 주된 이유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분	보안관리 감독체계 허술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개인적인 이익추구	처우 불만	보안 비용 투자 곤란	애사심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직업적 불안
비율 (%)	53	46	30	22	22	12	12

6. 처벌 현황

2108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사건은 총 546건이다. 전체 546건의 선고형 중 벌금형이 33.8%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9.3%, 징역 이 9.7%를 차지하였다.

특이점은 전체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이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2.7%, 2021년 3.2%, 2022년 3.4%인 것에 반하여,[57]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당해 연도 전체 처리 사건 대비

55)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 보호법』, 61면.
56)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57면.
57) 대법원, 2022 사법연감 849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누년비교표.

2018년 25.9%, 2019년 13.2%, 2020년 21.7%, 2021년 23.2%, 2022년 25.2%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높은 무죄 선고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술침해 사건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과 같이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타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특성상 타국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경쟁국 수사기관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기술침해 사건에서 국제 공조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심 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자유형		재산형	집행유예(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	기타	합계
	유기	집행유예									
2018	9	25	37	–	1	27	–	–	1	4	104
2019	12	34	36	–	–	13	–	–	–	3	98
2020	13	26	45	2	–	25	–	–	–	4	115
2021	14	42	51	1	–	33	–	–	–	1	142
2022	5	33	16	–	1	22	1	1	–	8	87
합계	53	160	185	3	2	120	1	1	1	20	546
(%)	(9.7)	(29.3)	(33.8)	(0.5)	(0.3)	(21.9)	(0.1)	(0.1)	(0.1)	(3.6)	(100)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표 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심 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자유형		재산형	집행유예(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	기타	합계
	유기	집행유예									
2018	–	4	1	–	–	4	–	–	–	6	15
2019	1	8	3	–	–	1	–	–	–	2	15
2020	–	10	1	–	–	3	–	–	–	–	14
2021	2	9	2	–	–	20	–	–	–	–	33
2022	6	5	–	–	–	1	–	–	–	8	20
합계	9	36	7	0	0	29	0	0	0	16	97
(%)	(9.3)	(37.1)	(7.2)			(29.9)				(16.5)	(100)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제2장 국제공조와 관련된 법제도 분석

제1절 국제공조수사와 관련된 국내 법제 분석

1.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가. 공조의 형식: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란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필요한 증언, 진술, 물건 등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사법당국을 대신하여 이들 증거를 취득하여 해당 외국에 제공하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말한다.[5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조는 '공조'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양국 간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상 필요한 협조와 관련된 모든 것이므로 '범죄인인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자국에 소재하는 타국에 대한 범죄인을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인의 신병을 당해 국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범죄인인도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구국에서의 수사·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람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공식 절차이다. 확정판결을 선고받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인도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법을 포함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의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리가 먼저 정립된 후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 범죄인인도 관련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59] 다만, 범죄인인도법은 특별법의 형태이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일반법의 형태이므로 특별법의 법리가 발전하여 일반법으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 조약을 통한 국제공조

(1) 조약체결을 통한 공조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을 타국에 강제로 인도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세계 각국은 원활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을 위해 스스로 또는 타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에 형사사법공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청구권을 보장하고자 각종 양자 및 다자간 조약을 체결한다.

58) 백진현·조균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면; 문채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 형식,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2005, 90면.
59) 범죄인인도법은 1988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2) 지역이나 국가의 범위에 따른 구별

범세계적 다자간 공조의 대표적인 예는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UNTO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다. 이 협약은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된다. 2000년 11월 뉴욕에서 채택하여 2002년 발효되었고, 한국은 2015년 11월 가입하였다.

지역별 다자간 공조로는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이 있다. 1959년 4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채택, 1962년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1년 12월에 조약 제2071호를 발효하였다. 이는 가장 강력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이다. 당사국은 협약규정에 따라 공조 요청 시 요청국의 사법당국이 처벌권한을 가진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 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한다. 다만 체포, 판결의 집행 또는 군법상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2년에는 외교경로를 경유하지 않고 회원국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타 회원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구속영장(European Arrest Warrant, EAW)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법적·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지역별 협약 또는 국가 간의 공조가 중요한 특정 형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영연방, 아랍연맹, 미주기구 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도 존재하는데, 영연방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커먼로가 이식되어 유사한 법체계를 바탕으로 수월한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3) 양자·다자간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양자 간 조약의 형식을 띠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모두 체결하는 다자 간 조약의 방식도 있다. 실무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자 간 조약이 선호되며, 양자 간 조약은 각 국가들에게 법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당사국 간 관계 및 상황에 맞는 공조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인터폴이나 유로폴을 통한 국제공조

범죄 정보교환이나 범죄인 수배 등은 회원국 경찰기구 간의 자발적 협력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폴은 범죄에 대한 국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6년 발족되었고, 한국은 1964년 기구 가입과 동시에 경찰청에 인터폴 한국사무국을 두고 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자체 헌장과 국내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 상호 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 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고 있다.

국제 경찰협력기구로서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는 '인터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조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차원의 비공식적 협력을 통해 입수한 증거들이 형사재판에서 정식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

라. 소결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의 체계는 ①국내법률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을 통한 국제공조, ②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양자·다자 간 조약을 통한 국제공조, ③ 인터폴이나 유로폴과 같은 경찰기구 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국제공조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공조체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국제공조체제에 대하여 분석을 한 후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형사소송법은 특정인(피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실제로 범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등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국제공조수사의 접점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이든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받는 경우이든 당해 공조가 형사절차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5조의 공조의 범위가 형사절차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5조는 공조의 범위에 관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서류·기록의 제공, 서류 등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대부분 범죄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단계에서 국가 간의 공식적 협력이고, 이러한 공조는 형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형사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형사소송법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법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제공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강제처분, 진술의 청취 등에 대한 절차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제공조를 논의할 때에는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국제공조는 당연히 적법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나 범죄인인도법 등 국제공조에 관한 논의를 상세하게 전개하고자 한다.

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가. 의의와 조약과의 관계

공조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조).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신병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범죄 진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한다. 형벌권은 국가 주권 행사의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가 주권의 일정한 제약에 해당한다.

조약은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보다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 협정 등의 공조조약에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른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 하지만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사법공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약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공조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이른바 '상호주의'라고 한다.

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공조의 범위와 내용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수사단계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거나 압수 또는 몰수대상물의 인도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재를 수사한다.

국외 도주 범죄인의 소재 수사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소재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경찰이나 법무부 등을 통하여 관련국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경찰을 통해 인터폴에 의뢰하여 국제수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인가는 공조범죄의 중대성, 공조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소재 수사 의뢰 시 이를 의뢰하기에 이른 경우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신상관계 등 본인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지문,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서류 또는 기록의 제공

법원에 서류나 기록이 있을 때, 공조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에 관하여 공조요청을 한다.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한다.

(3) 서류 등의 송달

서류는 공소장이나 소환장 등 소송서류나 재판서류 등을 의미한다. 외국의 요청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실시하며(공조법 제25조), 송달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공조법 제27조).

(4) 증거수집·압수·수색·검증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외국의 요청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외국에서 발부한 영장을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인 외국영장을 국내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행법상 전자의 방법만이 가능하다. 즉 외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공조법 제17조 제2항).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은 외국의 요청에 기하여 관할법원이 실시하며, 검증의 경우 검증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실시한다(공조법 제25조).

요청국의 관계인이 검증 등 증거조사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요청국의 관계인이 참여 중 직접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검증을 행하는 판사에게 현장에서 질문이나 조사를 요청한 후 판사가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처분 종료 후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조법 제27조).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이는 소송절차상 필요한 특정 물건을 요청국에 인도하는 절차이다. 물건의 인도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인신문과 함께 범죄인 소추·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단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물건의 인도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 대상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조법도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위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는 물건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인도허가청구를 하게 된다(공조법 17조 3항, 위 서류 등 인도허가청구와 같다).

인도허가청구서에는 ① 피의자의 성명, 죄명, ② 피의사실의 요지, ③ 인도할 증거물 및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 사건 및 제출자, ④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⑤ 인도할 사유를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조규칙 2조).

검사가 위 청구를 할 때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조규칙 3조 1항).

인도허가의 관할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공조법 제20조 제3항)이 된다.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공조규칙 제4조).

(6) 진술 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행위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그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국에서 동 절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공조법 9조 1항).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촉탁신문의 방식을 취하여 국내법원이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고 조서를 보내면 된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때에는 요청국에 가서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조요청이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2항). 이것이 이른바 '자유체재 및 형사면책' 조항이다.

요청의 대상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상태로 대한민국에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질 등의 목적으로 한 요청국에의 이송이 가능하다(같은 조 3항).

수형자의 요청국에의 이송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증언 등을 하도록 공조에 의하여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그 자를 외국에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 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공조법 10조 1항).

(7) 구속과 구금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인도 구속영장에 따라 범죄인을 구속 및 구금한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 긴급인도구속도 가능하다. 다만 구속과 구금은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공조의 범위 내에는 속하지 않는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 정하는 공조의 범위와 내용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으로 공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 범죄인인도는 별개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공조법에 의한 공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공조의 제한

(1) 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조를 실시하는 피요청국이 자국의 주권의 일부를 양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억제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권의 양보 또는 침해의 감수에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에서도 5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

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⑤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공조거절사유

국제사회는 피요청국이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고 공조를 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공조거절사유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공조거절사유는 국가 간에 체결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공조거절사유는 그 성질에 따라서 절대적 공조거절사유와 임의적 공조거절사유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거절사유를 절대적으로 공조거절사유로 규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조가 필요할 때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공공질서 위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권 조항),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정치범죄)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에 대하여 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날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치적 망명권 내지 비호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둘째,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쌍방가벌성) 공조가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범죄인인도법은 쌍방가벌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자국 내에서 행하여 졌더라면 처벌될 죄를 범한 외국인을 그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에 인도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형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형사소송절차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하여지므로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법공조는 범인의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와는 달리 독자성을 갖는 국제형사사법협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형사사법공조조약은 쌍방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 쌍방가벌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논리는 쌍방가벌성에 의하여 형사사법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에 이르는 증거를 얻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를 폐기하기도 한다.

우리 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감정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공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임의적 거절사유이므로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공조요청사항이 범죄인에게 이익이 된다든가 공조를 하여 주어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조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요청국의 보증) 공조가 제한된다. 보증에는 인도물의 반환보증, 형사면책보증, 일시이송수형자의 구금 및 구금반환 보증, 공조자료의 사용 등에 관한 준수사항의 이행보증, 공조비용지급보증 등이 있다.

라. 공조의 연기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마. 공조의 절차

(1) 개요

특정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의 요청을 상대 국가에 하는 경우에 과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기관에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조를 실시하는 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 국제법의 원리에 따라 행하여지게 된다.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은 실제 공조를 실시함에 필요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조는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와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와 '외국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로 나눌 수 있다.

(2) 공조담당기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기관으로 본다(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 중 국제공조수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담당한다.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이 그 예이다.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및 법원행정처가 그 담당기관이다.

(3) 공조요청서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공조법 29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라 함은 일반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와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보완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조요청을 모두 포함한다.

검사는 그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공조법 37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공조법 29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공조범죄사실 및 관련법규, 공조요청사항, 공조요청의 필요성, 번역문을 첨부한다. 또한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요청국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바.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 절차

외국에 대해 공조요청을 할 경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으로 나뉜다.

(1) 수사에 관한 공조

수사 공조요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 검사는 법무부장관에 공조요청서 송부 →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에게 송부(긴급 시 외국에 직접 송부가능) → 외교부장관이 외국에 송부'한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외국에 송부하되, 다만 외교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한편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직접 외국에 송부한다(공조법 제35조, 제30조, 제31조).

(2) 재판에 관한 공조

재판 공조요청의 절차는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 송부 →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긴급시 외국에 직접 송부가능) → 외교부장관이 외국에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법원이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조법 제33조 제1항). 법원행정처장이

위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다음의 법무부장관의 조치나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는 수사공조의 요청 시의 조치 내용과 같다(공조법 제35조). 다만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공조법 제34조).

[그림 2]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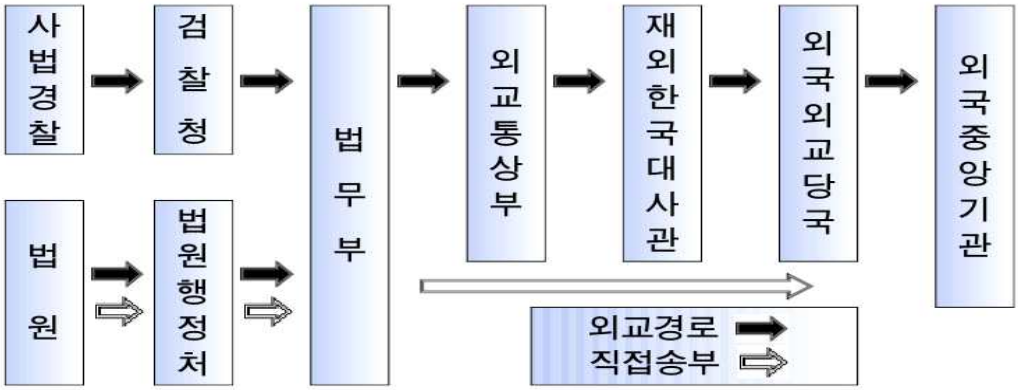

사. 외국의 요청에 따른 공조 절차

(1) 수사에 관한 공조

수사에 대한 공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이 공조요청접수 →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료 송부 또는 수형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 →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함 → 수집한 공조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 외교부 장관에게 송부'.

다만 검사가 공조요청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공조법 17조 2항, 4항),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3항).

또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수사기관에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공조법 18조). 증인신문이나 위 영장 발부의 관할법원은 이를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 판사이며(공조법 20조 1항), 관할법원은 위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공조예규 2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과 규칙이 준용된다(공조법 39조, 공조규칙 5조).

(2) 재판에 관한 공조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역시 공조요청 응낙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응낙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송부할 필요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공조법 23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을 송부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관할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조법 24조).

(3) 공조의 내용

(가) 형사소송법 준용

공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공조법 28조, 13조). 또한 공조에 관한 재판이나 영장 발부, 증인신문 등과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공조법 39조 공조규칙 5조). 다만 외국이 요청한 공조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공조법 13조 단서).

(나) 물건을 요청국에 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에 따르면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 증인신문

재판공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에 있어서 선서는 피요청국인 우리 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요청국에 따라서는 종교적 선서 등 특수한 선서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선서한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법공조의 성질상 요청국의 절차에 따른 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9조에 따르면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증언거부권에 관하여도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요청국에서 증언거부권을 우리 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요청국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강제로 증언하게 할 필요가 없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다.

한편 요청국의 관계인이 증인신문 등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이 경우에 우리 법률이나 증인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요청국의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다만 필요한 신문을 하여 줄 것을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재판 공조 후 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나 증인신문조서 기타 검증, 감정 등의 증거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서(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조법 27조). 위 송부를 마치면 조제한 기록 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은 회신서 부본과 함께 보존한다(공조예규 7조 1항).

[그림 3] 외국의 요청에 따른 공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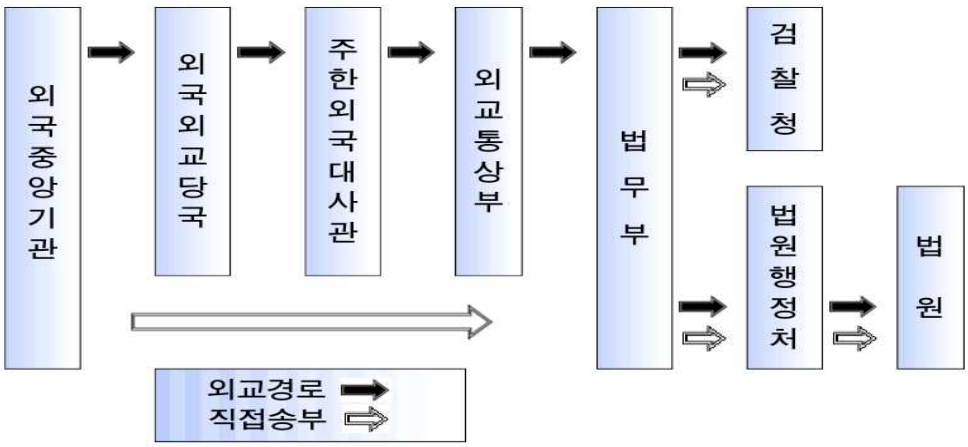

아. 공조비용

공조비용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요청국 부담이 원칙이다. 외국의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공조법 36조 1항). 같은 법 또는 공조조약에 의하여 요청국이 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의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공조법 2항).

형사사법공조모델조약에 따를 경우 피요청국 부담이 원칙이다. 최근의 조약 체결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피요청국이 원칙적으로 공조의 실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전문감정증인, 문서번역과 초록작성, 증거조사를 위한 요청국에의 출장소요비용 등은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보통이므로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형사사법공조모델조약 19조도 통상적인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미국과의 각 공조조약에서도 특정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범죄인인도법

가. 의의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범죄인인도법 제1조).

나. 범죄인인도사건의 관할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범죄인인도 사건의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담당한다. 인도조약이 있을 경우 인도조약이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며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다.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범죄인인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즉,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다(제5조). 다만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제6조).

그러나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된다. 또한 범죄인인도법 제8조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①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2항).

나아가 범죄인인도법 제9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인도법 제10조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다.

라. 범죄인인도 절차

(1) 한국이 요청한 범죄인인도 처리 절차

한국이 범죄인인도 처리를 요청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 법무부장관의 인도요청 → 외교부장관 → 해당 국가에 송부'.

[그림 4] 한국이 요청한 범죄인인도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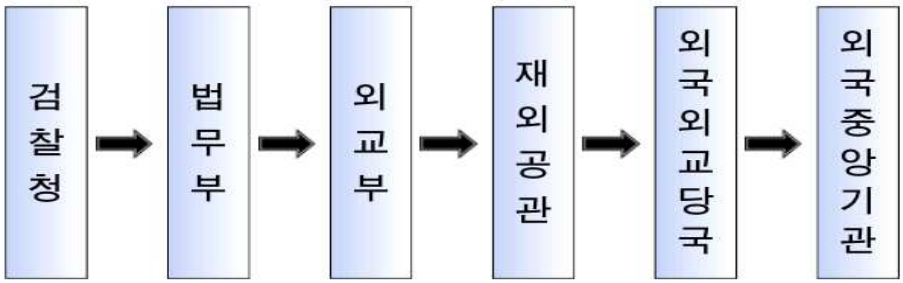

(2) 외국으로의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형,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9조)은 인도 거절 사유다.

인도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국의 인도청구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 고검에서 법원에 인도심사청구 → 법원의 인도심사 → 법원의 인도심사 결정 등의 순서에 따른다.

[그림 5] 외국으로의 범죄인인도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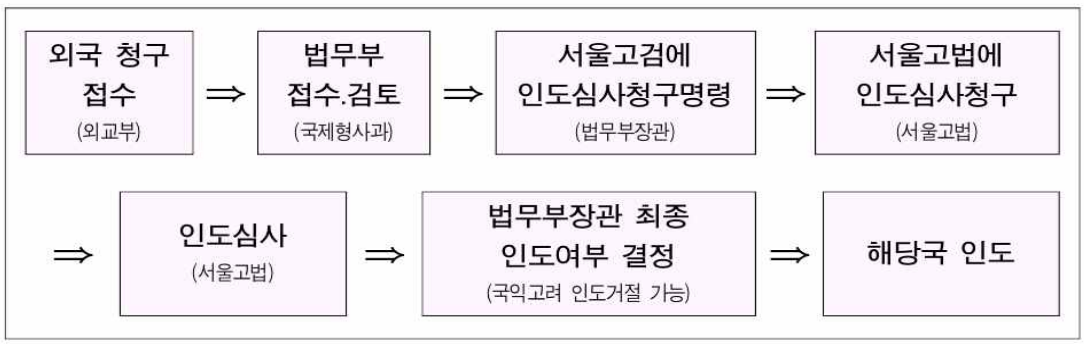

제2절 국제공조의 기본원칙과 체결현황

1. 국제공조의 기본원칙

가. 상호주의(Rule of Reciprocity)

국제법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국제협약이나 조약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초국경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체약 당사국 간 상호 동등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며 각 국가는 조약체결 및 실무과정에서 준수하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 단, 상호 간의 형사법 체계의 차이 및 실무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무의 완벽한 동일성이 아닌 등가성(balanced equivalence)의 정도만이 요구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상호주의)에 따르면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인인도법 제4조(상호주의)에 따르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최근 국제적 동향은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 상호주의를 점차 완화해 가는 경향이 있다.[60]

나. 쌍방가벌성(Rule of Dual Criminality)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법률상 대상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쌍방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 쌍방가벌주의'와 '추상적 쌍방가벌주의'로 구분된다. 구체적 쌍방가벌주의에 따르면 대상 행위가 양 국가 모두에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공소시효 등 소송조건까지 만족시켜 실제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협력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쌍방가벌주의는 국가 간 상호 불신에 기반한 고전적 이론에 불과하며, 마약·조직범죄 및 경제·금융·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방가벌성을 적용하지 않거나 추상적 쌍방가벌성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한다.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에서는 쌍방가벌성을 당사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EU·일본 형사공조협정에서는 쌍방가벌성이 없어도 공조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호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자조약에서 추상적 쌍방가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쌍방가벌성을 적용하지 않는 조약을 가입하지 않고 있기에 쌍방가벌주의를 배제하는 실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상적 쌍발가벌주의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60) 구상엽, 국제카르텔 역외 형사집행방법론에 대한 소고-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9.8., 27면.

공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형벌법규가 추상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상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규상 구성요건에 비추어 가벌적으로 규정되면 충분하다. 양국의 법이 정확히 동일하거나 책임 범위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양 국가의 법규정상 상당 부분 유사성(substantially analogous)이 있는 경우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도청구 대상범죄가 피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특정성(Rule of Specialty)

특정성은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협력의 대상 및 그 취지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협력의 대상 및 그 취지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공조로 획득한 물적 증거는 다른 형사집행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청구국이 인도대상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청구범죄 및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인도대상자를 기소 및 처벌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대상 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공조법 제9조, 제22조, 범죄인인도법 제10조에서 특정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인도대상자의 신병이 청구국으로 인도된 뒤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특정성의 원칙은 범죄인인도 절차 후 신병을 인도받은 인도대상자에 대한 청구국의 사법절차에 직접 적용되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가진다.

라. 일사부재리원칙(ne bis in idem)

일사부재리는 이미 유·무죄 판결 등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상자의 법적 지위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 중 하나에 해당한다. 범죄인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마. 정치범 불인도 원칙(Political Offense Exception)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 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가 제한될 수 있다. 정치범은 그 개념이나 가벌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우며, 망명 등 민감한 외교 이슈와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정치범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 등 국제협정이나 대부분의 양자조약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협력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8조, 한국·미국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양자조약에서도 정치범을 공조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인도대상범죄의 제한(Extraditable Offenses)

범죄인인도조약의 상당수는 조약 내에서 범죄인인도의 대상 범죄들을 나열하거나 특정 조건에 맞는 범죄들에 한정하여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것을 규정한다. 경범죄의 경우 일방 당사국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거절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범죄들에 대하여 복잡한 범죄인인도 절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인도대상 범죄의 제한 방법은 인도대상 범죄를 나열하는 열거주의, 체약 당사국 쌍방의 법률상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특정하는 방식의 소거주의가 있다.

2. 국제공조의 체결현황

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1992. 8. 25 호주와 최초로 양자조약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2. 31. 현재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수치는 사실상 모든 문명국가와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표 15>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및 발효현황(2021. 12. 31. 현재)[61]

체결국	체결일	발효일	체결국	체결일	발효일
호주	1992.08.25	1993.12.19	크로아티아		2011.12.29
미국	1993.11.23	1997.05.23	사이프러스		2011.12.29
캐나다	1994.04.15	1995.02.01	체코공화국		2011.12.29
프랑스	1995.03.12	1997.03.08	덴마크		2011.12.29
중국	1998.11.12	2000.03.24	에스토니아		2011.12.29
홍콩	1998.11.17	2000.02.25	핀란드		2011.12.29
러시아	1999.05.28	2001.08.10	그루지아		2011.12.29
몽골	1999.05.31	2000.01.27	독일		2011.12.29
뉴질랜드	1999.09.15	2000.03.30	그리스		2011.12.29
인도네시아	2002.03.30	2014.04.03	헝가리		2011.12.29
브라질	2002.12.13	2006.02.08	이아슬란드		2011.12.29
우즈베키스탄	2003.02.12	2004.11.23	아일랜드		2011.12.29

61) 대검찰청, 2022 범죄백서, 225면.

필리핀	2003.06.03	2008.11.17	이탈리아		2011.12.29
태국	2003.08.25	2005.04.06	라트비아		2011.12.29
베트남	2003.09.15	2005.04.19	리히텐슈타인		2011.12.29
카자흐스탄	2003.11.13	2012.09.10	리투아니아		2011.12.29
인도	2004.10.05	2005.06.08	룩셈부르크		2011.12.29
멕시코	2005.09.09	2007.01.18	몰타		2011.12.29
일본	2006.01.20	2007.01.26	몰도바		2011.12.29
알제리	2006.03.12	2007.06.15	모나코		2011.12.29
벨기에	2007.01.17	2012.09.29	몬테네그로		2011.12.29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05.03	2014.06.20	네덜란드		2011.12.29
쿠웨이트	2007.03.26	2013.04.08	노르웨이		2011.12.29
페루	2007.09.09	2016.07.20	폴란드		2011.12.29
불가리아	2008.10.01	2010.04.08	포르투갈		2011.12.29
스페인	2009.03.23	2012.12.01	루마니아		2011.12.29
아르헨티나	2009.08.31	2013.07.26	산마리노		2011.12.29
말레이지아	2010.12.10	2013.09.28	세르비아		2011.12.29
UAE	2014.02.28	2017.05.17	슬로바키아		2011.12.29
이란	2016.05.02	2018.02.09	슬로베니아		2011.12.29
키르키스스탄	2018.11.14		스웨덴		2011.12.29
마카오	2019.10.23		스위스		2011.12.29
캄보디아	2019.11.25		마케도니아		2011.12.29
알바니아		2011.12.29	터키		2011.12.29
안도라		2011.12.29	우크라이나		2011.12.29
아르메니아		2011.12.29	영국		2011.12.29
오스트리아		2011.12.29	이스라엘		2011.12.29
아제르바이잔		2011.12.29	칠레		2011.12.2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1.12.29			2011.12.29

주: 1. 체결일 공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발효됨
2. 발효일 공란: 형사사법공조조약 국회비준절차 진행중임
3. 법무부 국제형사과 자료

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2021. 12. 31. 현재 80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1. 12. 29.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했었던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16>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및 발효현황(2021. 12. 31. 현재)[62]

체결국	체결일	발효일	체결국	체결일	발효일
호주	1990.09.05	1991.01.16	벨기에		2011.12.29
필리핀	1993.05.25	1996.11.2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1.12.29
스페인	1994.01.17	1995.02.15	크로아티아		2011.12.29
캐나다	1994.04.15	1995.01.29	사이프러스		2011.12.29
칠레	1994.11.21	1997.10.01	체코공화국		2011.12.29
아르헨티나	1995.08.30	2000.11.09	덴마크		2011.12.29
브라질	1995.09.01	2002.02.01	에스토니아		2011.12.29
파라과이	1996.07.09	1996.12.29	핀란드		2011.12.29
멕시코	1996.11.29	1997.12.27	그루지아		2011.12.29
미국	1998.06.09	1999.12.20	독일		2011.12.29
태국	1999.04.26	2001.02.15	그리스		2011.12.29
몽골	1999.05.31	2000.01.27	헝가리		2011.12.29
중국	2000.10.18	2002.04.12	아이슬란드		2011.12.29
인도네시아	2000.11.28	2007.11.16	아일랜드		2011.12.29
뉴질랜드	2001.05.15	2002.04.17	이탈리아		2011.12.29
일본	2002.04.08	2002.06.21	라트비아		2011.12.29
우즈베키스탄	2003.02.12	2004.12.23	리히텐슈타인		2011.12.29
베트남	2003.09.15	2005.04.19	리투아니아		2011.12.29
카자흐스탄	2003.11.13	1012.09.10	룩셈부르크		2011.12.29
페루	2003.12.05	2005.11.16	몰타		2011.12.29
과테말라	2003.12.12	2006.02.20	몰도바		2011.12.29

62) 대검찰청, 2022 범죄백서, 224면.

인도	2004.10.05	2005.06.08	모나코		2011.12.29
코스타리카	2005.09.12	2006.12.01	몬테네그로		2011.12.29
프랑스	2006.06.06	2008.08.01	네덜란드		2011.12.29
홍콩	2006.06.26	2007.02.11	노르웨이		2011.12.29
알제리	2007.02.17	2008.10.24	폴란드		2011.12.29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05.03	2014.06.20	포르투갈		2011.12.29
쿠웨이트	2007.06.14	2013.08.28	루마니아		2011.12.29
불가리아	1008.10.01	2010.04.08	러시아		2011.12.29
캄보디아	2009.10.22	2011.10.01	산마리노		2011.12.29
말레이시아	2013.01.17	2015.04.15	세르비아		2011.12.29
UAE	2014.02.28	2017.05.17	슬로바키아		2011.12.29
이란	2016.05.02	2018.03.08	슬로베니아		2011.12.29
키르키스스탄	2018.12.14	2021.09.11	스웨덴		2011.12.29
마카오	2019.10.23	2021.03.11	스위스		2011.12.29
알바니아		2011.12.29	마케도니아		2011.12.29
안도라		2011.12.29	터키		2011.12.29
아르메니아		2011.12.29	우크라이나		2011.12.29
오스트리아		2011.12.29	영국		2011.12.29
아제르바이잔		2011.12.29	이스라엘		2011.12.29

주: 1. 체결일 공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발효됨
2. 발효일 공란: 범죄인인도조약 국회비준 절차 진행 중임
3. 법무부 국제형사과 자료

3. 국제공조의 최근의 경향

가. 상호승인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공조

오늘날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발전은 쌍방가벌성원칙 등 고전적인 사법공조의 원칙에서 벗어나 한 국가에서 행한 사법적 판단을 그 국가와 공조조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상호승인주의(gegenseitige Anerkennung)란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법적 판단은 그 조약을 체결한 다른 당사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63] 상호승인주의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각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다른 국가들간의 상호 신뢰가 존재하고 있고, 각 국가는 자신의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의 적용을 승인한다는 점이다. 상호승인주의는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상호간에 국내의 사법적 판단을 승인함으로써 사법공조 분야에서 문제 되고 있는 장기간의 시간소비의 장애를 해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실효적인 초국가적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한다.

나. 상호승인주의의 예: 유럽구속영장

유럽구속영장(Europäischer Haftbefehl)이란 유럽연합의 특정 회원국의 구속영장을 유럽연합 전 지역에 실행하고, 이로써 범죄인인도를 간이화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유럽구속영장의 체계에서는 범죄인인도를 요청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구속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인도가 간이화된다.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2002. 6. 13. '유럽구속영장과 회원국간의 범죄인인도절차'[64]에 관한 대강결정(이하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이 대강결정은 형사법분야에서 상호승인주의를 최초로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은 그 이후의 유럽연합 법문서에 대한 '선구자적 성격' 내지 '모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65] 이 대강결정이 의도하는 것은 관련되는 모든 국가들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려우며 복잡하게 느끼고 있는 전통적인 범죄인인도 절차를 철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범죄인인도 절차는 한편으로는 법원의 허용성심사와 허가절차라는 두 단계를 통하여 처리된다. 법원의 허용성심사는 독일의 경우 주최고법원(OLG)이 담당한다(독일 국제사법공조법 제12조 이하). 이러한 법원의 허가심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반드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이른바 범죄인인도 허가가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범죄인인도 허가는 개별 사건에서 정부대표자(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가 외교정책상의 재량에 기초한 합목적적 결정에 따라서 행해지게 된다(독일 국제사법공조법 제74조 참조). 바로 이러한 외교정책적인 판단은 대부분 범죄인인도 절차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었다.[66] 다른 한편으로 전

63) 상호승인주의에 관한 기본적 내용에 관해서는 Martin Böse, in: Momsen/Bloy/Rackow(Hrsg.), Fragmentatisches Strafrecht, Pater Lang, 2003, 233면 이하 참조.
64) Rahmenbeschluss 2002/584/JI, ABIEG 2002 Nr. L 190/5
65) Daniel Rohlff, Der Europäischer Haftbefehl, Peter Lang, 2003, 35면.
66) Daniel Rohlff, Der Europöischer Haftbefehl, Pater Lang, 2003, 41면.

통적인 범죄인인도 제도는 '쌍방가벌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쌍방가벌성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는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의 법에서도 모두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형법에 외국의 구성요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는 인도요청을 청구한 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추되는 자는 범죄인인도에 대하여 다양한 실체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범죄인인도 제도는 개인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만 범죄인인도 절차의 실효성에는 장애로 작용한다.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을 통하여 유럽구속영장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범죄인인도 허가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완전히 폐기하였다. 이제부터 유럽구속영장에 따른 범죄인인도절차는 오로지 사법기관의 손에 맡겨져 있다. 쌍방가벌성원칙의 경우에는 유럽구속영장이 교부된 피의사실이 집행국의 법에서도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쌍방가벌성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제2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개별 범죄(예: 테러, 인신매매, 강간, 부패, 방화 등)로 인하여 유럽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유럽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범죄유형들이 유럽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국가에서 법정형 최상한이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보안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은 제3조와 제4조에 유럽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해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거부사유로는 예컨대 집행국가에서 사면이 있었거나 인도대상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임의적 거부사유로는 - 개별 범죄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쌍방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 이외에 - 예컨대 집행국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완성, 집행국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소추된 경우, 이중처벌이 될 수 없는 절차의 중단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구속영장 대강결정 제5조는 유럽구속영장의 집행을 구속영장 발부 국가의 특정한 기본권보장에 의존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자기 국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형집행의 목적으로 국내로 재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 체제 및 내용

1.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공조

가. 서설

국제공조에 기초한 범죄투쟁은 크게 두 가지 법체계에 기초하여 작동된다. 하나는 국내법으로 제정·시행되는 형사사법공조법이나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에 기초하여 이를 이행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국내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체결한 조약이 우선한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의 약속을 통하여 체결된 규범(즉, 조약)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아도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정·시행중인 형사사법공조법이나 범죄인인도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이 어떠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무엇을 규율하고 있고, 공조요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향후 실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먼저 언급할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은 거의 유사하지만 개별 국가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1) 중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1998년 11월 12일 북경에서 서명되었고, 2000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공조의 내용 (제1조)	○ 서류의 송달 ○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하는 증거의 취득 ○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 전문가 평가의 취득과 제공 ○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 피구금자 및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하는 것 ○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공조
조약의 적용배제 (제1조)	○ 여하한 사람의 범죄인인도 ○ 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
중앙기관 (제2조)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동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공조의 임의적 거절사유 (제3조)	○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그 성격상 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기타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조요청이 어떤 사람의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또는 여하한 그러한 사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 공조요청의 대상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조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의 내용 (제4조)	(1) 필요적 사항 ○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 ○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관한 설명 ○ 관련 사실과 법의 요지를 포함하여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사항에 관한 설명 ○ 공조요청의 이행이 요망되는 시한 (2) 임의적 사항(추가적인 권고 사항) ○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관한 정보 ○ 송달대상자의 신원과 소재 및 당해 재판절차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 ○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 ○ 수색장소 및 압수대상물에 관한 설명 ○ 공조요청의 이행에 있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여하한 특별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설명 ○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경비 및 수고비에 관한 정보 ○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사유 ○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의 정보

(2) 태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2003년 8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2005년 4월 6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8>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공조의 내용 (제1조)	○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또는 증거의 취득 ○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 서류의 송달 ○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 증언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 요청국내에서 증언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관계인의 출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 ○ 범죄취득물에 관련된 공조조치 ○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형태의 공조
조약의 적용배제 (제1조)	○ 범죄인의 인도 ○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 형사사건에서 재판관할국의 변경
중앙기관 (제3조)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동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 타일랜드왕국: 검찰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
공조의 임의적 거절사유 (제4조)	○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공공질서나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요청국에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의 내용 (제5조)	(1) 필요적 사항 ○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권한있는 당국의 명칭 ○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 관련 사실 및 법의 요지를 포함하여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다만, 서류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2) 임의적 사항(추가적인 권고 사항) ○ 요청국에서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나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 송달대상자의 신원·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 소재파악 대상자 또는 물건의 동일성 및 소재에 대한 정보 ○ 수색대상자·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나 요건에 대한 설명 ○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된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 ○ 질문사항 ○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3) 필리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2003년 6월 3일 서명되었고, 2008년 11월17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9>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공조의 내용 (제1조)	○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또는 증거의 취득 ○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 서류의 송달 ○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 관계인으로 하여금 요청국의 범죄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 범죄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처분제한·추징 또는 몰수 ○ 요청국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부합하는 그 밖의 공조
조약의 적용배제 (제1조)	○ 범죄인인도나 그 목적을 위한 체포·구금 ○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중앙기관 (제3조)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동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 필리핀공화국: 법무부장관 또는 동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공조의 임의적 거절사유 (제5조)	○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군법상으로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 피요청국에서 확정적 무죄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된 형을 복역한 자의 범죄를 이유로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 어떠한 자의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공조요청이 행하여졌거나 이러한 이유로 공조요청이 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조요청이 이행되는 경우 피요청국의 주권·안전이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 이에 대한 고려에는 어떠한 자의 안전 및 피요청국의 재원에 대한 부담이 포함될 수 있음) ○ 피요청국의 관할권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떤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 ○ 피요청국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이유로 그 자를 기소·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공조요청서의 내용 (제4조)	(1) 필요적 사항 ○ 공조요청을 개시한 자·기관 또는 당국의 성명 또는 명칭 ○ 공조요청의 목적 및 성격 ○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관련법과 적용가능한 형벌에 대한 설명이나 조문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수사나 재판절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을 명시하는 설명 (2) 임의적 사항(추가적인 권고 사항) ○ 형사사건의 대상자들이나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신원·국적 및 소재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물건의 동일성 및 소재와 관련된 정보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 ① 적절한 경우에는 요청국이 그러한 자들에게 제시되기를 희망하는 질문을 포함한 신문사항에 대한 설명, ② 제출될 서류·기록 또는 증거물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제출하도록 요청되어야 할 적절한 자에 대한 설명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국에서의 체류기간에 관한 정보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국에 체류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 요청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그 자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질 조치의 요약에 관한 정보 ○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 추정 소재지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 ①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요청국이 믿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설명, ②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및 명령의 성격에 대한 설명 ○ 어떤 정보·증거·서류·물품이 제공되어야 할 방식이나 형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조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요청국의 어떠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개략적 설명 ○ 공조요청의 비밀유지에 관한 요청국의 희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희망사항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 ○ 요청국의 공무원이 공조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그 자의 방문목적·예정시한 및 출장조치에 관한 정보 ○ 피요청국이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그 밖의 보충적 정보·증거 또는 서류

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

(1) 중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2000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2002년 4월 12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인도대상범죄 (제2조)	○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그 인도청구가 행하여지는 시점에서 최소한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 ○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②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됨 ○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인도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인도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 가능
절대적 인도거절 (제3조)	○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다만,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토안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인도청구되는 자가 어느 일방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를 포함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소 또는 형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일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군사상의 범죄인 경우 ○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인도청구되는 자를 기소·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제4조)	○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기소가 피청구국에서 계속중인 경우 ○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영토밖에서 행하여지고 피청구국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인도청구되는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피청구국이 이러한 이유로 인도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 청구된 범죄에 한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여야 함) ○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과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상황을 비교하여, 그 인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민의 인도 (제5조)	○ 각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함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제7조)	○ 청구하는 당국의 명칭 ○ 청구된 자의 신원 및 국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재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 ○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 ○ 당해 범죄의 죄명과 형벌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 ○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집행시효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 ○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 첨부 ○ 인도청구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의 사본,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된 형기에 대한 설명 첨부
긴급인도구속 (제9조)	○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 가능

(2) 태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1999년 4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2001년 2월 15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인도대상범죄 (제2조)	○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장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기타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을 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때에는 잔여형기가 적어도 6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도가 허용 ○ 인도대상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죄유형에 포함시키거나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②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상 자국 영역밖에서 유사한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당해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 피청구국의 법률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 가능 ○ ① 당해 범죄가 범행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혐의사실이 인도청구 당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당해행위가 피 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범죄인인도 가능 ○ 인도청구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수개의 범죄와 관계되지만 그중 일부가 인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개의 인도대상범죄만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피청구국은 그 범죄 모두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허가 가능
절대적 인도거절 (제3조)	○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집단살해·테러 또는 납치에 관한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결과 이미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 ○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금지된 경우 ○ 인도 청구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수배된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당해 범죄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제4조)	○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때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
자국민의 인도 (제6조)	○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다만, 각 체약당사국의 행정기관은 인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 보유) ○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소추 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관할기관에 사건을 이첩 가능(이 경우,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소추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함)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제8조)	○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및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을 기재한 서류 ○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률문서 ○ 당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재한 법률문서 ○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문서 ○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관, 기타 소관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범죄구성 혐의사실 기재서 첨부 ○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관련판결의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구성 사실 기재서 첨부
긴급인도구속 (제11조)	○ 일방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가능 ○ 긴급인도청구서는 우편, 전신 또는 기타 서면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 가능

(3) 필리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1993년 5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1996년 11월 30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인도대상범죄 (제2조)	○ 쌍방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장기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때에는 잔여형기가 6월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도가 허용 ○ 범죄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죄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거나 당해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②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 조세·관세·외국환관리·기타 재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불가 ○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상 유사한 상황하에 자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당해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때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고, 피청구국의 법률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 허용 가능 ○① 당해 범죄가 범행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고, ② 혐의사실이 인도청구 당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당해 행위가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인인도 허용 가능 ○ 인도청구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 가능한 수개의 범죄와 관계되지만 그중 일부가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개의 인도대상범죄만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피청구국은 그 범죄 모두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허용 가능
절대적 인도거절 (제3조)	○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쌍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집단살해·테러에 관계된 범죄, 인질억류를 포함한 납치·유괴 또는 모든 형태의 불법감금

	을 수반하는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결과 이미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 ○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금지된 경우 ○ 인도청구된 자를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제4조)	○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다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때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 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민의 인도 (제6조)	○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다만, 각 체약당사국의 관할기관은 인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보유) ○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소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관할기관에 사건 이첩 가능하고, 이 경우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기소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함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제8조)	○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및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을 기재한 서류 ○ 당해 범죄의 필요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포함하는 법령에 관한 기재서 ○ 당해 범죄에 대해 부과될 형벌을 포함하는 법령에 관한 기재서 ○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에 관한 기재서 ○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관, 기타 소관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범죄구성 혐의사실에 관한 관할기관의 기재서 첨부

	○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관련판결의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구성 행위에 관한 사실기재서 첨부
긴급인도구속 (제11조)	○ 일방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가능 ○ 긴급인도청구서는 우편, 전신 또는 기타 서면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 가능

2.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67]

가. 동남아시아 사법공조 기구 설립 목적 및 구성

인신매매, 마약밀매, 불법 야생동물 거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는 증거 수집이 한 국가가 아니라 범죄와 연관된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타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언어, 각기 다른 사법제도와 실무는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으며 외교채널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는 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2019년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회원국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for Strengthening Capacities of Member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and Serious Crime, GPTOC)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OSEAP)은 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내 사법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사법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형사사법공조사무국(Secretariat for the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지원을 받아 2019년과 2020년 3차례의 총회를 열어 사법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3월 검사, 경찰, 사법집행기관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가 설립되었다. SEAJust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68] 특히, SEAJust는 우리나라 법무부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67)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SEAJust/overview.html 참조 (최종방문일: 2023년 7월 31일)

68) SEAJust 홈페이지 https://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SEAJust/index.html 참조.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 개방되어 있다.[69]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모든 형태의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와 관련한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이른바 적극적 중재자(active intermediaries)라는 공식 연락거점(contract appoint)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월 대한민국(법무부)과 루마니아가 SEAJust에 가입하고, 2023년 4월 ASEAN 국가 중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가입하면서, 2023년 4월 기준, SEAJust에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 SEAJust 참여 국가 현황

구분	국가명
ASEAN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non-ASEAN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대한민국, 루마니아

나. 주요 활동

SEAJust는 2020년 9월 9~10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문제에 관한 지역 회의(Regional Meeting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는 SEAJust 네트워크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앙당국, 공여국인 일본 관련 관계자, UNODC의 수많은 전문가와 여러 국제기구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역 회의에서는 SEAJust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현방안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사법공조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발생한 Covid-19 관련 범죄, 경험, 각종 도전과제를 설명하고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70]

SEAJust는 2021년 2월 9~10일 화상 회의를 통해 국가별로 지정된 연락관과 함께 제1차 정기총회(Plenary Meeting)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의 관할 중앙당국의 형사 사법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정기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가입 요청에 따라 양국의 가입을 의결하고,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었다.[71] 미얀마 연합 법무장관실 국장 선 린(Sunn Linn)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간 비공식적인 국제협력이 지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SEAJust의 후원 아래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더

69)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 (2023.1.31.자).
70) https://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SEAJust/network_regional-meeting-on-mla_2020.html 참조.
71) https://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SEAJust/plenary-meeting.html 참조.

많은 논의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라오스 최고인민검찰청 국제협력국 메스마니 반나시(Methmany Vannasy) 국장은 비공식 사법공조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차 총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투표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SEAJust 네트워크 가입에 동의하였다. 연락관들은 투표 절차, 옵저버 자격, 네트워크 의장단, 보류 중이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임시 총회 개최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서 2021년 11월 17일 SEAJust는 연락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는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의 형사 사법 실무자, UNODC의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72)]

호주, 몰디브,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자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호주의 SEAJust 연락관은 요청을 전자적으로 보낼 경우 중앙당국 간의 통신 시간을 며칠 단축할 수 있다는 점과 팬데믹과 그에 따른 봉쇄가 통신 속도 저하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몰디브의 SEAJust 연락관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며, SEAJust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국가 차원의 범죄인인도법이 없으며 2012년 사이버범죄방지법(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과 2015년 전략무역관리법(Strategic Trade Management Act of 2015)의 조항을 원용하여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인도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UNODC에서는 이러한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국내법의 부재를 인지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한국 SEAJust 가입과 총회개최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2022년 11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및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1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에서 참가 10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받았다.

이어서 우리나라 법무부는 2023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였다.[73)]

이번 서울 총회에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을 비롯해 게스트 국가(미국·일본·중국·몽골),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 유럽사법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CASC) 등 국제공조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의 핵심과제와 우수사례,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72) https://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SEAJust/seajust-network_internal-coordination-meeting_2021.html 참조.

73)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2023.4.26.자).

3.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체계

가. 유럽연합의 경찰공조와 사법공조

(1) 유럽연합 규범체계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

형사사건에서 경찰 및 사법공조(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JCCM)는 원래 유럽연합의 정책분야에 속해있었다. 원래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경찰사법공조는 유럽연합조약으로 불리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세 가지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을 구성하고 있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중 제1기둥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유럽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제2기둥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제1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제3기둥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제29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던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였다. 그러나 2009년에 체결되었던 리스본조약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의 특별한 지위가 폐지되었다.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의 정책분야는 유럽연합의 기능화에 관한 조약에 포함되었으나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의 두 가지 새로운 분야로 분리되었다.

(2) 행위방식

유럽연합 차원의 경찰공조와 사법공조 분야에서 일반화된 행위방식은 대강결정(Rahmenbeschluss)이다. 이 대강결정은 유럽공동체조약의 지침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즉 대강결정은 유럽공동체조약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대강결정에서 달성되어야 할 목표에 관하여 회원국을 구속한다. 그러나 당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대강결정과 지침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대강결정의 경우 유럽연합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그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밖에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국제협약(völkerrechtliche Übereinkommen)도 경찰공조와 사법공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보호의 분야는 이러한 국제협약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1995년 7월 26일자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보호에 관한 협약(이른바 'PIF-협약'[74])으로서, 이 협약은 유럽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형사처벌의 최저기준을 담고 있다.[75] 그러나 국제협약은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되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PIF 협약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서명한 후 7년이 지나서야 발효될 수 있었다.

(3)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에서 형법의 조화

유럽연합의 경찰공조와 사법공조 분야에서 대강결정을 결의하거나 회원국간에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그러한 규범들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대강결정의 결

74) PIF ist die Abkürzung für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75) ABIEG 1995, Nr. C 316/49

의 또는 회원국간의 국제협약의 체결은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형법규범을 동화시키는, 즉 유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형법의 조화를 위한 법문서가 공포된 것들이다.

-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PIF-협약 및 부속의정서[76])
- 공무원뇌물(PIF-협약 및 이에 관한 제1차 부속의정서)
- 민간분야에서의 뇌물(대강결정, ABlEU 2003 Nr. L 192/54)
- 범죄단체에의 가담(공동조치, ABlEG 1998 Nr. L 351/1)
- 자금세탁(대강결정, ABlEG 2001 Nr. L 182/1)
- 유로화의 위조에 대한 보호(대강결정, ABlEG 2001 Nr. L 329/3)
- 비현금성 지불수단에 관한 사기 및 위조(대강결정, ABlEG 2001 Nr. L 149/1)
- 테러(대강결정, ABlEG 2002 Nr. L 164/3)
- 인신매매(대강결정, ABlEG 2002 Nr. L 203/1)
- 아동성착취, 아동포르노그래피(대강결정, ABlEU 2004 Nr. L 13/44)
- 불법이주방조(대강결정, ABlEG 2002 Nr. L 328/1)
- 마약류불법거래(대강결정, ABlEU 2004 Nr. L 335/8)
- 컴퓨터범죄(대강결정, ABlEU 2005 Nr. L 69/67)

나. 유럽연합 차원의 형사소추기관

유럽연합에서는 경찰과 사법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Europol'이라고 불리는 유럽경찰청이 창설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Eurojust'라 불리는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이 창설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와 부패 및 그 밖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산하기관으로 유럽부패방지청('OLAF'라 부른다)이 있다. 최근에는 유럽검찰청까지 창설되었다.

(1) 유럽경찰청(Europol)

유럽경찰청은 1995년 7월 26일에 유럽연합조약 제K.3조(그 당시 마스트리히트조약 제K.3조를 말한다)에 근거하여 체결된 유럽경찰청협약(Europol-Übereinkommen)[77]을 통하여 헤이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설치되었다. 이 협약은 1998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경찰청은 1999년 7월 1일자로 자신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

76) ABlEG 1995 Nr. C 316/49 (PIF-Übereinkommen); ABlEG 1996 Nr. C 313/2 (1. Protokoll). ABlEG 1997 Nr. C 221/12 (2. Protikoll).

77) ABEIG 1995 Nr. C 316/2; BGBl. 1997 Ⅱ, S. 2154; ergänzt wird das Übereinkommen durch das Protokoll über die Zuständigkeit des EuGH für Vorabentscheidungsverfahren, ABlEG 1996 Nr. V. 293/2 sowie das Protokoll über die Vorrechte und immunitäten für Europol-Bedienstete, AEIEG 1997 Nr. C 221/2, BGBl. 1998 Ⅱ, S. 975.

유럽경찰청은 두 개의 핵심기관(Hauptorgan)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럽경찰청장이며 유럽경찰청장은 유럽경찰청의 일상업무를 지휘한다. 나머지 하나는 행정위원회이다. 행정위원회는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유럽경찰청의 일상 업무 이외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럽경찰청의 관할은 중대한 국제범죄의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유럽경찰청이 관할권을 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적 조직구조에 관한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고.....가벌적 행위의 규모, 의미미 효과에 비추어볼 때 회원국들의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식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들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유럽경찰청협약 제2조 제1항). 그동안 유럽경찰청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확대된 결과 유럽경찰청의 관할권은 유럽경찰청협약 부록에 열거된 모든 중대한 국제범죄의 유형(예: 불법마약류거래, 불법이주범죄, 인신매매, 테러, 고의 살인, 컴퓨터범죄, 부패, 사기범죄)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경찰청은 회원국의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진 수사경찰조직이 아니다. 현재 유럽경찰청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국내 경찰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협력을 보장하고 회원국에서의 형사소추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국내 담당기관(독일의 경우 연방형사경찰청이 국내 담당기관이다)을 설치하거나 지명한다. 이 국내 담당기관은 유럽경찰청과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을 연결시키주는 유일한 연락기관으로 활동하며 유럽경찰청에 연락공무원(Europol Liaison Officers - ELO's)을 파견한다. 연락공무원은 국내 연락기관과 유럽경찰청 간의 정보교환이 복잡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유럽경찰청은 자신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보체계(automatisierte Informations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동화된 정보체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자동화된 정보체계 속에는 유럽경찰의 관할권의 범위에 속하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에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유럽경찰청협약 제8조). 이러한 정보는 국내 연락기관에 의하여 저장된다. 제3국가에서 송부받은 자료나 유럽경찰청이 스스로 분석한 자료는 유럽경찰청이 스스로 입력한다.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체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내 연락기관과 연락공무원 및 그 권한자가 좁게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유럽경찰청 공무원 뿐이다(유럽경찰청협약 제9조).

유럽경찰청이 자료수집처로 활동하는 핵심기능과 관련하여 유럽경찰청협약에서는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경찰청협약 제15조는 정보보호법적인 책임을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회원국이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유럽경찰청이 스스로 입력, 가공 또는 전달한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는 한편으로는 유럽평의회의 1981년 1월 28일자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사람의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경찰청협약 제14조 제3항 참조)에서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경찰청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정보보호법 규정에서 도출된다. 이른바 공동통제부(유럽경찰청협약 제24조)는 일반적인 법감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공동통제부는 개인이 정보제공, 정보통지 및 정보삭제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나 유럽경찰청이 이를 기각한 경우의 항고사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결정한다. 공동통제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써 유럽경찰청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항상 기본법상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표준을 요구하고 있는 기본법 제79조 제3항과 결부된 제23조 제1항의 헌법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

럽다.

그 밖에 논란이 있는 문제점으로는 유럽경찰청의 민주적 정당성과 유럽경찰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들 수 있고, 유럽경찰청 직원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면책특권 의정서) 제8조 제1항 a호와 결부된 유럽경찰청협약 제41조에 의거한 유럽경찰청 직원의 면책특권도 문제 되고 있다.

(2) 유럽중앙사법공조청(Eurojust)

사법의 영역에서 유럽경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구로는, 핀란드 Tampere에서 이루어진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특히 유럽연합조약 제31조, 제34조 제c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2002년 2월 28일자 이사회결정[78]을 통하여 설치된 'Eurojust'라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정식명칭은 유럽중앙사법공조청(zentrale Europäische Stelle für justizielle Zusammenarbeit)이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헤이그에 그 소재지를 두고 있다. 니스조약이 발효된 이후부터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유럽연합조약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일차법상으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초국가적 형사소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수집처 및 자료분석처' 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유럽경찰청의 구조와 유사하게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이른바 '국내회원'(법관, 검사 또는 경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회원의 지위와 권한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국내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교환이 행해지는 것과 같이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국내 (형사) 관련자료에 접근한다. 이를 통하여 형사소추에 관여된 회원국들간의 신속한 법정보제공과 실효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중앙기구가 되도록 보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업무체계에서는 국내 회원국이 스스로 - 가능한 한 동일한 정도로 -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국경을 초월한 형사소추를 용이하게 해준다. 나아가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중복된 업무처리와 관할권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조치와 형사소추조치를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다른 업무로 국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이외에 국내 형사사법기관을 지원한다. 국내 형사사법기관을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예컨대 회원국에 대하여 수사개시 또는 수사실행을 독려하거나 국제형사사법공조 속에서 국내 형사사법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회원국에 관련되는 특정한 범죄유형에 국한되어 행사될 수 있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관할대상에 속하는 특정한 범죄유형은 유럽경찰청의 관할대상이 되는 범죄그룹을 본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유럽경찰청의 관할대상보다 더 폭넓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은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정보보호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도 제정되어 있다. 즉, 유럽중앙사법공조청에는 독립된 정보보호관과 공동통제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공동통제부는 - 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 행해지는 법적 통제와 별개로 - 개인자료의 정확한 처리를 감독하고 개인이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 결정한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설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앞에서 언급한 2002년 2월 28일자 이사회결정은 직접적인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 이사회결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한

78) Beschluss des Rats 2002/187/JI, ABIEG 2002 Nr. L 63/1.

다. 독일에서는 이 이사회결정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사법공조청법(Eurojust-Gesetz)[79]을 제정하였다.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의 핵심적인 역할로는 장래에 집행권을 가지게 될 유럽경찰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럽중앙사법공조청을 유럽검찰의 배아세포로 보기도 한다.

(3) 유럽부패방지청(OLAF)

유럽부패방지청을 줄여서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라 부르기도 한다. 유럽부패방지청의 과제는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 부패 및 그 밖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유럽연합 소속 직원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유럽부패방지청은 - 유럽경찰청이나 유럽중앙사법공조청과는 달리 -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부패방지청의 전신이었던 'UCLAF'(Unité de Coordination pour la Lutte Anti-Fraude)는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행위의 예방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1988년에 설치한 단순한 테스크포스팀이었다. 'UCLAF'와는 달리 유럽부패방지청은 직무상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직무상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1999년 3월에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를 사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던 심각한 부패혐의를 계기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다.

유럽부패방지청은 1999년 4월 28일자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결정[80]을 통하여 탄생되었으며 1999년 6월 1일자로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유럽부패방지청장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유럽공동체 의회 및 이사회와 합의하여 임명된다. 유럽부패방지청의 청장은 의회, 이사회 및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 유럽부패방지청의 직무독립성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부패방지청의 청장은 자신의 직무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이 있다. 유럽공동체 집행명령 제99-1073호[81]에는 유럽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 부패 및 그 밖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막대한 권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막대한 권한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이미 (유럽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집행명령 제95-2988호[82]와 집행명령 제96-2185호[83]에서 인정한 유럽연합 외부지역에서의 조사권(externe Untersuchungsbefugnisse)의 행사(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불법행위로부터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통제와 현장 심사)에까지 미친다. 유럽연합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행위가 특히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 유럽부패방지청은 특히 담배, 술 또는 올리버 기름과 같은 관련되는 제품별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

79) Gesetz zur Umsetzung des Beschlusses (2002/187/JI) des Rates vom 28.2.2002 über die Errichtung von Eurojust zur Verstärkung der Bekämpfung der schweren Kriminalität (Eurojust-Gesetz-EJG), BGBI. 2004 I , S. 902ff.

80) Kommissionsbeschluss 1999/352/EG, ABIEG 1999 Nr .L136/20.

81) ABIEG 1999 Nr. L 136/6.

82) ABIEG 1995 Nr. L 312/1.

83) ABIEG 1996 Nr. L 292/2.

다른 한편, 유럽부패방지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산하기관, 공직자 및 유럽공동체의 대리기관 등 모든 기관 내부에서 행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84] 이와 관련하여 유럽부패방지청은 광범위한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권에는 예컨대 모든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권, 자료의 적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압수할 권한 및 회계감사권도 포함된다.

(4) 유럽검찰청

유럽검찰청이란 유럽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될 검찰청을 말한다. 그 근거는 리스본조약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의 기능화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86조이다. 유럽검찰청은 2021. 6. 1. 최초로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유럽연합이 유럽검찰청을 도입하게 된 현실적인 배경은 유럽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자금집행을 둘러싸고 사기, 조세포탈, 배임, 뇌물, 자금세탁, 관세범죄 등과 같은 범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로 인하여 2017년 기준 유럽연합에 매년 500억 유로(한화 약 70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85]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의 형법에 사기죄, 보조금사기죄, 조세포탈죄, 문서위조죄 등과 같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형사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범죄를 소추할 수 있지만 회원국의 형법규정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예를 들어 미수의 가벌성이나 법인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이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상이한 형법규정은 조직범죄에 대한 기소와 유죄의 가능성을 낮추어 결국 범죄조직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유럽연합 자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일한 형법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보아 국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경향도 나타났다.[86]

종합해보면, 유럽연합 자체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범해지는 사기, 조세포탈, 문서위조 등과 같은 범죄가 유럽의 통합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실효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검찰청 설립의 취지이다. 2023년 7월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국이 유럽검찰청에 참여하고 있다. 그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에 있으며,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22명의 검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84) Beschluss 1999/394-EG, Euratom des Rates vom 25.5.1999 und Beschluss 1999/396/EG, Euratom der Kommission vom 2.6.1999; s. dazu auch die Interinstitutionelle Vereinbarung vom 25.5.1999, ABlEG 1999 Nr. L 136/15

85) EU-Staatsanwalt könnte künftig Mehrwertsteuer-Betrüger verfolgen, www.finanztreff.de.(방문일: 2023.7.12.)

86) Silke Nürnberger, Die zukünftige Europäische Staatsanwaltschaft – Eine Einführung, ZJS 5/2009, 495면.

다.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

(1) 유럽평의회의 기능과 주요 업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roparat)는 유럽공동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일찍 국제형법을 다루어왔다. 1949년 5월 5일에 진정한 국제기구로서 설치된 유럽평의회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국가연맹이다.

유럽평의회의 기관들은 국제적 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럽평의회에서는 회원국의 대표들이 국제법 주체로서 등장한다. 유럽평의회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권리보호가 문제의 대상으로 되지만, 이 경우 개인은 국가의 '간접적인 매개를 통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 간의 질서로만 이해되었던 전통적 국제법의 관점이기도 하다.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각료위원회는 회원국의 외무부장관이나 상설 대표로 구성되며, 그 직무는 조약 등과 같은 유럽평의회의 제반 조치를 심사하고, 유럽평의회 조직상의 모든 문제를 해명하며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준수와 실행(유럽인권협약 제46조, 유럽인권재판소 절차규칙 제43조 제3항 3문)을 감독하는 것이다(유럽평의회 정관 제13조 내지 제21조 참조). 유럽인권협약은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애매하게 불리고 있는 - '권고'를 회원국에 포함시켜서(유럽평의회 정관 제15b조) 특별히 구속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의원총회는 자문위원회로 활동한다(유럽평의회 정관 제22조 내지 제35조). 의원총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총 318명이며, 이들 의원은 국내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인구수가 많은 회원국(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은 각각 18표를 가지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회원국은 2명의 의원만 파견한다.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정관 제10조에서 말하는 유럽평의회 기관이 아니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각료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유럽 게마인데(Gemeinde) 및 지역 회의는 자문기구로서 지역기관과 자치단체기관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유럽평의회의 주된 사무는 특히 모두 국제법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조약이나 권고를 제안하고 조약문이나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이나 권고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원국에서 비준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내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유럽평의회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형사소추의 분야에서 회원국들간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범죄문제위원회(CDPC)는 1957년에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가 설치한 것으로서 형사법에 관련되는 모든 작업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결의와 권고에 나타나 있다. 또한 유럽 범죄문제위원회의 관여하에 체결된 수많은 협약들도 이러한 형사법적인 문제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 예로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유럽 범죄인인도협약(1957)이나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1959) 등이다.

(2)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1959)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Europäisches Übereinkommen über die Rechtshilfe in Strafsachen)은 1959. 4. 20. 유럽평의회 회원국간에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1962. 6. 12.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 3. 10. 국회에서 동의되었고, 2011. 9. 29.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2011. 12. 29. 조약 제2071호로 발표되었다.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은 전문과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은 일반적인 규정을, 제2장(제3조 내지 제6조))은 사법공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3장(제7조 내지 제12조)은 문서와 법원판결의 송부 및 참고인·증인, 감정인 피의자·피고인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제13조)은 전과자등록부를, 제5장(제14조 내지 제20조)은 사법공조절차를, 제6장(제21조)은 재판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제7장(제22조)은 재판기록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제8장(제23조 내지 제30조)은 종결조항을 규정하고 있다.[87]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 요청시 요청국의 사법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진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 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국적을 불문하고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소환에 출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은 피요청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행위 또는 선고받은 유죄판결에 대해 요청국의 영역내에서 기소 또는 구금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럽범죄인인도협약(1957)

유럽범죄인인도협약(Europäisches Auslieferungsübereinkommen)은 1957. 12. 13.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1960. 4. 18.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 3. 10. 국회에서 동의되었고, 2011. 9. 29.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2011. 12. 29. 조약 제2070호로 발표되었다.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인도의무(제1조), 인도대상 범죄(제2조), 정치적 범죄(제3조), 군사적 범죄(제4조), 재정범죄(제5조), 일사부재리(제9조), 특정성원칙(제14조), 긴급인도구속(제16조), 인도대상자의 인도(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당사국은 이 협약에 명시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범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당국에 의해 형의 집행이나 구금 명령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자를 인도하도록 하고, ② 인도대상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명령이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하며, ③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8]

87) 유럽형사사법공조협약의 번역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8)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의 번역문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조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미국의 저장통신법(CLOUD ACT)

가. 서설

미국 의회는 2018년 3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을 통과시켰다. 동 법률에서는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통신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89] 또한, CLOUD Act에서는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과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 양국이 이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CLOUD Act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이 국제공조 수사에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입법배경: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Microsoft Ireland) 사건

(1) 사실관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1997년부터 hotmail.com, msn.com, outlook.com 등 웹기반 이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왔다.[90]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송수신한 이메일 메시지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한다.[91] 데이터 센터는 미국 및 해외에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며, 특정 사용자의 정보의 저장위치는 “네트워크 지연(network latency)” 현상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현상은 데이터센터와 사용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원리를 말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급적 각각의 계정을 가장 근접한 데이터 센터에 할당하게 된다.[92] 따라서 사용자가 가입 단계에서 입력한 “국가 코드”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계정을 더블린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할당할 수 있다.[93] 만약 이렇게 되면, 모든 콘텐츠 정보 및 대부분의 비내용 정보는 미국 내 서버에서 삭제되

89) CLOUD Act 이전에도 오린 해치(Orrin Hatch)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의회는 저장통신법을 개정하여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15년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접근에 관한 법률(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Stored Abroad Act, LEADS Act)”과 2017년 “국제통신 프라이버시 법(International Communications Privacy Act, ICPA)”은 모두 저장통신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9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Outlook.com”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1)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개국 이상의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100만대 이상의 서버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40개국 이상에 퍼져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데이터 센터 중 한 곳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해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2 (2d Cir. 2016).

92)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67 (S.D.N.Y. 2014).

93)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이 입력한 국가코드에 의해 데이터를 이전하기 전에 별도로 사용자의 신원이나 위치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그대로를 수용한다.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며, 주소록 정보나 기본적인 사용자의 이름이나 국가와 같은 정보 등 일부 비내용 정보(non-content information)는 테스트 및 품질관리 목적상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94]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이전이 종료되면, 더블린에 저장된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블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95]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일랜드에 물리적으로 소재할 필요는 없고, 미국 내 사무실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서버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를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다.[96]

2013년 12월 4일 미국 정부의 신청에 따라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수색영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소유, 유지,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특정 웹기반 이메일 계정의 정보를 압수수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97] 치안판사는 해당 이메일 계정이 마약 밀매에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은 Washington 주 Redmond에 본사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시되었다.

해당 영장에 대한 대응은 마이크로소프트의 Global Criminal Compliance(GCC) 팀이 담당하였는데, GCC 팀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수집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위치한 서버로부터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98]

이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비내용 정보(non-content information)를 제출하였으나 콘텐츠 정보가 더블린에 저장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정보에 대한 영장에 대해 각하 신청(motion to quash)을 하였다.

(2) 지방법원의 판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장통신법과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 따라 정부가 영장에 의하여 정보를 요청하였고, 연방법원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99]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에서의 영장이 더블린에 저장된 정보의 획득을 요구하는 이상, 그러한 영장은 허가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3 (2d Cir. 2016).

9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67 (S.D.N.Y. 2014).

95)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3 (2d Cir. 2016).

96)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3 (2d Cir. 2016).

97) 해당 영장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a. 해당 계정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 내용, b.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세션정보, 가입일자, 가입시 IP주소, 로그인 IP주소, 결제수단 등 계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기록 또는 정보, c. 주소록, 친구목록, 사진 및 파일 등 계정 사용자에 의해 저장된 모든 기록 또는 정보, d. 고객지원서비스 이용 기록 등 MSN과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 간의 통신에 관한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68 (S.D.N.Y. 2014).

98)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68 (S.D.N.Y. 2014).

99)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0 (S.D.N.Y. 2014).

뉴욕남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이하 “지방법원”)은 법률 문언과 저장통신법의 구조, 입법 연혁,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차례로 분석하였다.[100] 법률의 문언에 대해서는 연방법률 제2703조 (a)호에서 “정부기관은 연방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관할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유선 또는 전기통신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 해당 영장의 영토적 적용범위가 제한되는지 모호하다고 판단하였다.[101]

법률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장통신법은 수정헌법 제4조 상의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서비스제공자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았다.[102] 또한, 저장통신법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저장통신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메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방법원은 제2703조 (a)호에서 “영장(warr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장 절차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원의 명령은 전통적인 영장과는 다르며, 수색영장(search warrant)과 제출명령(subpoena)이 혼합된(hybrid) 형태라고 보았다.[103] 즉, 발부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여 판사에 의해 발부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제출명령과 같이 정보를 보유한 ISP에게 제시되며 정부 요원이 직접 ISP의 영역 내에 들어가 서버를 수색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법원은 저장통신법의 이러한 독특한 구조가 저장통신법에 대해서 역외주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제출명령은 수신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4] 이러한 접근방식은 디지털 정보의 맥락에서 “수색은 데이터가 하드드라이브에 복제되거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때가 아니라, 데이터가 스크린에 현출된 경우와 같이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과도 일치한다.[105]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86년 상원 보고서에서는 역외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원격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1년 애국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USA PATRIOT Act) 제108조에서는 제27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

100)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466 (S.D.N.Y. 2014).
101)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0-471 (S.D.N.Y. 2014).
102) Orin S. Kerr, *supra* note 496, p.1212. ;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1 (S.D.N.Y. 2014)에서 재인용.
103)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1 (S.D.N.Y. 2014).
10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2 (S.D.N.Y. 2014).
105) Orin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Harvard Law Review,* Vol.119 (2005), p.551.

함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시 하원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조하였다.[106] 당시 개정 전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영장은 압수대상 재산이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발부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애국법 제108조에 따라 수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ISP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개입 없이도, 직접 해당 ISP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2703조가 개정되었다. 또한, 법원은 하원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재산이 위치한 장소(where the property is located)"를 서버의 위치가 아닌 ISP의 위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107]

따라서 지방법원은 의회가 미국 내에 있는 ISP는 제2703조 (a)호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응하여 정보가 저장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지방법원은 실무적인 고려사항으로 만약 저장통신법 영장에 전통적인 영장의 영토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법집행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108] 우선, 서비스제공자는 이메일 계정이 생성될 당시 고객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저장통신법 영장이 전통적인 수색영장과 같이 취급된다면, 그것은 국제사법공조조약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LAT 절차가 장시간이 소요되고 공조 거절사유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는 것과 같이 만약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조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다.[109]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역외적용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법률은 역외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의 법은 국내의 문제를 규율하며, 세계의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does not rule the world)[110]"는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역외적용 추정 금지 원칙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저장통신법 영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집행관을 외국으로 파견하는 것도 아니며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서비스제공자의 직원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다.[111] 즉, 지방법원은 압수의 장소를 데이터의 저장(storage) 위치인 아일랜드가 아니라 정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review)할 장소, 즉 미국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역외적용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법원은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저장통신법 영장은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각하 신청을 기각하였다.

---

106)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2-473 (S.D.N.Y. 2014).
107)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4 (S.D.N.Y. 2014).
108)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4 (S.D.N.Y. 2014).
109)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5 (S.D.N.Y. 2014).
110) Microsoft Corp. v. AT & T Corp., 550 U.S. 437, 454, 127 S.Ct. 1746, 167 L.Ed.2d 737 (2007).
111)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75-476 (S.D.N.Y. 2014).

(3) 항소법원의 판단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 법원에서 콘텐츠 정보에 한하여 해당 영장에 대하여 각하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은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지방법원은 영장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민사적 법원 모욕(civil contempt in court)[112]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하였고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113]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는 저장통신법 영장의 특징과 범위 및 영장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의회가 저장통신법에서 "영장(warr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4] 영장은 전통적으로 영토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의 법집행관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으로 미국 내에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더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는 이 분쟁을 단순히 "강제 공개(compelled disclosure)"에 대한 사안으로 이해하였다.[115] 즉 정부는 제출명령과 유사하게, 저장통신법 영장은 수신자로 하여금 그러한 문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것이 수신자의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한, 기록이나 물건, 또는 기타 자료를 정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적절하게 제시된 제출명령은 문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제출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시한 기존의 법원의 판단을 원용하였다.[116]

영장은 1986년 제정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제2편(Title II)인 저장통신법에 따라 발부되었다. 동 법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 파일과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제공되던 것과 동일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자기록에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항소법원은 30년 전 1986년 저장통신법이 통과될 당시의 기술적 상황이 오늘날의 인터넷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17] 오늘날 네트워크 통신의 표준인 TCP/IP 프로토콜은 1980년경 국방부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월드 와이드 웹(WWW)은 1990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1986년 법이 제정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되었다.[118]

---

112) 미국에서 법원모욕의 종류는 모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과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모욕(criminal contempt)과 민사모욕(civil contempt)으로 구분된다. 민사모욕은 미완성의(incomplete) 모욕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명령에 따를 때까지 제재가 부과되고 명령에 복종하면 바로 모욕행위가 종료되고 제재는 중단된다. 민사모욕의 제재는 처벌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부과되며, 민사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보장되는 수정헌법상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형사모욕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미 완성된(complete)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된다. 하민경 등,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5, 2015, pp.59-61.

113)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197 (2d Cir. 2016).

11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1 (2d Cir. 2016).

115)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1 (2d Cir. 2016).

116) Marc Rich & Co., A.G. v. United States, 707 F.2d 663 (2d Cir. 1983).

117)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5-206 (2d Cir. 2016).

118)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지방법원에서는 저장통신법 영장이 영장보다는 제출명령과 더 유사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119]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장통신법 영장이 제출명령보다는 전통적인 영장과 더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120]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경 밖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미국에서 접근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저장통신법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저장통신법의 불법적인 역외적용일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에 대한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121]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메일 계정의 소유자의 국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다. 저장통신법은 법률의 전체적인 적용범위와 영장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122] 따라서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123]에서 발전된 "역외적용 추정 금지 원칙"의 심사기준에 따라 의회가 저장통신법의 영장 조항을 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역외적용을 의도하였는지 먼저 검토한 후, 그렇지 않다면, 해당 영장의 집행이 법률의 불법적인 역외적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다.[124]

이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항소법원은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이란, 역외적용에 대한 입법기관의 의사가 법률에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해당 국내법은 역외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125] 연방대법원은 Morrison 사건에서 특정 법률의 역외 적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2단계의 기준을 발전시켜왔다.[126] 법원은 우선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이 반증될(rebuttable) 수 있는

---

829 F. 3d at *206 (2d Cir. 2016).

119)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9 (2d Cir. 2016).

120) *Ibid.*

121) *Ibid.*

122) *Ibid.*

123) 연방대법원은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Morrison 사건에서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을 처음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사기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의 역외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상 역외적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법률의 주된 초점은 기망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증권의 구매와 판매된 장소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청구 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010); 백범석, 김유리, "[판례평석]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pp.256-257; William S. Dodge,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n Two Steps", *AJIL Unbound*, Vol. 110, 2016, p.45.

12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09 (2d Cir. 2016).

125)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010). 이러한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은 외국의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며, 행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외교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사법부가 미국 국내법을 해석하여 미국의 중대한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백범석, 김유리, *supra* note 616, p.270.

126)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010). 이후 연방대법원은 2016년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판결에서 Morrison 판결에서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2단계 심사기준을 공식화하고 발전시켰다.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136 S. Ct. 2090 (2016). RJR Nabisco 사건에서는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의 실체법적 규정 및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 규정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실체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역외적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 소송은 기업이나 재산에 대한 국내적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손해에 대한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William S. Dodge, *supra* note 616, p.46. RJR Nabisco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선욱,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제30호, 2020,

지 여부 즉, 해당 법률의 문언상 동 법률이 역외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clear indication of extraterritoriality)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27] 그 다음으로 법원은 사건이 법률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해당 법률의 주된 입법취지(focus)가 무엇인지 그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있는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128]

법원은 우선 의회가 법률의 역외적용을 의도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저장통신법의 영장 조항이 역외적용을 의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저장통신법이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129]

또한, 의회가 "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해당 법률 조항이 영토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130] 즉 "영장"을 전통적인 법적 의미에 따라 해석할 때, 영장은 전통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개념과 관련이 있고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131]

항소법원은 저장통신법 영장과 제출명령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과 제출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수단이며, 영장이 저장통신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제출명령은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장과 제출명령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32] 또한, 법원은 저장통신법 영장이 전통적인 영장과 제출명령의 혼합된 형태라고 보는 주장도 배척하였다.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간 당사자에게 협조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정부의 기관이 되며, 수정헌법 제4조는 그러한 민간 당사자의 행위에 적용된다고 보았다.[133]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회가 저장통신법 영장 조항의 역외적용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2단계 심사기준인 저장통신법의 주된 입법취지(focus)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률의 문언상 의미, 법률의 구조, 절차적 측면 및 입법 연혁을 살펴보았다.[134] 제2703조는 영장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상의 절차에 따라 발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형사소송규칙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헌법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135] 또한, 제2703조가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법(ECPA)"이라는 표제 하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주요 관심사는

---

pp. 239-246 참조.

127) William S. Dodge, *supra* note 616, p.45.

128) *Ibid.*, p.46.

129)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역시 구두 변론 시, 저장통신법에 역외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0-211 (2d Cir. 2016).

130)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2 (2d Cir. 2016).

131)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2 (2d Cir. 2016).

132)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4 (2d Cir. 2016).

133)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4 (2d Cir. 2016).

13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7 (2d Cir. 2016).

135)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7 (2d Cir. 2016).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136] 또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의회는 기술의 발전이 미국인이 기록 및 통신에 대해 전통적으로 향유해오던 프라이버시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137] 따라서 의회는 저장통신법의 제정을 통해 저장된 전기통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전기통신에 확장시키고자 하였다.[138] 법원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저장통신법 영장 조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저장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았다.[139]

법률의 주된 입법취지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점을 확인한 후, 법원은 영장의 집행이 법률의 불법적인 역외적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140]

이 사건에서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의 전기통신의 내용이며 이 정보는 더블린에 저장되어 있다. 고객의 국적이나 소재지에 대해서 기록은 침묵하고 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의 주된 취지에 따라 고객의 소재지나 국적이 역외적용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고객의 통신내용에 접근하는 장소,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대리인으로 통신내용을 압수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141] 즉, 법원은 영장의 대상이 되는 통신내용이 더블린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고 더블린 데이터센터에서 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위치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저장통신법의 입법취지에 해당되는 행위는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142]

정부는 저장통신법 영장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법집행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실무적인 고려사항은 해당 법률의 문언, 입법 연혁, “영장”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역외추정 금지를 반증할만한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43] 결론적으로 법원은 영장의 집행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아일랜드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의 통신내용을 압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 그러한 영장의 집행은 불법적인 역외적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144]

(4) 연방대법원의 판단

법무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일 당시 저장통신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145] 2018년 법무부가 제안한 역외 적용 조항이 포함된

136) *Ibid.*
137)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19 (2d Cir. 2016).
138) *Ibid.*
139)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20 (2d Cir. 2016).
140) *Ibid.*
141) *Ibid.*
142)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20 (2d Cir. 2016).
143)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21 (2d Cir. 2016).
144)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22 (2d Cir. 2016).
145) Stephen P. Mulligan, “Cross-Border Data Sharing Under the CLOUD Act,” Congressional Research

CLOUD Act가 의회에 상정되었고, 이후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하였다.[146]

이에 법무부는 CLOUD Act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집행하였고,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양 당사자는 새로운 영장이 기존의 영장을 대체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였다.[147]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 사건이 더는 소의 이익이 없다(moot)고 판단하여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148]

(5) 검토

지방법원은 법률의 구조와 입법 연혁, 실무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여 저장통신법 영장은 영장과 제출명령이 혼합된 독특한 영장이며, 전통적인 영장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았다. 따라서 저장통신법 영장은 그 발부 절차는 일반 수색 영장과 동일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제출명령과 같이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저장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저장통신법 영장과 제출명령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입장을 배척하고, 영장과 제출명령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저장통신법의 주된 입법취지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블린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장통신법 영장의 집행은 법률의 불법적인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법원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장통신법 영장을 전통적인 영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영장의 효력이 국내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였고, 지방법원과 정부는 저장통신법 영장을 제출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영장의 집행 대상이 미국 내에 있다면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역외적용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에서 Gerard E. Lynch 재판관은 개별의견에서 이메일 계정 소유자의 국적 또는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에서 이메일 계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자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49]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에는 분명한 영토적 장소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해당 통신내용의 정보주체가 미국인인지 아일랜드인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150] 이외에도 개별의견에서 Lynch 재판관은 정부가 제기한 정책적

Service Report, 2018, p. 7.

146) *Ibid.*

147) *Ibid.*, p. 8.

148)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584 U.S. ___, 138 S. Ct. 1186 (2018).

149)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29 (2d Cir. 2016).

150)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30 (2d Cir. 2016).

고려사항 역시 중요하며, 이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중대한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같은 법집행 필요성과 다른 주권국가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 형량하여,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51]

다. 입법취지

CLOUD Act 제102조에 따르면, 동 법의 역외적용 규정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CLOUD Act의 전문에서도 테러리즘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적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간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된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통신내용과 같이 미국 법률이 해당 데이터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CLOUD Act 전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외국 정부가 프라이버시 및 기본권 보호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라. CLOUD Act의 주요 내용

(1)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CLOUD Act 제정 이전에는 정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미국 밖에 저장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Microsoft 사건에서와같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밖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미국 의회는 CLOUD Act를 통해 저장통신법 제2713조를 신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제2713조에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통신, 기록 또는 기타 정보가 미국 내 또는 미국 밖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공자가 보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기타 기록 또는 고객 또는 가입자의 정보를 보존, 백업(backup), 또는 공개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52]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장통신법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제18조 해설서(guidance note)에서 자국 영토 내에 서비스제공자가 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153]

---

151)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829 F. 3d at *232-233 (2d Cir. 2016).

152) §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2) 서비스제공자의 영장 이의 신청 제도 신설

CLOUD Act는 저장통신법의 제2703조를 개정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저장통신법 영장에 대해서 사전에 법원을 상대로 이를 무효로 하거나 변경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154] 이러한 메커니즘은 예양(comity)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예양에 대한 분석(comity analysis)은 커먼로(common law)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국내법과 외국법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미국과 해외 정부의 관련 이해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이다.[155]

미 법무부에 따르면, "영장발부신청은 그 승인을 위해 독립적인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판사는 정부가 선서 진술서에 의해 1) 특정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존재 및 2) 이메일 계정과 같은 압수장소가 특정 범죄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영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영장은 세부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특정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156] CLOUD Act는 체계적이고 대량의 비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고, 동 법은 특정 법집행을 위한 수사와 관련된 대상 요청만을 규율하며, 절차적 안전장치(procedural safeguards)를 두고 있다.

저장통신법 영장이 아닌 일반 수색영장의 경우, 영장집행의 대상자 즉, 피압수자는 영장이 무엇을 압수수색하기 위함인지 대부분 알기가 어렵고, 영장은 일반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항목을 압수하는 법집행관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저장통신법 영장의 경우, 통상 법집행기관이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영장을 제시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집행된다. 제출명령(subpoena)의 경우 집행되기 전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만, 영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이 영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LOUD Act는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 또는 고객의 통신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고객이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그러한 공개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qualifying foreign government)의 법률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영장을 변경 또는 무효화(quash)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57] 또한, 그러한 청구는 정보 공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영장을 집행한 정부기관에 이에 대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정보의 공개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의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법정의에 따라 그러한 영장이 변경되거나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158] 그

153)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 T-CY Guidance Note #10 - Production orders for subscriber information(Article 18 Budapest Convention), T-CY(2015)16, 1 March 2017, p.6.
154) CLOUD Act, H.R. 1625, 115th Cong. div. V, § 103(b) (2018) (18 U.S.C. § 2703(h)).
155) Jennifer Daskal, "Microsoft Ireland, the CLOUD Act, and International Lawmaking 2.0", *Stanford Law Review Online,* Vol. 71, 2018, p.11.
156) *Ibid.*, p. 8.
157) 18 U.S.C. § 2703(h)(2)(A).
158) 특히 이 경우를 판단할 때 제2703조 (h)항 (3)호에서는 '예양 분석(comity analysis)'이라는 표제 하에 법원이 고려해야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신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이익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 공

리고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변경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다.[159]

즉 CLOUD Act는 미국 정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이 외국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대상자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서비스제공자가 우려하는 외국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3)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을 통한 정보제공절차 마련

CLOUD Act는 저장통신법에 제2523조를 신설하여 초국경적 정보 제공요청을 위한 미국과 외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60] 제2523조는 미국의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통신법을 위반하지 않고 행정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정보 제공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2523조는 특정 외국 정부의 국내법 및 그 실행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및 자유권을 실체적·절차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정부와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61]

만약 외국 정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상호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국 국가들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2523조에서는 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2523조에서는 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는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밖에 위치한 비(非) 미국인을 대상으로 명령을 발부해서는 안 되며, 외국 정

개를 금지하는 외국 정부의 이익, 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된 일관성 없는 법적 의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제재의 가능성, 범위 및 성격, 가입자 등의 위치와 국적, 가입자 등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연관성의 성격과 정도, 또는 제3512조에 따라 외국 수사기관이 통신내용 공개를 요청할 때에 가입자 등이 그 외국에 대하여 가지는 연결점의 성격과 정도, 서비스제공자가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연관성의 성격과 정도, 공개 대상 정보가 수사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 다른 수단을 통해 공개 대상 정보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제3512조에 따라 외국 수사기관이 통신내용 공개를 요청할 때에 그 외국 수사기관의 이익"이 포함된다. 18 U.S.C. § 2703(h)(3).

159) 18 U.S.C. § 2703(h)(2)(B).

160) CLOUD Act § 105(a) (18 U.S.C. § 2523 신설).

161) 특히, 제2523조는 법무장관이 특정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 여부를 판단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외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당사국이거나 사이버범죄협약상의 규정이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정부가 사이버범죄 및 전자증거에 관한 적절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진 경우;
- 법치와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경우;
-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상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거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금지, 고문 및 잔인한,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한 국제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나타내는 경우;
- 외국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수집, 보유, 활용, 공유하는 절차 및 그러한 활동의 효과적 통제를 포함한 분명한 법적 권한 및 절차를 갖춘 경우;
-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책임성 및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충분한 메커니즘을 갖춘 경우;
-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인터넷의 공개되고 분산되고 상호연결된 특성을 촉진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

부에 의해 발부된 명령은 테러리즘을 포함한 중범죄의 예방, 탐지, 수사, 기소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 계정,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외국 정부에 의해 발부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CLOUD Act는 통신에 대한 불법 감청 또는 공개를 금지하는 저장통신법 제2511조를 개정하여 제2511조 (2)항 (j)호를 신설하였다. 제2511조 (2)항에서는 불법감청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CLOUD Act는 (j)호에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523조에 따라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을 감청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동 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not be unlawful)'고 명시적으로 규정[162]하고 있다.

CLOUD Act에 의해 승인된 행정협정은 기존의 국제 데이터 공유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163] 따라서 공조 요청은 여전히 기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이하 "MLAT") 등의 절차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정부와 CLOUD Act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요청이 미국인이나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CLOUD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과 MLAT이 체결되어 있지만, CLOUD Act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또는 CLOUD Act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 요청의 경우에 외국 정부는 기존의 MLAT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164]

마. 국제수사공조와 관련된 의미 또는 시사점

미국에 본사를 둔 IT 기업들이 세계 전자통신의 대다수를 자사의 서버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데이터는 상당하고 데이터 제공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65]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간 공식적인 협력절차인 MLA 절차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CLOUD Act의 행정협정 관련 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MLAT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LOUD Act의 통과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더 많은 정부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166]

---

162) (j) It shall not be unlawful under this chapter for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to the public or remote computing service to intercept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an order from a foreign government that is subject to an executive agreement that the Attorney General has determined and certified to Congress satisfies section 2523.

163) Stephen P. Mulligan, "Cross-Border Data Sharing Under the CLOUD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2018, p. 23.

164) *Ibid.*

165) Tiffany Lin and Mailyn Fidler. "Cross-Border Data Access Reform: A Primer on the Proposed U.S.-U.K. Agreement", A Berklett Cybersecurity publication,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2017), p. 4.

166) 영국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미국 정부와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 10월 최초로 미국과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Jennifer Daskal, *supra* note 518, p.14; Press Release, U.S. Department of Justice, U.S. and UK Sign Landmark Cross-Border Data Access Agreement to Combat

5. 코리안데스크

가. 한국-필리핀 간 치안협력약정(MOU)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1) 개관

2007.3. 한국-필리핀 간 치안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으며, '10.10월, 필리핀 경찰청에 필리핀 경찰로 구성된 '코리안데스크' 설치하였다. '12.5월, 필리핀 경찰청(마닐라 코리안데스크) 최초 파견한 이후 '15.2월, 필리핀 경찰청(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 '16.4월, 마닐라·세부·카비테·바기오에 한국경찰관 4명 추가 파견, '20년 1명을 추가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3명의 한국 경찰관이 필리핀 경찰과 수사공조 중이다. 한국 경찰관의 필리핀 내 활동은 국내법 상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코리안데스크의 활동 근거는 「필리핀 경찰청과 대한민국 경찰청 간 양해각서」('13.9.10.)에 규정하고 있다.

(2) 담당관의 자격요건과 직무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담당관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인 자 (승진후보자 포함),
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
3.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있는 자,
4. 기타 외사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

담당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필리핀 내에서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에 해당하는 체포·압수 등 강제처분은 할 수 없으며, 필리핀 경찰청·이민청 등과 공조하여 도피사범의 소재파악 및 검거 공조, 주필리핀한국대사관 및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하여 도피사범 송환 지원 업무, 검거 현장 및 증거물 등 촬영 등 사실확인활동, 참고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좌명의자나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증거물 등 압수, 참고인이 아닌 수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은 불가능하다. 필리핀의 사법체계 상, 피해자가 필리핀 경찰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현지에서 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요청 등 공조활동은 불가능하다.

Criminals and Terrorists Online (Oct. 3, 2019), https://www.justice.gov/opa/pr/us-and-uk-sign-landmark-cross-border-data-access-agreement-combat-criminals-and-terrorists

(3) 주요 공조사례

이른바 김미영팀장 사례로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원조격인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으로, '12년부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약 80억원('14.12월 천안동남서 A수배) 하였으며, 실제 피해액은 수백억으로 추정되었다.

마닐라 코리안데스크(경감 장성수)가 피의자가 한인마트를 운영한다는 첩보 확보, 잠복 끝에 수도(마닐라)에서 400Km 거리에 위치한 해당 마트에서 필리핀 경찰청 및 이민청과 공조하여 피의자 검거('21.10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서울청(인터폴공조팀)·코리안데스크가 긴밀히 협업, 간부급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하며 단서 확보해 전화금융사기 1세대 조직 총책 검거한 사례는 주요한 공조사례이다.

나.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1) 개관

2013.7월, 한국-베트남 간 제5차 인터폴 회의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15.8월에 양국 데스크 MOU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후 '15.11월에 경찰청장이 베트남 방문 시 양국 MOU를 정식 체결하면서 '15.12월 양국 전담데스크가 동시에 개소하였다.

베트남 공안부의 코리안 데스크는 공안부 대외국 내 한국어 특채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경찰청의 베트남 데스크는 외사국 내 베트남어 특채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조 범위

가능한 공조범위는 도피사범 소재파악 및 검거 공조(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수사국 공조), 도피사범 송환 지원(현지공관 및 공안부와 협의), 사실 확인(검거 현장 및 증거물 등 사진 촬영), 증거물 원본 인계(피의자 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원본)는 가능하지만, 금융거래정보(계좌명의자, 거래내역 등), 전화번호를 통한 인적사항 등 파악(베트남 휴대폰은 인적사항과 연계되지 않음),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징구(참고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수사서류(수사서류의 내용을 기재한 전문은 확보 가능)는 공조가 어려운 사항이다.

(3) 공조 사례

총책 A씨(47세, 동종전과 3범) 등 6명은 '19.7월경부터 베트남(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약 1조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베트남 코리안데스크에 본 건 주요 첩보 제공하며 한·베 양국 경찰의 합동단속을 요청('23.4월), 공동조사팀 파견하여 현장 검증, 압수물 인수, 총책 등 조직원 4명 강제송환(5월)하였다. 이 사례는 한·베 양국 공동조사팀 합동단속, 상호 절차를 존중하며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공조한 우수 사례이다.

제4절 국제공조수사와 관련된 국제조약 분석

1.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 서론

특허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두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 영역과 관련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유출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사법권은 해외에 미치지 않으며, 사이버공간에서도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두 영역을 아우르는 규범적 근거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하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함)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평의회 주도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약인데, 현재 68개국이 가입하였고, 23개국이 초청서를 받은 상황이다.[167] 유럽과 미국 등은 부다페스트 협약을 확장시켜 전 세계적인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위주로 확립된 부다페스트 협약의 확장에 반대하여 소위 새로운 '세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2022년 10월에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168] 그리고 현재 유럽평의회로부터 정식 가입 초청서까지 받은 상태이다.[169] 특허 산업기술 유출 대응과 관련해서 부다페스트 협약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개선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으므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다페스트 협약 가운데 "국제공조"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하게 된다. 현재 68개국과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23개국이 모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91개국에 불과하다. 협약 미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특허 산업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자신들 주도의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국들과 그 외 국가들로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다페스트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과는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양자간 협약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67)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168)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854&page=1
169) https://www.lawtimes.co.kr/news/188732

나. 부다페스트 협약 - 국제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부다페스트 협약 제3장에서는 국제공조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170] 사이버범죄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특허 산업유출과 같은 범죄도 사이버범죄화, 국제범죄화, 조직범죄화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와 같은 국제공조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다페스트 협약에서도 국제공조에 대한 규정을 비중있게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부다페스트 협약 제23조에서는 당사국들이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 관련 범죄에 관한 조사 및 절차를 목적으로 전자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협정이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상호협력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인인도(Extradition)의 원칙, 국제공조의 원칙, 국제 협약이 없는 경우의 국제공조와 절차, 그리고 국제공조 관련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당사국 간에 광범위한 국제공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나 범죄가 국제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제공조의 범위는 범죄에 사용되는 전자증거 수집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의 증거가 전자증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괄하고 있다.[171] 국제공조는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국제합의, 상호입법이나 형평에 기초한 협정, 국내법에 따라 동 협약 제3장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행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국 간 유효한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이나 국제공조와 관련된 국내법상 규정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172] 그에 따라 제24조 범죄인도협약(Extradition), 제25조 공조와 관련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mutual assistance), 제26조 자발적 정보제공(Spontaneous information), 제27조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공조요청(Procedures pertaining to mutual assistance requests in the absence of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제28조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Confidentiality and limitation on use) 등의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특별규정으로 제29조 컴퓨터데이터 및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공개(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제30조 보전된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공개(Expedited disclosure of preserved traffic data), 제31조 컴퓨터데이터의 접속에 관한 공조(Mutual assistance regarding accessing of stored computer data), 제32조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에 동의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국경 간 액세스(Trans-border access to stored computer data with consent or where publicly available), 제33조 트래픽 데이터 실시간 수집에 관한 공조(Mutual assistance regarding the 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제34조 콘텐츠 데이터 감청에 대한 공조(Mutual assistance regarding the interception of content data)에 대한 규정이 있다. 무엇보다 제35조 24/7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은 범죄 전자증거 수집 및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 관련 범죄 수사 및 소송을 지원하고, 국가 간 적정기관과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73]

이를 바탕으로 특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려해 볼 수 있

170)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1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2001, 14면.
17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14면.
1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66면.

다. 하나는 전통적인 범죄인인도와 현지에서의 수사공조가 있다. 우리 수사권이 다른 국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신원을 확보하게 될 경우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피의자를 우리나라도 송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국가의 수사기관과 우리 수사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부다페스트 협약과 같은 다자 간 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수사공조에 협력하는 국가의 수사능력, 수사자원, 자국의 관련 법령, 국가 간 친밀도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 수색과 같이 우리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다른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범죄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IT를 활용한 비밀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을 수행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공조

최근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과 지재권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74] 우선 국제공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나 검찰청, 외교부 등과 같이 국내기관들과 공조관계를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찰청은 인터폴이라는 국제협력망과 코리안 데스크 등과 같은 공조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은 전 세계 검사의 국제형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PICP)′ 구축을 통해 다른 나라 검찰과 국제형사공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처리하는 것과 함께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국제공조망을 형성하는 것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범죄인인도법을 살펴보면 그 절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법원, 검사, 경찰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있는 내용들이 국내 법률로 이행입법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공조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포함될 것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협약의 국제공조 조항들은 기존의 범죄인인도협약이나 국제공조 관련 협약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해당 협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함께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법으로 이행입법 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청에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이 이행입법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허청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174) https://www.e-patentnews.com/9633

라. 부다페스트 협약과 온라인 수색

온라인 수색은 피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수사기관이 백도어를 설치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비밀리에 접근하는 수사방법이다.[175]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이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등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176] 온라인 수색의 근거 규정으로 부다페스트 협약을 예로 드는 견해가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부다페스트 협약 제20조[177]와 제21조[178]가 온라인 수색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에 반해 부다페스트 협약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온라인 수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179] 특허 산업기술의 유출 문제에 있어 온라인 수색이 요구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반의 수사방식이 사이버범죄화, 국제화, 조직화 되어 있는 해당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국제공조를 통해 간혹 해당 범죄를 해결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는 하지만,[180] 이는 상대적으로 일부 범죄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범죄는 암수범죄화 된다.

온라인 수색 도입의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2008년 12월 '연방범죄수사청을 통한 국제테러의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에 테러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였다.[181] 이후, 2016년 연방헌법재판소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온라인 수색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2017년 8월에 해킹을 수단으로 하는 온라인수색 등에 관한 규정을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에 도입하게 되었다.[182] 하지만 독일 외에도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온라인 수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동수사팀이 휴대전화 암호통신망인 '엔크로챗'(EncroChat)을 통한 마약거래 등 범죄에 대해 온라인 수색을 사용하여 수사를 진행한 대표 사례가 부각되기도 하였다.[183]

현재 독일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폭넓게 온라인 수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4]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색을 폭넓게 수용하기에는 시민들을 설

---

175) 민영성·강수경,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 372면.
176)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제78호, 2023, 40~41면.
177) 부다페스트 협약 제20조 규정은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온라인 수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가입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 컴퓨터 시스템으로 중계 되는 특정한 통신데이터를 자국 영토 내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 수집하도록 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게 할 뿐 아니라 수집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이,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1-29호, 통권 제178호(2021. 11. 16.), 국회도서관, 3면.
178) 부다페스트 협약 제21조에서는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 가입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한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전달되는 특정 통신내용데이터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가 ㄴ수집하게 하면서도,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제20조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내용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게 할 뿐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과 협력하고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적 조이촤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이, 앞의 글, 3면.
179) 박희영, 앞의 글, 39면.
180)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67
181)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경찰학연구 제9권 제2호, 2009, 187면.
182) 허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58호, 2018, 118면~119면.
183)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제78호, 2023, 38면.
184) 독일은 형법상 테러관련 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살인죄, 강도죄, 재산범죄 뿐 아니라 망명절차법, 외국인체류법, 마약류법, 전쟁무기통제에 관한 법률, 국제형법, 무기법 등에도 온라인 수색을 사용할 수 있다.

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185] 보이스피싱 범죄, 특허 산업유출 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비밀수사 방법인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해당 수사방법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로 시민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186] 이처럼 온라인 수색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전면도입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가능한 일부 범죄와 관련된 규정에 도입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 연락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연락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 모델은 연락관 제도의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락관 제도는 코리안 데스크보다도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제도이다. 연락관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독일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이 있다. 독일 연방수사청도 연방수사청에 부여되는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사경의 성격을 띠게 된다. 독일 연방수사청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 연방수사청은 마약 남용 억제를 위한 연방 정부의 실행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국가 전략, 즉 마약의 근거지 및 경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마약 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목표로 삼는다. 해당 전략의 주요 목적은 마약 근거지가 되는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마약을 통제함으로서 마약생산 조직과 마약밀매 조직을 동시에 무력화시킴으로써 마약이 유럽(특히 독일)으로 밀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187]

독일 연방수사청은 처음에는 연락관 제도를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하였지만, 최근 독일 연방수사청은 다른 많은 범죄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수사청의 연락관의 기능은 계속해서 조정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마약 연락관으로부터 업무 영역이 확장되어 마약/OC 연락관, 테러/국가안보 연락관 또는 보통 연락관 등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연락관의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기존의 업무와도 구분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독일 연방수사청은 1998년 5월부터 'BKA 연락관'이라는 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188]

독일 연방수사청은 기본적으로 연락관에게 범죄예방 및 억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연락관은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지원 활동,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 기타 조사 관련된 활동 등 독일 경찰이 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진압, 특히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범죄 상황에 대한 전략 및 전술적 관찰·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연락관은 주재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성격의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제법뿐만 아니라 주재국의 법률 및 주재국과의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189]

---

185) 이원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2023, 196~197면.
186) 이원상, 앞의 글, 189면.
187) https://www.bka.de/EN/OurTasks/Remit/InternationalFunctions/LiaisonOfficers/liaisonOfficers_node.html;jsessionid=23B27C4D45DEA81D75C79880D35A42AF.live2292.
188) https://www.bka.de/EN/OurTasks/Remit/InternationalFunctions/LiaisonOfficers/liaisonOfficers_node.html;jsessionid=23B27C4D45DEA81D75C79880D35A42AF.live2292.

독일 연방수사청 연락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정보수집 및 교환(주로 독일 수사 절차 지원)
- 경찰 정보 교환 및 해당 경찰 당국의 법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요청에 의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 경찰 지원
- 해당 국가에서의 수색 사건에서 상호작용 및 법률지원 문제에 대한 요청
- 용의자 및 증인진술 확보, 수색 및 기타 수사와 관련된 문제 처리
- 발견 또는 전달된 문서분석
- 독일과의 연결을 통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수사절차 해당 국가를 지원
- 범죄진압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보안 당국에 일반지침제공
- 주재국 및 담당 지역에서의 회의 및 전문가 회의 참여
- 범죄진압 조치와 관련해서 독일 및 주재국 독일 외교 공관에 조언

바. 결론

전통적으로 범죄는 수사권이 미치는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가 내 사법자원 보강, 법률 정비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최근 범죄유형은 현실을 넘고, 국경을 넘어 조직화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기술유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이버범죄화, 국제화, 조직화 되고 있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사이버수사강화 등 이전의 방식과 구분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부다페스트 협약과 같은 다자 간 협정이나 양자 간 협정, 온라인 수색과 같은 IT활용 비밀수사방법 등이 새롭게 요구된다. 또한 국제공조는 형식상 공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코리안 데스크[190] 등과 같이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제공조 요청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 다른 국가의 공조요청은 부가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자국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 입장에서는 이행입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특허청 입장에서 국제공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함께 주요 침해국에는 특허청 직원이 직접 상주하여 기술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189) https://www.bka.de/EN/OurTasks/Remit/InternationalFunctions/LiaisonOfficers/liaisonOfficers_node.html;jsessionid=23B27C4D45DEA81D75C79880D35A42AF.live2292.

190)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베트남, 필리핀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한국인이 가해 및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과 밀접하게 공조할 수 있는 가장 현실화 된 방안으로서 연락관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2015년부터 KOICA와 협력하여 퇴직경찰관들을 해외에서 치안분야 봉사단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치안전문가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신상철, 외사경찰론, 박영사, 2019, 26면.

2. WIPO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

가. 개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다. 기술침해와 관련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WIPO에서의 법정책은 기술침해의 경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1974년에는 UN 전문기구로 지정받았다.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조약 제정 논의 등을 위해 총회의 결정으로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로서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등을 두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의 배포, 사용 및 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제4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바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직무

기구는 제3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또는 제 동맹 각각의 관할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ⅰ)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입법을 조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조치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ⅱ) 파리동맹,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ⅲ)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국제협정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 있으며;

(ⅳ)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ⅴ)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에 협조를 제공하며;

(ⅵ)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 촉진하며 동 연구의 결과를 공포하며;

(ⅶ)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역무를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등록과 등록에 관한 자료의 공표를 위한 준비를 하며;

(ⅷ) 기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 자신들의 및 다른 국가 사람들의 정신적 창작물에서 기인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집행, 관련 행정기구의 설립 및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191]

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집행 관련 정책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제4조의 직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당해 기구가 관장하는 베른 조약 등에서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의 주체 및 종류와 대상, 시간적·장소적 범위 등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조화로운 국내 입법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가 통일된 저작권 관련 국내법을 입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보호 대상 저작권에 대한 법제도의 국가 간 조화라는 노력 외에, 본 연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집행에 있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침해 후 법집행 뿐 아니라, 사전 침해 예방적 수단으로서 워터마크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본 연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도록 한다.

먼저, 전반적으로 볼 때-추후 살펴볼 조화로운 법집행을 위한 각국의 법집행기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인터폴 및 유로폴과 달리-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법집행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권리의 국가 간 조화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법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은 인터폴과 유로폴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장하는 베른협약 등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으로 동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범죄로 정할 것인지, 정한다면 어떠한 종류와 정도의 형벌로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권고하는 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벌금과 최대 7년까지의 형벌을 포함할 것을 제시한다.[192] 또한,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가 효과가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권리자의 허가 없이 행하여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193] 또한, 실제 직접적인 침해 행위자뿐 아니라, 당해 침해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 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물에 대한 몰수 및 보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다.[194]

나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나라의 국내법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통일된 법적 뼈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양태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동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195] 또한, 국제 차원에서 제공되는 법적 뼈대가 실제 국내법으로 입안이 되어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국제 차원 도입된 법제도의 국내적 도입을 위한 각 국가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91)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WIPO publication No.489, 2004, 6면.
192) 상게서, 218면.
193) 상게서, 218면.
194) 상게서, 219면.
195) 상게서, 220면.

3. 국제협약상 국제공조 관련 규정 검토

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이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은 1988년 12월 20일 비엔나에서 106개국의 대표 및 전문가 1,000여명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고 마약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수익의 이동경로 추적활동과 범죄수익 은닉 의 수사 및 기소를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196] 동 협약은 전문과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롯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인인도, 사법공조의 추진, 통제 배달(controlled delivery), 마약 등의 원료·제조기구의 규제, 선박에 의한 부정거래의 단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인도청구의 거부사유로 정치범 불인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인 인도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입증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사법공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당사국은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및 사법절차에서 상호 최대한의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공조의 내용으로는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재판서류의 송달,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물건 및 장소의 조사, 정보 및 증거물의 제공, 은행·재무·법인 또는 상업기록을 포함한 관련 문서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공, 증거수집목적의 수익, 재산 및 도구 기타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이 포함된다.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공조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조요청당국의 특정(特定)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과 성격 및 이러한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행하는 당국의 명칭 및 기능
다. 관련사실의 개요.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재 및 요청당사국이 특별히 희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관계인의 신원, 소재지 및 국적
바. 증거, 정보 또는 조치를 요청하는 목적

또한, 제7조 제15항에서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요청당사국이 당해 요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또는 기타 중요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상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요청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경우, 요

196)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14, 2004, 106-107면.

청을 이행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제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 4가지의 공조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약 제9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을 진압하기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행정제도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용으로는 정보의 확실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망을 설치하고 유지할 것과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자의 인적사항, 소재 및 활동, 범죄수익 및 자산의 흐름 등을 조사함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반을 설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UNTOC)은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UN 협약이다. UN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책을 마련하고자 협약 초안을 성안하였고, 동 협약은 2000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197]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이행입법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UN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5일자로 동 협약이 발효되었다. UNTOC는 총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제조직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협력을 위해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자금세탁의 처벌 등 실체법적인 처벌규정을 둘 것과 함께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과 관계되는 절차법적 규정을 두어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 중 국제공조와 관련된 규정은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을 규정하는 제13조, 범죄인인도를 규정하는 제16조, 사법공조에 관한 제18조, 합동수사에 관한 제19조와 법집행 협력에 관한 제27조 등이 있다.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수익, 재산 등 몰수를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원으로부터 몰수 명령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고, 해당 범죄수익, 재산 등을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16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제6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사법공조에 관한 조문인 제18조에서는 당사국은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상호 공조 조치를 제공하고, 범죄의 피해자, 목격자, 수익, 도구 또는 증거가 피요청당사국에 소재하는 것

197) UNTOC에는 3개의 부속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2000년 11월 15일 UN 총회에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밀수방지협약 및 의정서'(Convention and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등 2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고 이듬 해인 2001년 5월 31일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가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2004년 1월 28일 그리고 총기류 밀매방지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 각각 발효되었다.

을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요청당사국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유사한 공조를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공조의 내용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제7조와 같다. 이 외에도 동 협약에서는 형사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 및 형사절차를 착수하고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데 조력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사전 요청 없이도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국 정부의 요청이 없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19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다수의 국가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합동수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합동수사는 사안별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27조에서는 범죄인인도, 사법공조 절차 외에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 협력에는 범죄 관련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국의 연락망을 수립하고, 범죄협의자의 신원, 소재, 범죄수익 및 재산의 이동, 조직범죄단체가 사용하는 특정한 수단 및 방법 등 관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것 등이 포함된다.

다. 시사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 및 UNTOC는 모두 UN 협약으로 2023년 10월 20일 기준, 192개국이 비준하였다. 두 협약 모두 마약범죄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국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된 협약이므로 많은 당사국 수를 확보하고 있다. 통상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경우, 국가 간 양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기준,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경우 양자조약 34건, 다자조약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1건을 체결하였고,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 양자조약 35건, 다자조약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1건을 체결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모든 UN 회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나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별도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 부재한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 및 UNTOC 등 특정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상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또한, 두 조약 모두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국제공조 절차인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외에도 필요한 경우 국가가 협의하여 합동수사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 간 합동수사 또는 국제공조를 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수의 국가가 관련된 마약범죄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법집행기관간 합동수사작전을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제5절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1. 인터폴 개관

가. 비전과 미션

인터폴(Inter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회원국 경찰 간 국제협력을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조직이다. 한국은 1964년 제33차 총회 때 가입하였다.

인터폴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목적은 헌장 제2조에 따르면 각국의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 경찰 당국 간 최대한의 협조를 보장하고 증진하며, 일반법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확립·발전시키는 것이다. 다만 헌장 제3조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한 개입이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여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인터폴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영역은 헌장 제3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제범죄(Transnational Crime)이다.

인터폴은 1914년 국제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로 유럽 국가들의 경찰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첫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이 기원이다. 1914년 최초로 국제형사경찰의회가 모나코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24개국 경찰관, 변호사 및 치안판사들이 참여하여 범죄인 체포절차, 범인 특정기술, 범죄인인도 절차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를 인터폴이라는 아이디어의 기원으로 본다.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하게 되었다.

이어서 1923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엔나 경찰 수장이었던 요하네스 쇼버(Johannes Schober) 박사의 주도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립되었으며, 당시 발간한 국제공공안전저널에 '수배서'가 최초로 게재되는 등 현대적인 인터폴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인터폴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새로 마련하고 기구의 전신약호로 'INTERP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의 색상별로 분류된 인터폴 수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서(INTERPOL Red Notice)'가 최초로 발부되었다.

1956년에는 현대화된 인터폴 헌장을 채택하였고,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로 그 공식명칭을 변경하였다. 1971년에는 국제연합(UN)에서 인터폴을 '정부 간 기구'로 공식 인정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던 인터폴 사무총국 본부를 현재의 프랑스 리옹으로 이전하였고, 2015년에는 싱가포르에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개소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공조 거점이자 사이버수사 분야의 국제적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터폴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수사권을 가진 국제경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폴의 설립 목적은 경찰을 연결하여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 모

든 경찰과 법집행기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경찰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며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모든 세계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나. 조직

(1) 총회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인터폴의 주요 정책 및 규정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의 치안관련 장관, 청장, 국장 등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된다. 사무총국에서 작성한 차년도 사업계획 검토·승인, 결의안 채택, 재정 정책 결정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각 회원국에 특정 임무나 사항을 권고하기도 한다. 헌장 제8조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헌장에 규정된 임무의 수행
-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일반적인 조치사항의 결정
- 사무총장이 작성한 다음 연도 업무계획의 검토와 승인
- 필요한 다른 규칙 제정
- 헌장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출
- 인터폴이 취급하는 사항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 및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 마련
- 인터폴의 재정에 관한 정책 결정
- 다른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협정의 검토 및 승인

(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는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 안배를 하여 총재와 부총재들은 각기 다른 대륙 출신, 위원들도 소속 국가가 상이하다.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 및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총재를 포함한 집행위원 전원은 비상근직이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연 4회(2회는 사무총국, 나머지 2회는 총회 개최지) 개최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결정사항의 집행 감독과 사무총국의 행정 및 업무 감독을 담당한다. 총회와 마찬가지로 총재가 주재하며 통상 연 3회 개최된다. 집행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전략재정 소위원회, 감독자문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3) 사무총국

사무총국(The General Secretariat)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인터폴의 상설기관이다.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핵심 추진기구이다. 사무총국은 국제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체 회원국 및 다른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각국에서 파견된 경찰관과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사무총장과 그 직원은 임무수

행에 있어 기구 이외의 어떠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인터폴 헌장 제30조).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옹에 있으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국제범죄 진압을 위한 기술을 교류하는 정보센터의 역할도 맡는다.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혁신단지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6개 지역사무소 외에도 태국 방콕에 연락사무소가 있다. 헌장 제26조에 규정된 사무총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
- 일반 범죄의 진압에 있어 국제 센터 역할
- 기술 및 정보센터 역할
- 인터폴의 효율적인 행정 보장
- 국제기구 및 회원국 관계기관과 접촉 유지, 다만 범죄 수배에 관한 문제는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처리
- 유용한 출판물 발간
- 총회, 집행위원회 및 다른 인터폴 기구의 사무국 업무 수행
-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위한 다음 연도 업무 계획 작성

(4) 국가중앙사무국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 NCB)은 모든 인터폴 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관이다. 회원국 법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총국 또는 회원국 간의 국제수사에 상호 협력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회원국과의 범죄 정보교환이나 수사 협조 등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경찰 협력은 국가중앙사무국을 경유함이 원칙이다. 국가중앙사무국은 통상 '1국가 1사무국'만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지리적 이유 등으로 공조수사 등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회원국은 사무총국과 협의를 거쳐 분국을 둘 수 있다. 현재 영국 해외 영도 7곳, 중국 2곳(홍콩, 마카오) 등 총 9곳에 분국이 있으며, 카리브 네덜란드에도 분국 설치가 추진 중이다. 회원국은 자국법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기관에 중앙사무국을 구성하며, 조직, 규모 및 인원은 각 회원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1965년 내무부 예규 제43호로 경찰청 외사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NCB)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외사국장이 국가중앙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국가중앙사무국의 임무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회원국 내 시행 및 필요 조치 강구
- 사무총국 및 다른 국가중앙사무국과의 연락 유지
- 자국 내 모든 법집행기관 및 정부, 민간기관과 국제공조수사관련 협력
- 자국 내 국제범죄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다른 국가중앙사무국과 사무총국에 전파
- 사무총국 및 다른 국가중앙사무국이 요청하는 공조 사항의 처리
- 자국 정보를 대표하여 총회 참석 및 표결

전 세계 194개 인터폴 회원국은 국가별로 경제력, 경찰의 권한과 지위,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치안 여건이 상이하고, 치안 역량의 편차도 큰 것이 사실이다. 원활한 협력과 공조수사를 위해서는 각 국가중앙사무국의 업무능력과 인프라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폴에서는 회원국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역할에 대한 국가중앙사무국 품질기준(NCB Quality Standard)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가. 자료 공유

인터폴은 자체 경찰력을 운영하지 않는다. 각국마다 경찰이 처한 치안 여건과 이에 대응한 법집행 활동은 다르다. 인터폴에서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국 경찰이 치안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료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현장 법집행관들이 도피사범 검거, 테러·해적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에 접근, 조회하여 처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각 회원국이 인정하는 국내법 체계 내에서 활동한다. 회원국 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협력, 외교 경로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인터폴 국제통신망(I-24/7)을 이용하여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다. 전용통신망을 통해 수배서, 도난분실여권, 지문, DNA 등 1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비롯한 수배·통지서 제도와 4개 공용어로 24시간 운영되는 지휘조정센터(CCC)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전용통신망 I-24/7

I-24/7은 회원국에 제공되는 보안화된 인터폴 전용 통신망으로서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I-24/7 설비를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에 설치하여 전용 가상사설망(VPN)으로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회원국에서는 인터폴이 구축한 다양한 포털에 접속하여 각종 수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전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다른 회원국 경찰과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2021년 인터폴이 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19가지이다.

- 수배서(Notices)
- 공조대상자에 대한 인적 정보(Nominal data)
- 아동 착취자 및 피해자(Child abusers and victims)
- 지문(Fingerprints)
- DNA(DNA profiles from offenders, crime scenes, missing persons and unidentified

bodies)
- 실종자가족 DNA정보(I-Familia; Identifying missing persons globally through family DNA matching)
- 안면 인식 정보(Facial recognition)
- 도난·분실 여권(SLTD database (travel and identity documents))
- 도난 공문서(Stolen Administrative Documents (SAD))
- 위·변조문서(Counterfeit documents)
- 문서 진위 여부(Comparison of genuine and fake documents)
- 도난차량(Stolen property; Motor vehicles)
- 도난선박(Stolen property; Vessels)
- 도난문화재(Stolen property; Works of art)
- 총기 식별 참조표(INTERPOL Firearms Reference Table)
- 불법총기기록·추적관리(INTERPOL illicit Arms Records and tracing Management System (iARMS))
- 탄도 비교(INTERPOL Ballistic Information Network (IBIN))
- 조직범죄(Organized crime networks)
- 해적(Maritime piracy)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것은 도난·분실 여권(SLTD database (travel and identity documents))이다. 각국에서 도난·분실 신고된 여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여권이 조회되면 해당국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관련 데이터를 입력한 국가에 통보한다. 2020년 현재 약 9,900만 건의 도난 분실 여권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0년 14억 건의 조회가 실시된 결과, 120,372건의 조회일치(hit)가 있었다.[198] 여권을 발행한 회원국 NCB에서 도난·분실 여권 데이터를 입력하면 다른 회원국 공항과 항만에서 탑승객의 여권을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I-24/7 통신망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폴에서는 도난·분실 여권 데이터와 연결하여 2015년부터 I-Checki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범죄자들이 도난·분실 여권을 사용하여 신원을 위장하고 비행기나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의 공유범위를 각국 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등 민간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터폴 도난·분식 여권 데이터를 항공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여권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출입국 제한 내지 여권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항공사에서는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다. INTERPOL 지휘조정센터(CCC) 운영

CCC(Command and Coordination Center)는 세계 어느 곳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

198) https://www.interpol.int/How-we-work/Databases/SLTD-database-travel-and-identity-documents (방문 2023.08.18.)

로 대응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4가지 공식언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 모두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시간대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리옹)·싱가포르·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설치되어 있다.

CCC는 여러 치안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를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IRT, Incident Response Team)과 중요행사지원팀(IMEST, INTERPOL Major Events Support Team)을 파견하기도 한다.

3. 법적 근거

국제공조수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기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정한 공조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내 모든 법집행기관은 국제범죄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폴 한국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외국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폴 헌장 제2조에 따라 인터폴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 당국 간에 최대한 협조를 보장, 증진시킨다. 인터폴 헌장 제31조에 따르면 인터폴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하며, 회원은 본 기구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경찰관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며, 제8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4. 공조의 범위와 내용

공조의 범위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이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국외 도피사범의 강제송환, 사건 수사 자료교환, 사실확인, 국외출장수사, 국제형사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공조사항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가. 국외도피사범 강제송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 중에 국외로 도피한 내국인이 체류하는 국가에 대상자의 출입국 관련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추방을 요청하면 국내로 강제송환 할 수 있다.

강제송환의 대상범죄로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중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② 마약, 총기, 위폐, 인신매매 등 국제성 범죄, ③ 범죄혐의가 명백한 3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④ 첨단기술 유출 등 국익과 밀접한 범죄, ⑤ 기타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이 있다.

송환 절차는 ① 경찰관서; 체포영장 및 여권 행정제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제공조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 ②경찰청; 도피 예상국의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 확인 및 강제추방 등 공조수사 요청, 중요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 ③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경우 주재국 경찰 및 이민국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 소재 확인 후 강제추방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나. 인터폴 국제수배

인터폴 국제수배(Notice)는 인터폴이 각 회원국에 중요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조요청이나 위험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이다. 각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국외도피사범, 실종자, 우범자 및 장물 등 인적, 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 공동 대응하는 체재이다. 인터폴에서 회원국 간 협력이나 국제 경보(Warning)를 위해 전용 통신망을 통해 회원국에 전파, 공유하는 표준화된 형태의 문서로는 수배서(Notice)와 통지(Diffusion)가 있다. 수배서와 통지는 발송 명의자가 인터폴 사무총국인지 회원국의 중앙사무국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인터폴 통지제도는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거나 국제적인 경보 또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직접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는 node to node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반해 수배서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국에서 그 적절성에 대해 심의한 후 인터폴 명의로 발송하는 공식요청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일괄 전파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지는 수배서와 같이 인터폴 사무총국의 전문적인 심의 없이 특정 회원국이 단수 또는 복수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적 정보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수배서보다 신뢰도는 비교적 낮으나 신속성이 장점이다. 이에 대하여 수배서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며 사무총국 내 전문 부서인 수배 통지 실무단(NDTF; Notices and Diffusions Task Force)의 심의를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으나 신청 후 발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 수배서 발부 및 운영

인터폴은 수배자, 실종자 등에 대해 적색수배·청색수배 등 목적에 맞는 수배서를 발부하여 국가 간 범죄자 검거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수배서는 8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수배서는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수배 목적별로 구분하여 수배서 우측 상단 표식의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조직폭력 사범,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국제지명수배서(International Wanted Notice))에 내려진다.

② 청색수배서(Blue Notice); 피수배자의 신원 및 전과확인, 일반 형법 위반자로서 범죄인인도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의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되는 수배서(국제정보조회수배서(International Inquire

Notice))이다.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중요 국제범죄인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이다. 우범자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④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심신상실자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이다. 실종자 소재확인에 해당한다.

⑤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이다.

⑥ 오렌지색 수배서(Orange Notice)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협과 위험을 나타내는 수배서이다. 위험물질경고에 해당한다.

⑦ 인터폴-유엔안전보장이사회 특별공지(INTERPOL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pecial Notice)는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터폴 회원국에 알리는 수배서이다. 특별공지는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알카에다와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⑧ 보라색 수배서(Purple Notice)는 세계 각국에서 범죄인들이 사용한 특이 범죄수법, 절차, 대상 또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은신처 등을 각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과 수사의 기초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범죄수법수배서(Modus Operandi))이다. 사실상 수배서라기보다는 범죄정보자료에 가깝다.

> MBC 뉴스(2023.9.24.) 신종 산업기술 유출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이번이 처음“
> ”경찰청이 신종 산업기술 유출 수법과 관련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195개 회원국에 신종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발부합니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 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은닉해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통상 기업이 해외에 자동화 시스템 등 설비를 매각할 때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비 내 로그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는데, 피의자들은 운영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술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 2백여 건 중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건 마약, 전화금융사기, 해상 납치 등 18건입니다. 경찰은 인터폴에서 기술 유출 범죄 수법을 보라색 수배서로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적색수배서

(1) 의의

가장 대표적인 수배서는 적색수배서이다.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요청에 의해 도주 중인 범죄자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위한 체포, 구속, 이동의 제한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범죄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부한다. 다만 헌장 제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 종교, 군사, 인종적 사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색수배서는 제한된다.

(2) 적색수배서 발부 기준

수배서 발부의 세부기준은 우선 형식적 요건으로 법원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형집행장을 제출해야 하고, 내용적인 요건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중범죄여야 한다. ① 여러 나라에서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범죄, ② 가정관련 범죄로 처벌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범죄, ③ 행정법규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된 범죄.

이와 더불어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6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6월 이상이 남은 자도 요건으로 한다. 한국 경찰청이 정하고 있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23.9.25. 시행)은 다음과 같다.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 중, ①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살인·상해·강도 등 강력범죄 피의자, ③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 ④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통행위자(단, 마약류 단순 구매·소지·투약 제외), ⑤ 전화금융사기 또는 범죄 금액 5억원 이상 경제범죄 피의자, ⑥ 범죄금액 100억 원 이상 사이버도박 운영자, ⑦ 산업기술유출 등 지식재산범죄 피의자, ⑧ 그 밖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적색수배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림 6] 국제수배서 종류 (출처: 인터폴)

(3) 적색수배 발부절차

적색수배 발부절차를 보면,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책임 있는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자기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으로 요청하여 그 국가중앙사무국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무총국에 신청한다.

사무총국에서는 접수된 신청내용과 요건을 심사한 뒤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수배서를 발부하고, 이를 전체 회원국에 통지한다. 하지만 인터폴은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유하거나 강제력 있는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적색수배서 역시 국제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상자가 다른 국가에서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사안이 아닌 성격의 범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임을 회원국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재지를 파악해 알려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에 가깝다. 대다수 회원국에서는 형사법상 강제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출입국 심사에 참고하여 강제퇴거 등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경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검색되며, 회원국 경찰 간 상호 긴밀한 공조로 정식 사법절차 전에 추방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자국법상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대상자를 체포하기도 하며,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적색수배서를 통해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할 경우 피의자 소재국과 수배국이 신병처리에 대해 협의를 한다. 협의 단계에서는 피의자 소재국에서 강제출국과 같은 법령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식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제출국의 경우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판이나 사법부의 심사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범죄인인도의 경우 국가별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상이하고 별도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회원국가마다 적색수배서에 대한 효력 인정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에 활용하는 등 자국법 적용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5. 국제공조 절차와 증거

가. 국제공조 절차

수사관서에서 국제공조 요청서류를 작성하여(시도경찰청을 경유)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으로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피요청국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다. 국제공조 요청은 반드시 경찰서·시도경찰청 등 수사관서를 경유함이 원칙이며,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개인 또는 민간기업 등 수사기관이 아닌 주체로부터의 직접 공조요청 접수는 불가능하다.

[그림 7] 국제공조 요청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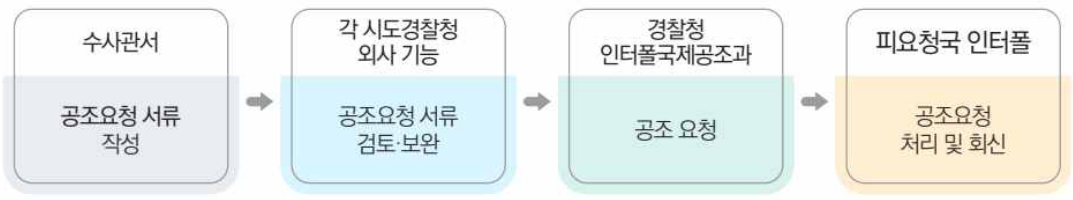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의 경우, 해당국가에 대상자 출입국기록 및 소재 확인, 현지법상 가능한 경우 검거하여 한국으로 강제추방 등의 내용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에 부합하는 국외도피사범이라면 적색수배를 같이 신청하면 검거에 효과적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한 인터폴 사무총국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 및 중범죄자이며, 우리나라 경찰청은 중범죄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인터폴 공조를 통해 취득한 자료의 증거능력

인터폴을 통해 입수된 외국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례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타외국어 또는 국어로 번역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인터폴 채널을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형소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판결요지】 공범중 한 사람에 대한 홍콩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이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INTERPOL)을 통하여 입수된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공범에 의한 강도살인행위였다는 것으로서 수회에 걸친 진술내용이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고 자기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홍콩검찰에 의하여 불기소석방처분되는 상황이었는데 구태여 범행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필요가 없는 점등을 모아보면 위 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있다(서울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

(3)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및 이와 동일한 증거인 원심에서 제출된 공소외 1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첫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2의 복사본임)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공소외 2 경장이 치안본부 외사계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여기에 한글번역문을 첨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심에서의 검증조서중에 들어있는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도 치안본부 형사과 국제형사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1의 복사본을 복사한 제2의 복사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둘째, 당심에서의 서류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제2복사본이 원심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경찰(치안본부)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이를 간략히 해서 INTERPOL이라 부르고 이하 "인터폴"이라고만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홍콩경찰도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다.
인터폴은 국가간의 다자조약이나 쌍무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의 신임장을 소지

하는 경찰기구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한 헌장조직등의 방식에 따라 사실상 서로 국제형사사건을 공조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치안본부는 별도의 인터폴 통신망(무선통신과 텔렉스)을 설치하고 있으며, 본건 사고에 있어서도 위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홍콩인터폴과 공조사무를 처리하였다.
즉 1984. 7. 18. 20:59 한국인터폴은 홍콩인터폴에게 텔렉스로 전문을 보내어 이 사건의 공범으로 대만행 항공기로 출국한 공소외 1을 체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콩인터폴로부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공소외 1을 체포하였다는 회답을 받았다.
1984. 7. 19. 한국인터폴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3명의 경찰관을 홍콩으로 파견하려는데, 홍콩인터폴에서 승낙하겠는가 여부를 통지하고 이를 환영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치안본부의 인터폴 책임자등 3명의 경찰관이 홍콩에 출장가서 그곳의 인터폴 책임자와 논의 한 끝에 당초 중국어로 작성된 홍콩경찰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의 제1 복사본 4통과 공소외 1의 사진 3매를 교부받아 와서 다시 이를 복사한 제2의 복사본을 원심법정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홍콩인터폴은 1984. 7. 26. 무선통신으로 홍콩의 검찰총장이 공소외 1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그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의 전문을 한국인터폴에 통지하여 왔다.
위의 첫째와 둘째 이유를 종합하면,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는 홍콩경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자 및 진술자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세째,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네차례에 걸친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이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치되고 있다.
네째, 자기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하는등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관련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적다.
다섯째, 자기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홍콩검찰에 의해 불기소석방처분되는 상황이었는데 구태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떠넘길 필요가 없다.
위의 세째, 네째, 다섯째 이유를 종합하면, 위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

6. 장점과 한계

인터폴 국제공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초로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통상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수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공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사항이나 범죄경력과 같은 수사 관련자에 대한 정보, 출입국기록 확인, 강제추방 등 도피사범에 대한 소재수사 및 송환, 문서진위여부 등 사실확인 등은 가능한 국제공조이다. 그러나 계좌명의자나 거래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 또는 검증, 범죄인 인도청구는 국제공조가 불가능하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는 국가별로 공조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범죄유형별로 매우 다양하다. 언어·문화·형사사법체계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 정도와 공조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공조수사의 내용으로는 '인터폴 채널을 통한 국가 간 범죄 관련 정보 자료 요청과 협력', '인터폴 수배 요청', '해외 도피사범 강제송환 협력업무', '여권 무효화' 등이 있다.

신속성 측면에서는 인터폴 채널 공조수사가 인터폴 전용 통신망인 I-24/7을 기반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임의적·자발적 협력관계로 매우 신속하게 전 세계 수사기관들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외교채널이나 기본적으로 외교부 경로를 거치지 않고 해당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과 신속하게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통적인 외교채널 중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인도 조약 운영방식으로 국제수사공조를 할 경우 통상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된다.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은 각국의 경찰 당국이 수행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는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조 주체의 차이가 있다.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은 자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절차로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정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한편, 범죄인인도 청구는 외국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국제법상 절차로 피요청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다소 있다. 인터폴 강제송환은 공식적 외교경로가 아니라 각국의 경찰과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력이나 경찰당국 간의 직접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경찰 간의 인적 네트워크적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 협조사항은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 한편, 범죄인인도 청구는 당사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조약 미체결 국가와는 같거나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하여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인터폴은 강제수사권한이 없다. 인터폴 해당 기구 자체가 범죄자 체포, 압수, 수색 등의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범죄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인터폴은 인터폴 자체 헌장과 인터폴 일반규정, 각 개별 회원국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국제 간 경찰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간 기구일 뿐, 인터폴 사무총국은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이 없다.

제3장 국제공조수사 수사기법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외 기술유출 수사와 국제공조 조직 및 기능

1. 국내 기술유출 수사와 국제공조 조직 및 기능

가. 경찰청

(1) 기술유출 수사 조직 및 기능

경찰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국가수사본부 소속 안보수사국 아래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를 두었다. <표 24> 안보수사지휘과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시·도청별로 전담 수사부서를 두고 있다. 시·도청 안보수사대에 소속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은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199] 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위반사범을 수사하고, 산업기술 유출예방을 위한 홍보, 유관기관과 기업과 협력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2004년부터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위해 사이버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2010년 7월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 경기)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설치하고, 전문 수사경력 보유자와 디지털분석관을 배치하였다.[200] 경찰청은 다시 2017년 2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였고,[201]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수사·지도 등을 하였다.[202]

수사조직의 확충에 따라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317명을 검거하였다.[203] 2023년 2월에서 10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경찰청은 1) 본청의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경찰서에 안보과가 설치된 57개서에 안보수사팀을, 3) 전국 경찰서에 안보과가 설치되지 않은 202개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04]

199) 최익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9면.
200) 선종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의 재검토", 가천법학 7(3), 2014, 204면.
201) 최익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4면.
202)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4, 293면.
203)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2022.11.28.
204)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2023.03.14.

<표 24> 경찰청 안보수사국 조직도 (2022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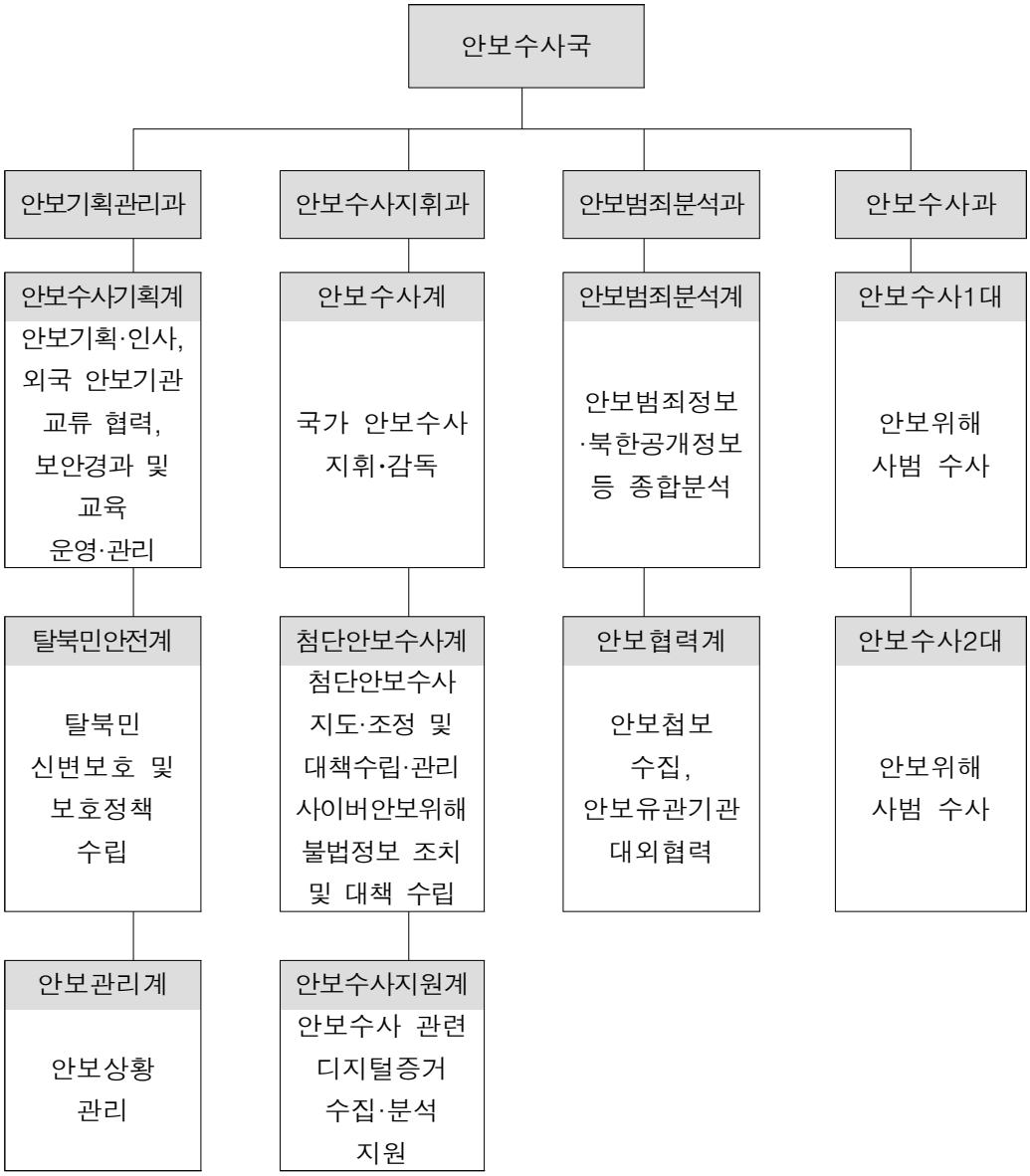

경찰청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산업보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외국경찰과 공조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5] 자체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으로부터 시스템을 제출받아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206] 또한,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산업기술유출과 방산비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207] 신고는 서식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전담수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림 8, 9]

205) 정웅, 산업보안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32면
206) 김승영, 정제용. 범국가적 산업기술유출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기술유출사건의 특성 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 가천법학 12(4), 2019. 12면.
207) 경찰청 홈페이지,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 안내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industry/industry01.jsp (최종방문일 2023.8.6.)

[그림 8]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양식 [그림 9] 방산 비리 제보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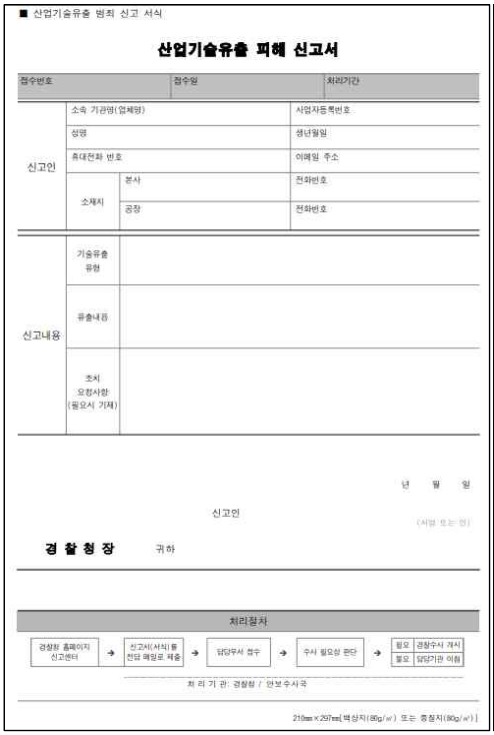

■ 산업기술유출 범죄 신고 서식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소속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술유출 유형		
	유출내용		
	조치 요청사항 (필요시 기재)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처리절차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 신고서(서식)를 전담 메일로 제출 → 담당부서 접수 → 수사 필요성 판단 → 필요: 경찰수사 개시 / 불요: 담당기관 이첩

처 리 기 관: 경찰청 / 안보수사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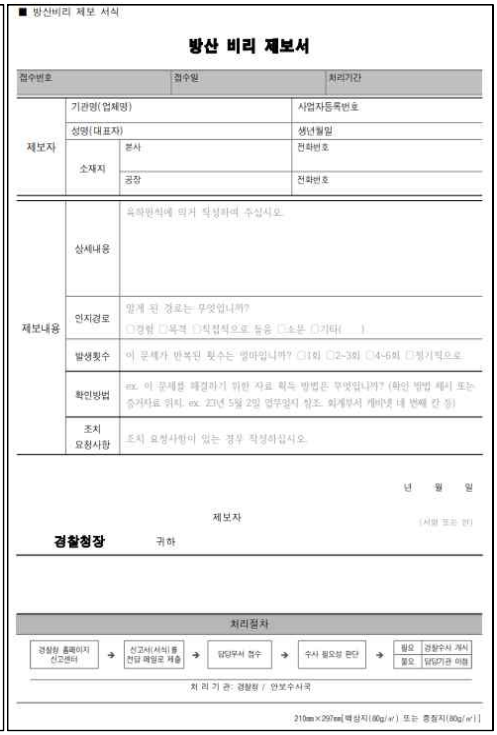

■ 방산비리 제보 서식

방산 비리 제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보자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제보내용	상세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십시오.	
	인지경로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경찰 □목격 □직접적으로 들음 □소문 □기타( )	
	발생횟수	이 문제가 반복된 횟수는 몇 번입니까? □1회 □2~3회 □4~6회 □정기적으로	
	확인방법	ex.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획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인 방법 제시 또는 증거자료 첨부. ex. 2016년 5월 2일 열무일지 참조, 회계부서 계비넷 내 번째 칸 참)	
	조치 요청사항	조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십시오.	

년 월 일

제보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처리절차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 신고서(서식)를 전담 메일로 제출 → 담당부서 접수 → 수사 필요성 판단 → 필요: 경찰수사 개시 / 불요: 담당기관 이첩

처 리 기 관: 경찰청 / 안보수사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국제공조수사 조직 및 기능

(가) 외사국 인터폴 국제공조과

경찰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직무 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국제형사공조법, 범죄인인도법 등을 근거로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인터폴의 기능에 대해서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경찰청은 외사국 소속 인터폴 국제공조과에서 국제공조수사를 담당한다. <표 25>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인터폴 전용 보안통신망(I-24/7)을 운영하고, 회원국과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처리한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은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회원국은 인터폴과 회원국과 국제공조를 위하여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NCB)을 두고 있다. 외사국은 한국의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터폴과의 국제공조수사 업무를 총괄한다. 외사국장이 국가중앙사무국장(Head of NCB)을 맡고, 인터폴 국제공조과에서 NCB의 업무를 총괄한다. 즉, 외사국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인 동시에 우리나라 법집행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창구로서 국제공조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표 25> 경찰청 외사국 조직도 (2022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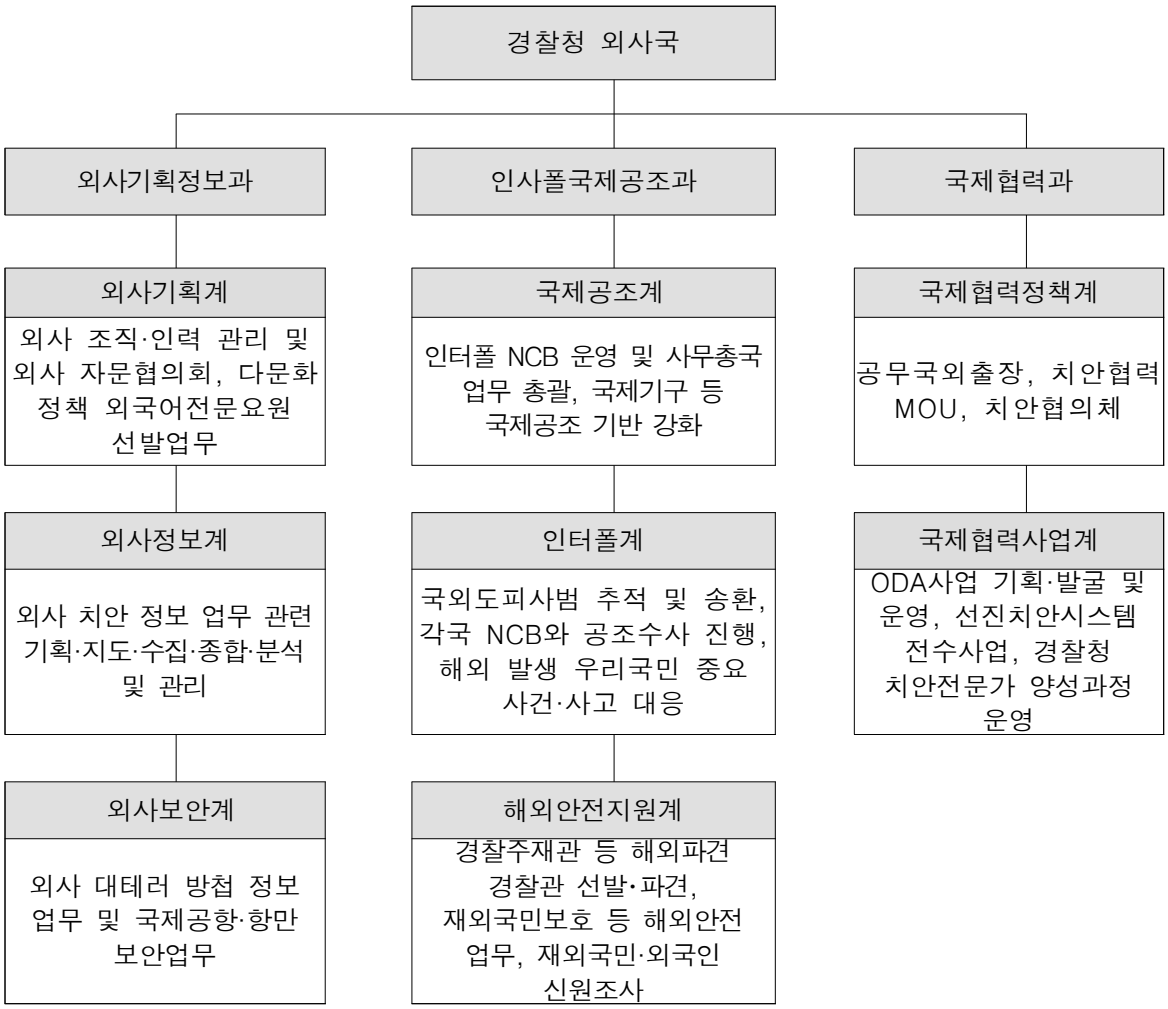

다만, 경찰청은 2023년 9월 18일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2024년부터는 외사국(국장 치안감)이 담당하는 업무를 국제협력관(경무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의 3개과에서 인터폴 국제공조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만 남기는 것으로 발표하였다.[208]<표 26>

208)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조직재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2023.09.18.

<표 26> 개편 후 경찰청 국제협력관 조직도

경찰청 국제협력관	
인터폴 국제공조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 계 단위 개편안은 미정 • 기존 국제공조계 인터폴계 해외안전지원계 업무분장과 동일하게 유지할 전망	• 계 단위 개편안은 미정 • 기존 국제협력정책계와 국제협력사업계 업무분장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전망

수사부서는 특정국에 사실 조회, 해외도피사범 추적·검거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인터폴 국제공조과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해당과는 인터폴 전용통신망을 이용해서 타 국가 NCB로 전문을 발송한다. 인터폴 전용통신망은 인터폴 적색수배서(Red Notice)를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송환할 때에도 활용한다. 인터폴 적색수배서는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보서(Notice)의 성격을 가지고 체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송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신 해당 도피국의 출입국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체류자격 이외에 현지 범행, 비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비자만료 시 적색수배, 여권무효화를 이유로 한 연장거절 등 체류자격 박탈을 근거로 하여 국내로 송환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5억 원 이상) 경제사범,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을 대상으로 한다.[209] 경찰청은 2023년 9월 25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확대하였다.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 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 중, 범죄단체 등 조직 가입 활동 피의자. 살인 상해 강도 등 강력범죄 피의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통행위자 (단순 구매 소지 투약 제외), 전화금융사기 또는 범죄금액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피의자, 범죄금액 100억 이상 사이버도박 운영자,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범죄 피의자, 그밖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적색수배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였다.**<표 27>**[210] 또한 경찰청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지식재산 범죄를 범한자”도 적색수배서 신청 기준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폴 국제공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초로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통상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수사가 가능한 사항, 즉 수사 관련자에 대한 정보(인적사항·범죄경력), 사실확인(문서진위 여부) 및 도피사범에 대한 소재수사 및 송환(출입국기록 확인·강제추방 등)과 같은 요청을 주고받고 있다. 다만 통상 국가 및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공조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기까지 적게는 1주일,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 또는 답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답변이 오는 경우라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요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폴을 임의적인 협력이므로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경색되는

209) 경찰청,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17.4.12. 개정)
210) 채널A, “[단독]경찰 “‘기술유출’해도 강력범처럼 적색수배”, 2023.10.03., https://v.daum.net/v/20231003152749778, (최종방문일 2023.11.6.)

시기에는 국제공조수사 또한 비교적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표 27>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

개정 전('17.4.12.)	개정 후('23.9.25.)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형미집행자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2년 이상 지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자 중) 1.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 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사범 나.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 다액(5억원 이상) 경제사범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형미집행자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2년 이상 지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자 중) 1.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 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활동하는자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나. 살인, 상해,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범한 자 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자 라. 적법한 자격 없이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입 또는 유통화는 자 (단,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만 한 자는 제외함) 마. 전화금융사기 또는 범죄 금액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를 범한 자 바.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도박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자 **사.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지식재산 범죄를 범한자** 2. 그 밖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 국제협력과는 수사공조가 아닌 일반협력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위급 교류나 해외경찰관 초청, 교육 등 일반협력이 국제공조수사 협력관계 증진으로 이어져 사건해결, 강제송환 등 성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나)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 기능으로 인터폴 국제공조과 외에도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소속으로 사이버국제협력팀를 두고 있다. 사이버수사는 특별히 국제공조수사 건수가 많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전문적 대응을 위해 별도로 신설하여 국제기구, 각국 경찰의 사이버수사조직, 글로벌 ISP,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랜섬웨어, 온라인도박 등의 수사에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수사관과 디지털분석관을 직접 해외에 파견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국제공조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SP를 대상으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의 수요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하였다. 사이버국제협력팀은 인력증원을 계기로 글로벌 ISP에 대한 국제협력 지원에 대해서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非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원까지 전담하고 있다. 또한, 인터폴 국제공조뿐 아니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로폴(Europol) 유럽사이버범죄센터(Europe Cyber Crime Center, EC3) 등 다양한 법집행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라 사이버수사국이 사이버수사심의관 체계로 축소되었지만, 사이버국제협력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외사국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제공조에 대한 양 기능 간의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2024년 초에 사무분장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211] 또한, 경찰청 각 수사조직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 마약, 보안, 테러,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등에 대해 개별적인 국제공조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즉, 수사국(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업무를, 형사국(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서는 주요국 마약수사조직과 직접적인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대검찰청

(1) 기술유출 수사 조직 및 업무

대검찰청은 1994년 2월 산업기술을 빼내 외국 경쟁기업에 파는 외국인 산업스파이와 외국 기업에 기업비밀을 넘기는 내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를 기업비밀 절취 등 국제간 형사사건 총괄부서로 운영하였다.[212]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22년 9월부터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변경하여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내에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해당 범죄 관련 중점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방검찰청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방검찰청의 특허범죄조사부가

211) 일각에서는 외사국에서 수행하였던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의 일부 기능이 사이버국제협력팀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국제협력팀은 국제공조수사의 중심이 되고,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강력·경제 등 비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업무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2) 신현구,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9(1), 2019, 45면.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1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개편되었다. 2019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했고, 이듬해 4월에는 특허청에서 심사관·심판관 업무를 경험한 서기관 2명을 기술수사자문관으로 파견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특허범죄수사부를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기능은 크게 5가지로 기술유출범죄 동향 파악, 기술유출범죄 수사기법의 개발, 신종 기술유출범죄 법령과 제도 개선, 국가 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활성화, 유관기관·기업·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외 대검찰청은 특허청,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13] 대기업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214]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215]

(2) 국제공조수사 조직 및 업무

대검찰청의 국제공조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훈령 제274호)을 근거로 한다.[216] 검찰의 국제수사공조와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은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 KPA) 등 국제 법집행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26개국, 30개 법집행기관과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여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들과 직접공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크게 국제공조수사 업무, 국제협력 업무로 나뉜다. 국제공조수사 업무는 해외도피범죄자 송환 지원,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을 의미한다.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인인도(Extradition), 강제추방(Deportation) 등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해외에 유출된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는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 그 과정을 추적하여 해외에 있는 범죄자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활동이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은 수사과정에서 혐의유무 판단에 필요하나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업무는 공정거래, 지식재산 등 중대범죄에 있어 해외 법집행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국제협력업무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 검찰 국제행사 주관 등이 존재한다.

213) 대검찰청 보도자료, 국제안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수사 대응체계 강화, 2022.10.27.
214) 대검찰청 보도자료, 기술유출 수사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7.
215) 대검찰청 보도자료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2023.11.03.
216)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spo.go.kr/site/spo/02/10215010000002018100812.jsp (최종방문일 2023.9.6.)

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국제형사과에서 국제공조수사를 담당한다. <표 28> 현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직원은 총 23명으로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80개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을[217] 77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218]

<표 28> 법무부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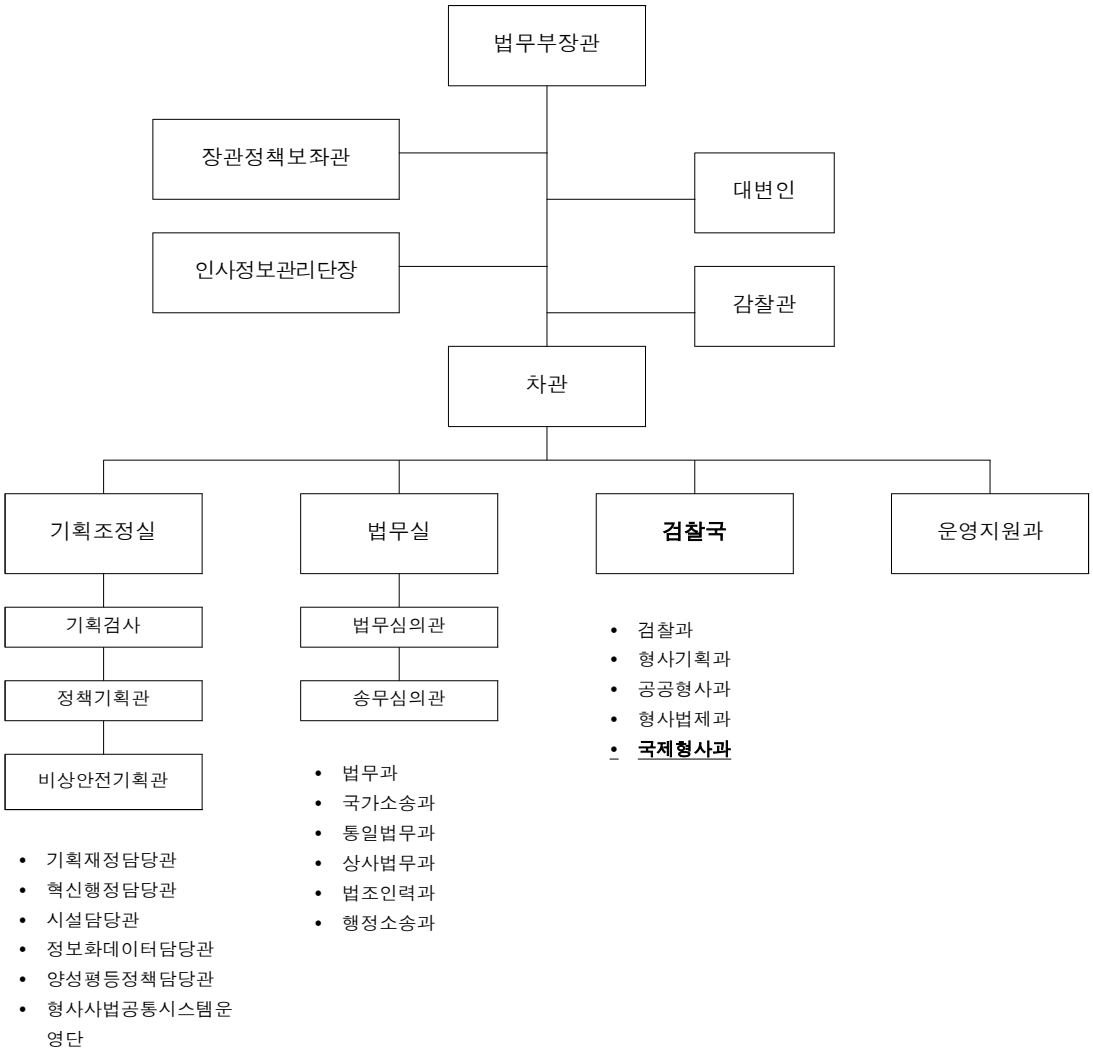

217) 대검찰청, 2022 범죄백서, 224면
218) 대검찰청, 2022 범죄백서, 225면

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2003년 10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219]하여 첨단기술 보호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220] 국가정보원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산업보안과 방위산업보호는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그중 산업보안은 주로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및 연구데이터 보호 활동,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외국의 경제질서 교란 차단활동 등에 대한 대응활동을 말한다.[2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 약 75개에 달하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제2조).

또한, 산업스파이로부터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①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 활동,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및 연구데이터 보호 활동, ③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④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⑤ 외국의 경제질서 교란 차단활동 ⑥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등 6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22] 국가정보원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연구보안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를 직무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방첩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다.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를 직무에 추가하였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규정을 명시(제5조)하고, “국정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라목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다만, 여기에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상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223]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첩보를 수집하여 특허청, 대검찰청, 경찰청에 제공한다. 특허청과 협력하여 산업보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자율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관련 교육도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을 경우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저작권센터 등과 공조하여 침해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안보 침해행위와 인수합병을 가장하여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한다.[224]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

219) http://service4.nis.go.kr/이전에는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220) 선종수.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과학기술법연구 20(2), 2014, 84면.
221)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가핵심기술”, https://www.nis.go.kr:4016/AF/1_5_2.do (최종방문일 2023.8.6.)
222)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산업보안”, https://www.nis.go.kr:4016/AF/1_5.do (최종방문일 2023.8.6.)
223) 김기범등,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브로커 대응강화방안연구, 경찰청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2, 32-33면.
224) 김기범등,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브로커 대응강화방안연구, 경찰청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등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 시, 특허청·KOTRA(IP-desk : 해외지식 재산센터)·외교부·문화부(해외저작권센터) 등과 공조,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정보분석원(KoFIU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2001년 11월 설립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업무영역은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까지 확대되었다. 조직은 2개 실과 5개 과로 되어 있다. 2개 실은 기획행정실과 심사분석실로 나뉘고, 5개과는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로 나뉘어 있다.[그림 10] 근무 인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업무는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0] 금융정보분석원 조직과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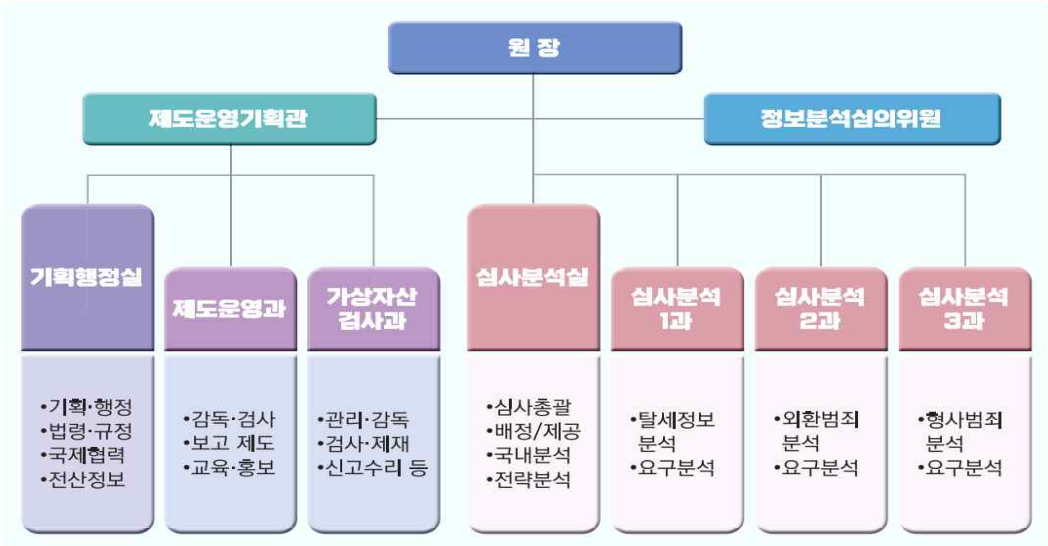

(출처: 자금세탁방지 2022 연차보고서)

2022, 32-33면.

금융정보분석원은 2002년 11월 말 FIU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9년 5월부터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225] 현재 이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를 전자파일로 접수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를 요청·제공하여 국제기구 간 국제공조를 진행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부 제도의 마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협력,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과 협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기구(APG) 등과의 창구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하였고, 2014년 부의장국, 2015년 의장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26] 아시아·태평양기구인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들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227]

225) 금융정보분석원, 2021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22, 23-24면.
226) 금융정보분석원, 2021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22, 25-27면.
2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준의 이행과 FIU의 발전을 선도, 2014.05.26.

2. 해외 기술유출 수사와 국제공조 조직 및 기능

가. 미국

(1) 기술유출 수사 조직 및 기능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법무부, 에너지부 등 방첩기관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228] 대공황 이후 연방수사국(FBI)은 경제방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FBI의 산업보안 활동에 있어서 국가 정보기관이자 정보공동체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역할이 미국 대외 정보와 해외 방첩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17개로 구성된 정보공동체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정보 수집 역할을 하고, 연방수사국(수사)과 검찰국(기소)이 신속한 처벌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표 29> 실질적으로, 연방수사국 요원과 검사들은 긴밀한 협업 관계에 있어 피의자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의 개시부터 기소까지 진행하고 있다.[229]

<표 29> 미국 산업기술유출 사건처리 체계도 (김승영,정제용. 2019)

<table>
<tr><th>구분</th><th>정보수집</th><td rowspan="4"></td><th>수사</th><td rowspan="2">→</td><th>기소</th></tr>
<tr><td>담당기관</td><td>17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정보공동체</td><td>연방수사국</td><td>검찰국</td></tr>
<tr><td>통합·조정기관</td><td>국가보장실</td><td>→</td><td colspan="2">법무부장관</td></tr>
<tr><td>협력·지원부서</td><td>국가정보장실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td><td colspan="3">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과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집행협력관실
국가지적재산권협력센터</td></tr>
</table>

정부 차원의 산업보안 활동의 핵심은 영업비밀(Trade Secrets)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수사국은 법집행 강화전략을 구사하고 각 법무부산하 국가안보과, 국가지적재산권협력센터 등 정부기관들은 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절도에 대해 종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30]

(2) 국제공조수사 조직 및 기능

미국 법무부 형사국 국제과(The Criminal Division'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이하 OIA)는 범죄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증거와 기타 지원을 외국에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 지방, 연방 검사 및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고, 범죄자인도 및 증거 생성과 관련하여 외국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국무부와 함께 양자 간 범죄인인도 및 법률지원 조약, 다자간 법집행 협약의 협상을 담당하여 효과적인 조약 이

228) 진재근, 산업보안과 산업기술유출 대응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및 독일을 중심으로,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5(2), 2021. 56면.
229) 김승영, 정제용, 범국가적 산업기술유출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기술유출사건의 특성 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 가천법학 12(4), 2019, 15면.
230) 홍성삼, 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경찰학논총 10(3), 2015, 81면.

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와 협력한다. 법무부장관과 기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국제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미국의 외교 관계 및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법집행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OIA는 범죄자 인도와 처벌, 수형자 이송, 국제 증거 수집, 법률 자문 제공 등 5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범죄자 인도와 처벌은 범죄인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협력하여 미국 또는 해외에서 기소된 범죄자를 인도한다. 수형자 이송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감 기간을 채우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신청을 판결하는 것으로 양자간 조약 및 다자간 협약에 따른다. 수감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만 이송될 수 있다. 미국과 양자 간 조약을 맺은 나라는 볼리비아,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파나마, 터키,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에 해당한다. 다자간 협약을 맺은 나라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며 약 83개국에 달한다.[231] OIA는 해당 지역 검찰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어 체포영장을 받아 대상자를 구인한 뒤 법원의 범죄인인도 심리를 거친 후 인도 결정을 통보받는 형식을 취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와 유사하다.[232] 국제 증거수집은 국제협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해외에서 자산 몰수 명령 집행을 모색하며 자산을 미국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조언으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청(USMS), 이민청(INS) 등에 국제 형사 문제에 대한 법적,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 독일

(1) 연방범죄수사청의 국제공조수사 조직과 기능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은 ① 사이버범죄국(Abteilung CC), ② 디지털 혁신국(Digitale Service und Innovation, DI), ③ 국제공조·교육연구국(IZ), ④ 테러,극단주의 대응국(TE), ⑤ 범죄기술연구소(Kriminal-technisches Institut, KTI), ⑥ 작전투입지원 및 수사지원국(OE), ⑦ 국가보안국(ST), ⑧ 중대범죄수사국(SO), ⑨ 국가안전국(SG), ⑩ 중앙정보 및 공조국(ZI), ⑪ 중앙행정국(ZV) 등 11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표 30>[233] 국제협력은 국제공조·교육연구국(IZ)에서 담당하고, 주로 국제(형사)경찰 협력 문제에 대한 자문, 내부 보안 문제에 관한 유럽 및 국제 프로그램의 콘텐츠 디자인, 국내 및 유럽 법률 자문, 국내 및 국제 훈련과 추가 교육 프로그램 및 조치의 계획, 구현, 추가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타 전문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형사경찰 연구 필요성 결정 및 BKA의 우선 범죄 분야 및 범죄 전개 전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범죄 및 범죄학 연구 결과를 교육 및 훈련에 통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공조·교육연구국(IZ)은 1과(IZ 1 Group), 2과(IZ 2 Group), 3과(IZ 3 Group)

231) DOJ, List Of Participating Countries/Governments, https://www.justice.gov/criminal-oia/list-participating-countriesgovernments (최종방문일 2023.8.9.)
232) 김태민, 권헌영,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6), 2021, 199면.
233) Bundeskriminalamt, fachabteilungen, https://www.bka.de/DE/DasBKA/OrganisationAufbau/Fachabteilungen/fachabteilungen_node.html (최종방문일 2023.11.9.)

로 나누어져 있다. 1과(IZ 1 Group)는 국제공조와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그 하위 부서로는 4개의 계인 IZ 11, IZ 12, IZ 13, IZ 14가 있다. 각 계의 담당 업무에는 IZ 11계의 비즈니스와의 협력, 전략적 국가 전문 지식 분야에서의 협업, IZ 12계의 EU 및 국제기관, 위원회와의 협업, IZ 13계의 연락관 업무, IZ 14계의 경찰 제도개선 지원이 있다.[234]

<표 30>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조직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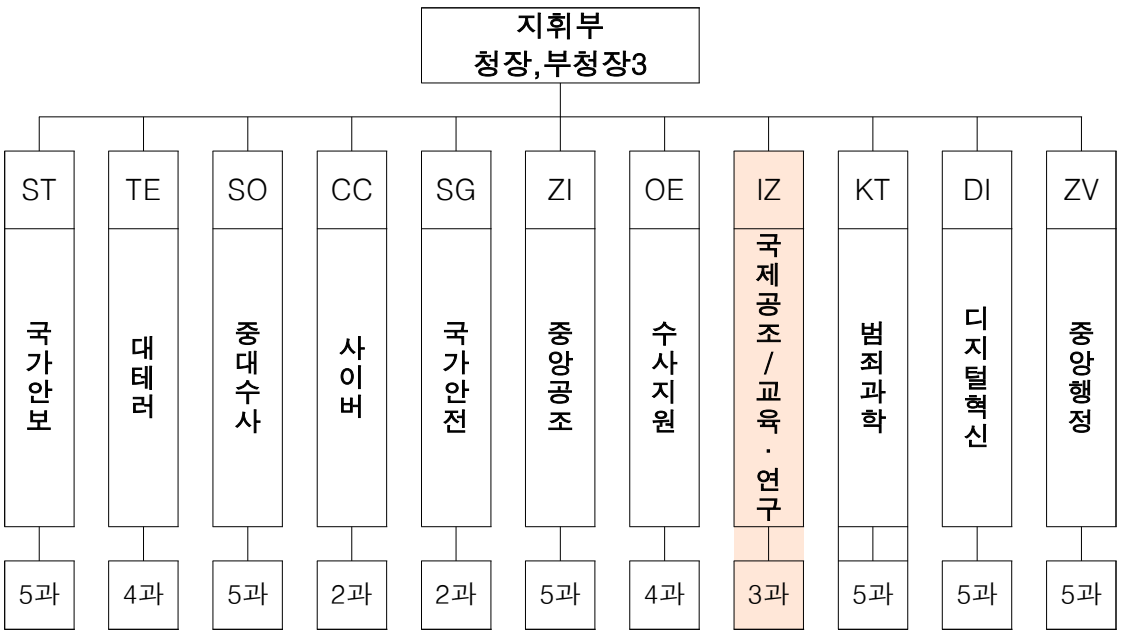

한편,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유로폴을 통하여 둘 이상의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 테러 및 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235] 유로폴(Europol)은 유럽연합(EU)의 범죄대응 기구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유로폴은 회원국 내 국제협력 담당 업무 부서의 업무와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경찰과 법집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234) Bundeskriminalamt, Organigramm des Bundeskriminalamts https://www.bka.de/DE/DasBKA/OrganisationAufbau/Organigramm/organigramm_node.html#doc178688bodyText1 (최종방문일 2023.11.9.)

235) Bundeskriminalamt, Zusammen-arbeit über Grenzen hinweg https://www.bmi.bund.de/DE/themen/sicherheit/nationale-und-internationale-zusammenarbeit/grenzueberschreitende-polizeiliche-zusammenarbeit/grenzueberschreitende-polizeiliche-zusammenarbeit-node.html (최종방문일 2023.11.9.)

(2) 연방경찰청 국제협력 조직과 기능

독일연방경찰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본청 예하에 9개 지부, 1개 기동단, 3개 교육기관, 항공대, 특공대가 있고, 세계 25개국 32개 도시에서 49명의 주재관이 근무하고 있다. 본청에는 청장 직속 부서로 감사부·의전실·공보부를 두고, 차장 2명은 각자 4개 국(局)을 담당하며, 본청 독립부서로 참모회의, 양성평등기획관, 장애인권익보호관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 업무는 연방경찰청 제1차장 소속 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에 국경경비를 포함한 경찰업무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초로 부가 신설되었다.<표 31>[236]

<표 31> 독일연방경찰청 조직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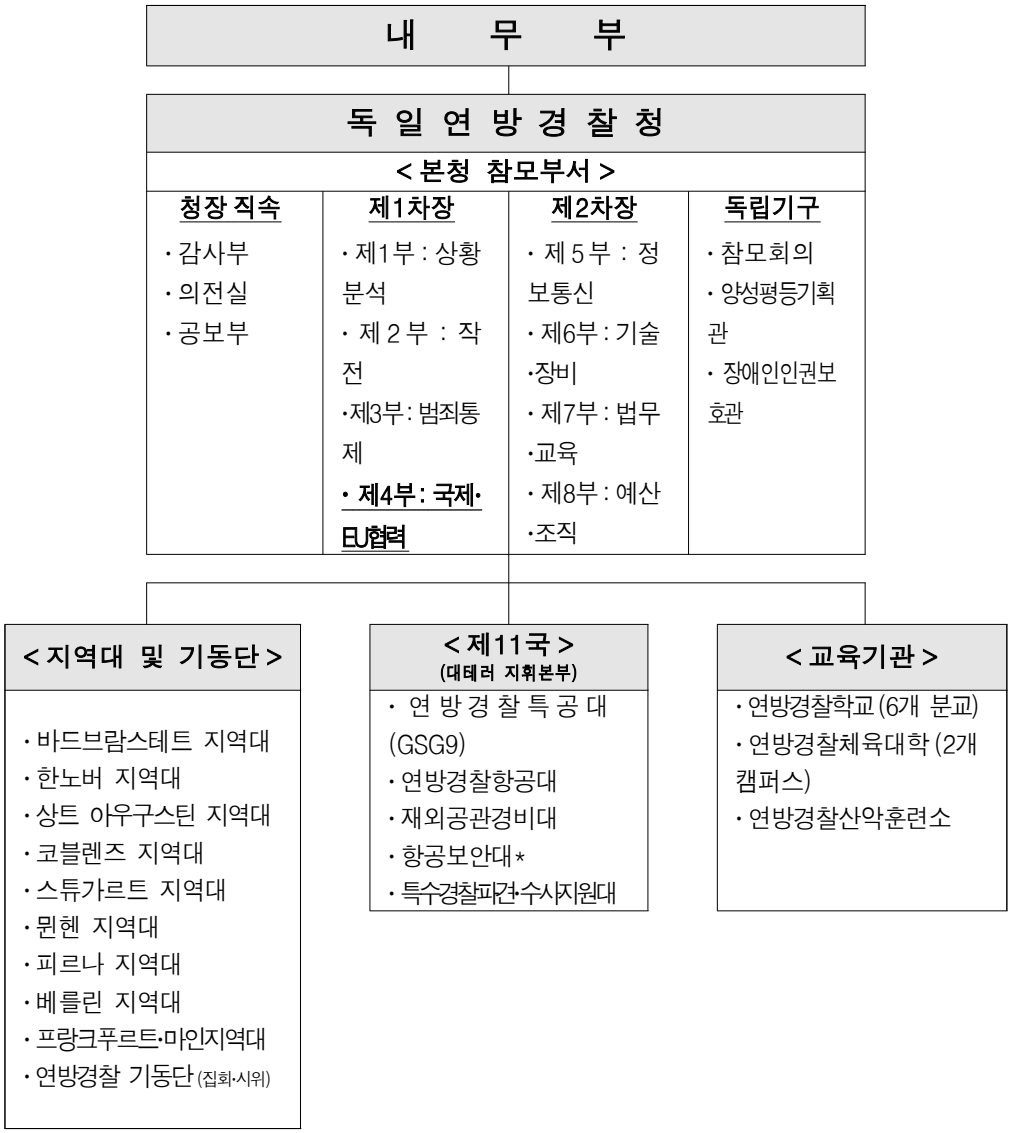

236) Bundeskriminalamt, unsere-aufgaben https://www.bundespolizei.de/Web/DE/03Unsere-Aufgaben/unsere-aufgaben_node.html (최종방문일 2023.11.9.)

독일 안보기관의 외국업무 파트너들과의 협업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여러 종류의 조약과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32>[237] 독일은 국경이 맞닿아있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양자 경찰양해각서 작성을 통해 양자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웃 국가들과 공동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동본부는 독일의 연방경찰, 주 경찰의 해당 부서 경찰공무원, 관세청 공무원들과 이웃 국가들의 경찰 및 세관 당국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혼합된 팀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감시, 배송통제, 추적 등 국경을 넘는 경찰 조치, 공동 경찰작전 및 공동순찰, 상호정보교환, 국경업무관련 상호 인력지원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표 32> 독일의 공동본부 현황

연번	이름	공동 근무 국가
1	켈(Kehl)	프랑스
2	룩셈부르크-쉬타트(Luxemburg-Stadt)	룩셈부트르, 벨기에, 프랑스
3	팟볼크(Padborg)	덴마크
4	파사우(Passau)	오스트리아
5	페트로비체와 쉬반도르프	체코공화국
6	쉬비치코(Swiecko)	폴란드

다. 중국[238]

(1) 기술유출 수사 조직 및 기능

중국에서 기술유출 수사[239]는 공안부에서 담당한다.[240] 국무원 소속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도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 및 교육, 기업의 자체 기술 보호 및 준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영업비밀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고소·고발을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当競爭法) 제4조

237) Bundeskriminalamt, Zusammen-arbeit über Grenzen hinweg https://www.bmi.bund.de/DE/themen/sicherheit/nationale-und-internationale-zusammenarbeit/grenzueberschreitende-polizeiliche-zusammenarbeit/grenzueberschreitende-polizeiliche-zusammenarbeit-node.html (최종방문일 2023.11.9.)

238) 중국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수년간 경찰청(사이버수사국) 등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의 서면자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39)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먼저 공안기관이 입건자료를 접수한다. 고발, 고소, 신고, 자수에 대한 자료의 접수하는 것이다. 입건자료 심사는 공안기관이 발견하거나 접수한 사건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활동이다. 공안기관의 사건자료 검토는 공안기관이 발견하거나 접수한 사건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활동이다. 범죄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건 접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사법절차가 계속 시행된다.

240)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011년 1월 10일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지 공안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에 의해 현(縣)급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当競爭法) 제21조에서는 운영자,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 및 검사 부서는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한화 1,838만) 위안 이상 100만(1억 8,38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50만(9,191만) 위안 이상 500만(9억 1,91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2) 국제공조수사 조직 및 기능

중국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일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결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기관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권한은 범죄예방과 수사는 물론 경미한 형사범을 행정벌로 처벌하는 권한까지 광범위하다.[241]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안부 소속인 외사국(外事局)이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국무원의 조직된 부(部)로서 전국 공안 업무의 최고 지휘·감독하는 기관이고, 각 지방의 공안기관은 중앙 상급기관(공안부)과 지방정부(지자체)로부터 이중 지휘·관리를 받고 있다. 공안기관 내부에서 국제공조 담당 부서는 중앙에 공안부 내 국제합작국(國際合作局: 한국 외사국에 해당)을 중심으로 각 省(성)[시(市),자치구(自治區)] 지방 공안기관에 국제합작총대(公安國際合作總隊) 또는 국제합작처(合作處: 한국의 외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국제경찰 법집행 협력(國際警務執法合作), 국제성범죄 수사, 국외도피사범 송환,국제성 테러·마약·사이버·야생동물 보호 등 경찰협력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국제협력(국제교류)업무까지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242] 공안부 국제합작국의 하부 조직의 경우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크게는 국제협력 부서와 국제공조 부서 그리고 해외파견 부서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국제협력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 국제협력과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공조 부서의 경우 중국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NCB) 업무와 공안기관 해외파견 경무연락관(警務聯絡官:경찰 영사)을 통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파견인원 선발 업무 등 해외 파견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국제합작국 조직은 ①의전처(礼賓處), ②국제 법집행 행동연락처(國際執法行動聯絡處), ③인터폴업무처(國際刑警工作處), ④평화경찰(PKO)업무처(維和警察工作處), ⑤유럽업무처(歐洲工作處), ⑥아시아·아프리카업무처(亞洲非洲工作處), ⑦미주대양주처(美洲大洋洲處) 총 7개 처(處)가 설치되어 있다.[243] 아시아·아프리카업무처의 경우 주로 동북아시아·남아시아·서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집행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1]

공안부 국제합작국은 인터폴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폴의 자원과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안 업무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성(省)에 ‘인터폴연락처(國際刑警聯絡處)’를 설치하여 인터폴중국국가중앙사무국종합정보시스템(國際刑警組織中國國家中心局綜合信息系統)을 통해 지방 공안기관 인터폴 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41) 진병동, 중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5(2), 2017, 275면.
242) 박동균, 이재호. 중국경찰의 조직구조와 제도적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32), 2004, 227면.
243) 인민공안보(人民公安報)

[그림 11] 중국 공안부 조직도

(3) 우리나라와 국제공조 현황

중국은 우리나라와 1998년 11월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었고 2000년 10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총 3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사판결의 집행과 재판절차의 이관은 최광의 형사사법공조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협의의 사법공조를 공조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조의 종류는 서류의 송달,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하는 증거의 취득,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전문가 평가의 취득과 제공,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피구금자 및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 범죄 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공조 등 9가지이다.[244]

중국 공안부와의 국제공조는 반드시 중앙기관(공안부-경찰청)을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의 두터운 벽으로 인하여 공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245] 모든 사안에 대하여 기관 내 공산당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실무자들이 중대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여도 상부의 간부나 당위원회 지도자의 비준 없이는 국제공조가 쉽지 않다.

244) 송영지,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7, 6-7면.
245) 이은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의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1면.

라. 태국[246]

(1) 국제공조수사 조직 및 기능

태국의 국제공조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는 경찰청 외사국(Foreign Affairs)이고 기본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담당한다. 경찰청 외사국은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적 지원 부서와 실제 사건과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작전 부서로 나뉜다. 행정지원 부서는 통역 및 의전과와 행정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전 부서는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은 지역적 범위와 범죄 분야를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 해외 주재관이 2명 파견되어 있다.[247] 태국 경찰청 외사국은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작전 부서이고 아세안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담당은 아세안 10개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세안 10개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를 일컫는 지역 협의체이다.

[그림 12] 태국 경찰청 조직도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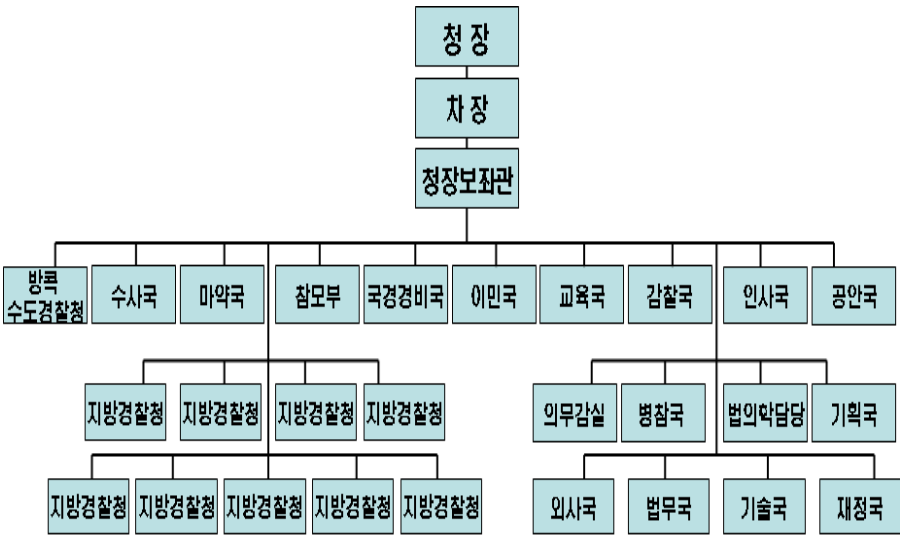

경찰청 외사국의 5개의 과 중 리전 1, 2, 3은 담당하는 지역을 나누고 있다. 먼저, 리전 1과는 지역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 담당 국가들을 기반으로 관련된 국가와의 공조를 전담하는 체제이며, 아세안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국제협력 사안들도 담당한다. 범죄 분야에 대한 담당은 조직범죄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범죄, 인신매매, 불법이민 등 범죄 분야를 담당한다. 리전 2과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아세안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을 기본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를 주요 국제공조 및 협력대상으로 업무를

246) 태국과 관련된 자료는 수년간 경찰청(사이버수사국) 등에서 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의 서면자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47) 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7.jsp (최종방문일 2023.11.13.)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실제 해당 국가들을 다녀온 경찰들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남한과 북한을 함께 담당하고 있고 중국 담당자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리전 2과의 범죄분야 별 담당은 테러 분야이다. 대테러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국 경찰 내에서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스페셜 브랜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테러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력은 물론 태국에 소재하는 각종 국제기구들의 테러 관련 부서와도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리전 3과는 지역적으로 리전 1과와 2과가 담당하지 않는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 분야와 관련된 업무 범위에서는 다른 리전에서 수행하지 않는 여타 범죄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버 관련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아메리카 지역은 언어적 한계 등으로 지역에 의한 업무 분할 보다는 범죄영역에 대한 구분으로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 태국 경찰청 외사국은 작전부서의 경찰관들에 대한 교체가 거의 없어 각 리전 별로 지역별 범죄분야별 전문화된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이 잘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태국에서 한국인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범과 함께 외국 복권 구매 및 선물하며 투자 대행 명목으로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248] 한국 경찰청의 태국 경찰청 외사국은 양국 간 공조수사 관련 주요 현안 공유하였다. 이후 태국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피의자의 태국 내 범죄수익 관련 계좌분석 현황 공유해 동결 환수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2) 우리나라와 국제공조 현황

리전 2과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도피 사범와 발생 사건 사고를 담당한다. 2023년부터는 한국 경찰청과 태국 경찰청의 양국 간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국가의 외사국에 상호 경찰관을 파견시키고 있다. 한국 경찰청에서는 경감급 1명을 태국 경찰청 외사국에 현지 파견시켰고 태국 경찰청도 태국 경찰관 1명을 한국 경찰청 외사국에 상호 파견해 놓고 있다. 모든 사건 사고와 공조수사 요구사항 등에 대해 양 국가에 파견된 상호 경찰관들이 우선적으로 상대방 국가경찰과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한국 경찰청에서는 파견된 경찰관을 코리안데스크의 직위로 부르고 있다. 한국 경찰에서는 코리안데스크 이외에 태국주재 한국 대사관에 경찰 영사 2명을 파견 중으로 주재관으로 불리는 경찰 영사들은 태국 내 한국인 관련 사건 사고 대응의 영사 업무와 함께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수사 업무도 함께 수행 중이다. 한국 경찰청에서는 국제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2023년 태국 마약청 (법무부 산하 별도 청)에도 경감급 경찰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로써 태국에는 국제공조를 전담하는 한국 경찰관이 모두 4명으로 늘어나며 업무 범위도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수사에 마약범죄 대응 협력까지 공조력이 강화되고 있다.

248)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9 판결.

마. 싱가포르

싱가포르 경찰은 정책, 수사 및 정보, 작전 기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규모 및 효율성 등을 감안, 국제공조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체제이다. 국제공조수사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는 수사 및 정보국 산하에 있는 과단위 조직으로 업무 구분은 담당자별로 이뤄져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 대륙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범죄 분야별로 보충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의 다른 법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국제공조나 협력조직 신설보다 싱가포르 경찰의 인터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경찰 국제협력과는 인터폴의 보안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 다른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공조 채널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항로와 해상 교통의 중심인 관계로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는 각종 금지 물품이나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자 등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때 관세청, 공항 또는 항만, 법무부 이민청 등 사건을 담당하는 법 집행기관들과 관련 국가와의 공조체제 구축 및 합동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과 이민청 등 법무부 관련 부서는 물론, 세무청 노동청 등에서도 싱가포르 경찰청 국제협력과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법집행기관별 업무 범위에 따라 사실 조회부터 실제 공조수사 진행 등이 구분될 수 있으나, 국제공조수사의 기본적 추진 조직은 싱가포르 경찰청으로 볼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국제공조 조직 및 기능

가. 인터폴[249]

(1) 기술유출 수사 조직 및 기능

인터폴 경찰활동 사무국 산하 조직범죄및출현범죄 대응국의 불법시장과는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및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를 담당한다. 불법시장과는 우리나라에서 인터폴에 펀딩한 디지털저작권 단속 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가[250] 운영되고 있다. 불법의약품 단속팀이 존재하나, 산업기술 유출 등과 관련한 전담부서는 없다. 다만, 전체 지적재산권 등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불법시장 등 관련 작전지원팀이 있고, 여기에서 산업기술 유출 등의 사범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자금세탁 등과 결합되면 경제범죄및부패대응국에서 공조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담자가 없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업기술 유출 등 수사가 범죄자 추적과 불법이익 환수 등 범위에 국제공조가 요구될 경우 조직범죄및출현범죄국 산하 범죄자추적과를 통해 공조를 진행할 수 있고, 불법이익 환수 등은 경제범죄및부패국의 자금세탁대응팀을 통해 공조를 진행할 수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는 우리나라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협업을 통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수사 분야를 특정하고, 인터폴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인터폴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상표권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국제 지적재산권 범죄 수사관양성 대학'(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IIPCIC)을 운영하고 있다.[251] 인터폴(Illicit Goods and Global Health Programme 부서)과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기관이 협력하여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만다린어 등을 제공하고, 초·중·고급으로 운영하고 있다.[252]<표 33>[253]

<표 33> 국제 지적재산권 범죄 수사관양성 대학(초급-중급-고급)

과정	모듈	제목	내용
초급	1	지적재산 범죄	지적재산 범죄 법집행관이 지적재산 범죄의 개념과 지적재산 및 지적재산 범죄 구성요소 및 주요 용어
	2	지식재산 범죄 수사	지적재산 범죄 조사기법 및 기소 보고서 등을 내용으로 지적재산 범죄 조사

249) 연구진이자 인터폴에서 파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25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터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저작권침해대응 국제협력에 총 36억 원을 지원한다. 2021년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사업으로 7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① 한류콘텐츠 합동수사, ② 한류침해지역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라인저작권침해에 다자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폴에 특별기여금을 공여한 것이다; 김기범등,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0, 95면.
251) 인터폴 내부자료, 「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2020.
252) 인터폴 내부자료, 「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2020.
253) 김기범등,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0, 161면.

	3	지적재산범죄 경제적 영향	지적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결과 및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쳐 고용에 끼치는 효과
	4	지적재산 범죄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관계	지적재산 범죄 조사에서 협력이 발휘하는 이점
	5	조직적 범죄 자금 및 IP 범죄	지적재산 범죄 활동의 광범위한 영향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조직 범죄 유형
	6	인터폴 & 인터폴의 지적재산권 범죄 프로그램	인터폴 개요 및 지적재산 범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7	지식재산 범죄가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결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지적재산 범죄가 소비자, 단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 범죄사건과 압수수색 사례를 통한 부정적 영향
중급	8	21세기 인터넷 불법 복제 및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	인터넷의 다양한 측면, 작동 방식, 범죄 유형 및 범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9	통합된 지적재산 범죄 법집행 전략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접근방식, 통합 전략 내에서 요구되는 기술
	10	민간 부문과 협력	지적재산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법집행기관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가져다주는 장점
	11	조직화된 지적재산범죄를 방해·해체·방지 방법	지적재산 범죄가 어떻게 조직범죄에 의해 관리되는지, 범죄를 근절시킬 방법
	12	영업 비밀 보호	상업적 영업비밀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제에서 갖는 의미 및 보호, 사례 연구
	13	지적재산 범죄 대응 전담 법집행기관 능력 확립	IP범죄에 대처하는 기관의 구조적 프레임워크와 핵심 책임사항, 전담수사기관 사례 및 업무비교
	14	조사 및 증거 수집	위조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준비 및 계획 설계
고급	1	인터넷의 구조	인터넷의 구조, 관리 방안
	2	온라인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포럼,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유형 및 이용방법 등
	3	용의자와 연결 방법	범죄자들의 인터넷 접근, 온라인 플랫폼 악용 및 위조·불법복제 상품 유통에 사용되는 도구
	4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범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남기는 데이터
	5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위조와 불법복제 구분 방법, 다양한 위조 제품과 위조활동이 실정법 위반 방법
	6	불법 복제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배포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와 IP 범죄에 대한 온라인 불법복제
	7	온라인 침해 행위 수사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정보수집을 포함한 범죄 행위 기소를 위한 절차와 방법
	8	디지털 범죄 현장 관리	디지털 범죄 현장 관리, 불법상품 밀매 수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2) 직접적인 공조수사 조직 및 기능

경찰활동 사무국(Executive Directorate for Police Service)은 인터폴 사무총장 산하에서 실질적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하는 부서이다. 여타 사무국은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나 기획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반면, 국제공조수사 및 국제 작전 등 실질적 공조 지원 업무는 경찰활동 사무국이 전담한다. 경찰활동 사무국은 국제공조수사와 국제 작전 등 실질적 공조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활동 사무국 산하에는 7개의 국이 있고,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이버범죄국, 대테러국, 조직및신흥범죄대응국(Organized and Emerging Crime), 경제범죄및부패대응국이 있으며, 범죄데이터관리및국경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전지원및분석국, 국가 간 연결을 위한 국제및지역담당국,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전략국이 있다.

경제범죄및부패대응국은 온라인 사기와 같은 경제사범(Cyber Enabled)과 자금세탁 및 부패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직및출현범죄대응국은 마약, 인신매매, 아동성착취 등 조직범죄 대응과 지적재산권범죄, 환경범죄와 같이 조직화되는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담당한다. 경찰활동 사무국의 국제공조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1) 국제공조망을 설립하는 활동, 2) 회원국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교육훈련 활동, 3) 지역적·국제적으로 해당 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작전활동으로 나뉜다. 특히, 작전활동은 사건별 공조수사 지원 활동과 인터폴 주도 하에 관련국가의 법집행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개별작전으로 나누어진다. 사건별 공조수사 지원은 인터폴의 범죄정보관들에 의해 사안별, 국가별로 진행되고, 관련 정보의 교환과 관련 국가의 법집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터폴 작전은 관련국의 관련 기관의 참여와 정보교환, 관련국의 법집행을 권고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나. 유엔 마약 및 범죄연구소

유엔마약 및 범죄연구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는 유엔 산하에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의 주요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유엔사무국 산하 형사사법 전담부서이다.[254] UNODC는 1997년 UN범죄통제프로그램과 국제범죄방지센터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전 세계의 기관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ODC의 90%의 예산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 중이다. UNODC는 회원국들이 불법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255] UNODC의 지사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및 아시아 국가에서 회원국의 약물 통제 노력을 지원하는 일련의 현장 사무소로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대륙과 지역을 포괄하고 현장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2023년 1월 현재 18개 현장 사무소의 지휘 아래 98개국(137개 물리적 위치)에서 2,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56]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으로

254) UNDOC 홈페이지, 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index.html (최종방문일 2023.9.9.)
25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기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UNODC에 지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256) UNDOC 홈페이지, https://www.unodc.org/unodc/en/field-offices.html (최종방문일 2023.11.9.)

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위치하고 있다. UNODC는 마약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범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며 매해 인신매매 보고서, 세계 마약보고서 등을 발간 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광범위한 맞춤형 기술적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지원활동으로는 조직범죄, 이민자 밀수, 테러, 인신매매 등에 해당하고 국가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핸드북, 매뉴얼, 법률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다. UNODC 연구소는 아편, 대마초 및 기타 물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80개국, 약 300개 연구소에 과학 및 법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57] UNODC의 중심업무인 국제협력은 다양한 정부, 기구의 정보를 나누고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UNODC는 국제협력의 업무로 마약과 범죄 문제에 관해 전 세계의 실무자,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이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다. 유로폴(Europol)

유로폴(Europol)은 유럽연합(EU)의 조직으로 테러리즘과 마약범죄, 자금세탁,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로폴의 목적은 EU회원국들에 속한 관련 기관들의 효율성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비EU파트너 국가, 국제조직과 협력하는 데 있다.[258] 유로폴은 EU회원국, 제3국 및 제3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ELOs: Europol Liaison Officers)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3국에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포함된다. 제3기관으로는 인터폴이 있다.

유로폴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집행기관과 회원국 국가에 유로폴 연락 담당자와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이 진행된다.[259] 영국 같은 경우 EU 탈퇴 이후 무역 및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비EU회원국들은 연락관(ELOs)시스템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다.[260] 유로폴은 미국의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외교안보국(Diplomatic Security Service, DSS),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 - 미국 재무부 - 금융 집행 네트워크(US Agencies - US Treasury - Financial Enforcement Network, FinCEN), 뉴욕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USSS),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등 미국기관들과 협정이 맺어져 있다.[261] 유로폴은 집행권한은 없고 SIENA시스템을 통해 회원국 및 제3국들과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262]

257) UNDOC 홈페이지, 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index.html (최종방문일 2023.11.9.)
258) Europol 홈페이지,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 (최종방문일 2023.8.3.)
259) Europol 홈페이지, https://www.europol.europa.eu/partners-collaboration (최종방문일 2023.8.3.)
260) 한종수, EU의 내적 안전과 유로폴, 유럽연구, 26(3), 2008, 121면.
261) Europol 홈페이지, https://www.europol.europa.eu/partners-collaboration (최종방문일 2023.8.3.)
262) 최호진등, 글로벌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1, 220-221면.

- 회원국 간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 정보를 조사.분석한다.
- 관련 회원국에 정보를 즉시 통보한다.
- 회원국의 수사를 돕는다.
-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체계를 유지한다.
- 회원국 기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 수사기법 등 회원국 간 기술적인 지원을 촉진한다.

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하여 출범하였고,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263]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 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 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FATF의 소속 회원 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FATF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모니터링 이후 그레이리스트 및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012년 FATF의 권고사항이 개정되면서 테러, 테러리스트의 행위 및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조달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사용 및 제공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테러조직과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금 경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테러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FATF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264]

263) FATF 홈페이지, https://www.fatf-gafi.org/ (최종방문일 2023.8.22.)
264) 이세련, 가상자산과 테러리즘: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6(2), 2022, 2면.

제2절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제도 및 절차

1. 일반적인 국제공조 제도

가. 출입국 통제

(1) 출국금지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최대 6개월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265] 출국금지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영구적으로 출국금지할 수 없어 출국정지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 출국정지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사유는 총 6가지 항목으로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정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특히, 긴급히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출국금지가 가능하다.

265)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3(1), 2019, 33면; 이동률, 정건희, 개인파산절차와 체납자 출국금지, 서울법학 28(3), 2020, 217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021.3.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9.]]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362호)에 따라 출국금지·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정지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출국금지·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경찰은 실무상 검찰과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출국정지, 입국시 통보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수사기밀 유지와 보안 등을 이유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1362호)
제4조(출국금지·정지의 통지유예)
① 출국금지·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
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 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정지 요청서의「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 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국시 통보

입국시 통보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해 입국할 경우, 관련된 수사기관에 대상자의 입국 경로와 시간 등을 통보해주는 국가기관 간의 협력제도를 말한다. 입국 시 통보의 대상자와 사유는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36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입국시 통보는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출입국이 잦은 수사 대상자는 우리나라에 입국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입국시 통보 요청은 수사기관이 법무부를 경유하여 입국시 통보 요청으로 대상자를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에 대상자를 등록[266]시켜야 하고,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입국 시 통보 요청기간을 설정과 요청기간 만료일에 대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치해야 한다.

266) 법무부 홈페이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https://www.moj.go.kr/moj/2432/subview.do (최종방문일 2023.10.3.)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1362호)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각급 검찰청·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4.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
6.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7.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8.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인 사람

(3) 여권 무효화

여권의 효력상실을 의미하는 여권 무효화 조치는 여권법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가 의심되는 수사 대상자나 이미 판결을 받고 해외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등에 대해 정당한 여행 증명서인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을 해야 하고, 반납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제13조 제1항 제8호). 반납명령의 송달이 본인 또는 동거 가족에게 이뤄지나 해외 체류 등으로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진행한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유효하지 않은 여행서류가 되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고, 무효화 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 도난분실 등 여권 데이터에 입력되어 각 나라의 이민청을 통과할 때 적발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등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될 때, 여권 무효화 조치가 가능하고, 체포영장 발부 전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새롭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3. 8. 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 1. 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1. 1. 5., 2021. 4. 20., 2023. 3. 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023. 3. 28.>
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4) 통제 배달

통제 배달은 마약 등 일부 범죄에 국한된 조치로 피의자의 신원과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화물 등이 통상적인 절차로 위장해 배달하게 하는 수사기법이다.[267] 통제 배달은 주로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거나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마약류, 금괴, 위조품 등에 대한 밀수 수사에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마약수사에 활용되고 있다.[268][269]

267) 예상균,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법과 정책연구 15(2), 2015, 669면.
26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69) 백혜영, 마약류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검사 및 통제배달 관련 판례 평석 -통관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81(), 2023, 92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에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통제 배달은 대상이 된 화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유사한 화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전에 범죄첩보를 확보하여 통제 배달을 진행하는 경우와 통상적인 통관 절차에서 확인된 불법 밀반출 물품에 대해 통제 배달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의심 화물은 개방해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강제로 개방한 이유와 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통제 배달을 진행하는 경우는 수사의 영역으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물품 등에 대한 강제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관세 당국의 일반적인 통관 과정에서 밀수출 화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의심 물품을 개방하고 내용물에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관 행정상의 권한으로 강제개방이 가능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경로 및 관련자 수사를 위해 사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 사실 확인

(1) 사실 조회

사실 조회는 수사 중인 대상과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270] 국제

270) 유주성,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4(2), 2016, 97면.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사실 확인에 대한 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국제공조수사에서 사실 조회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규정한 공조 요청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공조요청과 국제공조자료의 송부는 통상적인 국제공조 절차인 외교부를 통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인터폴 공조체제를 활용한 사실 조회도 가능하다. 사실 조회의 대상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적사항, 전화번호, 금융거래, 상업시설, 사업자등록, 온라인 사용 아이디 등으로 사실상 범위는 넓다. <표 34>[271] 다만, 관련 법령에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외에서 사실 조회를 요청할 경우,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수사 착수 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인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사실 조회 대상 및 범위

연번	대상	범위
1	인적사항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존재 여부를 조회
2	전화번호	• 인적사항이 특정된 경우에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나 연락처 등에 대해 조회
3	금융거래	• 인적사항이나 법인명 등이 특정된 경우, 해당 인적사항 등으로 개설된 계좌 번호 등에 대한 조회
4	상업시설, 사업자등록 등	• 국제공조 수사사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체 사업장 등 소재지 및 등록여부, 대표자 인적사항 등 관련 사실에 대한 실제 여부를 조회
5	온라인 사용 아이디 등	• 온라인상 이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메일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조회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이나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해 사실 조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관련 업체에도 일정 범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 조회 요청의 범위는 범죄수사 관련자의 인적사항, 명의자, 내용 등에 대한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나 상대 국가의 회신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실무적으로는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이후 인터폴 공조요청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하고 있다. 인터폴을 통해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채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271) 사실조회 대상 및 범위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업무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전과 조회

전과 조회는 크리미널레코드조회(Criminal Record Check)로도 불리고, 사실 조회의 일종이다. 대체적인 조회의 방법과 회신 채널 등은 사실 조회를 기반으로 한다. 전과 조회는 대상자에 대한 보충적 수사자료의 한 가지로서 실무적으로 형사사법공조를 통하기보다는 인터폴 채널 등을 통한 공식적 방법은 물론 다른 나라 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전과 여부가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인터폴 채널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진국 대다수와 태국 싱가포르 등 국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본인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를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전과기록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경우 제한이 있고 요청에 제한이 있다. 싱가포르 등은 지문 등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경찰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황과 나라에 따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한 뒤 진행해야 한다. 수사경력 조회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관리 여부와 관리 형태가 다양하므로 수사경력 조회의 범위와 대상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과 조회 요청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요청할 수 있다.

(3) 긴급보존명령

국제공조수사에서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증거와 증거 관련 기록 물품 등에는 해당국을 대상으로 보존을 요청할 수 있다.[272] 인터폴을 통한 긴급보존명령 요청과 대상물이 국제기업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소요시간과 대상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떠한 루트로 공조를 요청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터폴 채널을 통해 보존명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국제공조수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해 인터폴의 보안 네트워크(I-24/7)를 통해 해당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해당국의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이 요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보존 요청을 할 때는 상대국의 어느 기관이 보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는 경우여서 해당국의 법률에서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273] 경찰청 국제협력관의 전문인력과 협의를 거친 후에 판단 후에 보존 요청 문서를 인터폴 보안 네트워크(I-24/7)로 보내는 것도 회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온라인상 로그 및 접속기록 등 증거와 수사 요소에 대한 보존 요청은 인터폴 채널보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통칭되는 국제적 기업들에게 직접 요청함이 타당하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법집행기관과 협력에 대한 조직과 내부절차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대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법률 대응팀 등에서 각 국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수사자료 등 형태의 요청을 접수 받아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272) 정대용, 김성훈, 김기범, 이상진, 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8(1), 2017, 55면.

273) 우리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통해 보존 요청을 할 때부터 해당 상대방 국가의 어느 기관이 보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법률 체계 안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청국은 법집행기관이 공식적 지위와 권한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플랫폼(사이트)에 접수해야 한다. 공식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공식적인 법집행기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자체 플랫폼(사이트)을 운용하고 있다. 요청내용에 따라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공식적 법 집행기관의 요청과 함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관련 자료로 첨부해야만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기업마다 요청하는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 영장 등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조 요청의 일환인 보존요청은 기록의 유한성 등 보존기간의 한계를 고려해서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테러, 자살, 성범죄, 아동성착취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더욱 신속한 보존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국제협력팀)는 전국 경찰관서의 공조요청을 접수 받아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와의 국제협력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각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의 조력을 받을 경우 회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 공동 수사

(1) 압수수색

상대 국가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형사사법공조와 별개로 인터폴 채널과 국가 간 양자 채널 등을 활용하여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국에서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당국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상대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압수 증거물의 국내 이송 등은 고도화된 국제공조수사 영역이다. 해당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국에 인터폴 채널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공조수사 요청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공조를 담당할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과 접촉하여 압수·수색의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 그리고 해당 국가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영장 신청권자는 해당국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터폴 채널을 통한 공식요청 접수 후 관련 기관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이해와 관련이 없을 경우 국제공조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범죄로 인하여 해당국에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더욱 좋다. 해당국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과 협력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수월하게 요청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우리나라와 해당국의 경찰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협력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요청할 수 있는 대상국의 범위가 넓다. <표 35>

<표 35> 경찰청 및 외국경찰기관 간 치안협력 MOU 체결현황 (2021.6월 기준)

연번	상대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1	중국공안부	1996.11.05.	마약 테러 강력 등 국제범죄 정보교환 등
2	러시아연방 내무부	2000.09.19.	범죄정보 교환, 인적교류를 통한 전문기술 교환 등
3	일본 경찰청	2001.03.29.	범죄정보 교환, 인터폴을 통한 협력강화 등
4	몽골 경찰청	2002.07.25.	범죄정보·자료 공유, 교육훈련 교류 등
5	인도네시아 경찰청	2004.08.31.	수사정보·실무경험 교환, 상호방문 교류 등
6	베트남 공안부	2005.05.06.	상호 범죄정보 제공, 상호방문 등 교류
7	호주연방 경찰청	2006.06.19	범죄정보 교환,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8	뉴질랜드 경찰청	2006.06.21.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 범죄정보 교환
9	태국 경찰청	2006.06.23.	주요범죄·도피사범 정보교환 등
10	필리핀 경찰청	2007.03.05.	경찰 연락테스크 설치, 범죄정보 교환 등
11	싱가포르 경찰청	2007.05.17.	범죄정보 공유, 교육훈련, 협력체계 강화 등
12	요르단 경찰청	2007.09.06.	범죄정보 교환, 교육훈련, 협력체계 강화 등
13	카타르 내무부	2009.10.29.	수사기법·장비 등 협력, 범죄정보 교환 등
14	멕시코 공공안전부	2010.03.25.	도피사범 정보교환, 수사기법 공유 등
15	이탈리아 내무부	2010.05.07.	범죄 및 마약탐지견 훈련 등 정보 교환
16	과테말라 경찰청	2012.07.04.	범죄·경찰훈련 전문기법 정보교환 및 상호방문
17	터키 경찰청	2012.09.03.	범죄정보 교환, 상호 교류 방문 등
18	캄보디아 경찰청	2012.10.08.	양자회의 등 상호방문 및 범죄정보 교환
19	미국 국토안보부	2013.08.05.	수사기법 공유, 상호 수사 협력 등
20	홍콩 경무처	2015.04.13.	범죄정보 교환, 경찰관 훈련·장비 등 교류
21	콜롬비아 국방부	2015.04.17.	범죄첩보 등 교환,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 등
22	우즈벡 내무부	2015.05.28.	마약 등 범죄정보 교환, 과학수사연구 등
23	온두라스 치안부	2015.05.20.	치안시스템 전수, 범죄정보 교환 등
24	UAE 내무부	2016.02.22.	범죄정보 교환, 치안기법·기술 교환
25	사우디 내무부	2016.06.28	범죄수사기법 공유, 테러 등 정보 공유
26	파푸아뉴니기 경찰청	2016.06.28.	도피사범 정보교환, 치안기법 공유 등
27	코스타리카 치안부	2016.10.12.	민-경 치안협력 방안 및 범죄예방 정책공유
28	이탈리아 재무경찰청	2018.04.06.	경제범죄 등 정보 교환, 교육프로그램 참가
29	인도 내무부	2019.02.22.	범죄정보 교환, 교육·행사 등 인적교류 강화
30	크로아티아 경찰청	2019.04.11.	관광시즌 한국경찰 합동순찰팀 파견
31	우즈벡 국가근위대	2021.06.17.	범죄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공조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증거물품 등에 대한 해석에 있어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경우 인터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사관이 해당국 경찰의 협조하에 압수·수색 현장에 임장할 수 있도록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압수·수색시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과 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나라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지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울 경우 증거물에 대한 한글 해석, 통역 등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에 한글 등 우리나라 수사관이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우리나라 국민이 현장에 있는 경우도 많아 현장 참여는 간접적이더라도 직접 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합동작전

(가) 인터폴에서의 합동작전

합동작전은 여러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해 법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전으로 국제기구, 국가 간 협의체 또는 상호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터폴은 범죄 분야별로 해당 조직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작전을 주관하고, 조정을 통한 작전과 결과 취합 형태의 작전으로 나뉜다. 인터폴이 조정하는 작전은 테러, 국경관리, 불법이민, 환경 등 범죄행위가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범죄영역에 대해 인터폴이 자체 분석 등을 작전이 필요한 범죄 분야와 시기, 참가가 필요한 국가 등을 특정한 뒤 특정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동작전을 진행하게 된다. 인터폴이 주관하는 결과 취합 형태의 작전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불법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닌 다수 다양한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 데이터와 정보공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 통상 2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작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참가국들은 인터폴에 보고서 형태로 관련 사례와 정보를 보고하고 인터폴은 그 보고를 기반으로 주요 국제범죄단체 파악 및 범죄의 동향 파악 등을 내용으로 보고서를 생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인터폴에 직접 펀딩한 온라인 저작권단속 프로젝트(I-SOP) 수사, 경제범죄, 국외 도피사범 검거 등의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인터폴 주관 부서에서 등록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작전을 담당하는 조정관을 컨택포인트로 지정하여 인터폴에 알려야 한다. 인터폴이 작전과 관련해서 개최하는 사전모임, 각종 훈련, 사후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폴은 작전 기획을 완료하고, 참여할 국가, 시기, 범죄, 정보 공유 채널 등을 확정한 후에 각 국가중앙사무국(NCB)에 초청장을 이용하여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인터폴 작전은 법집행기관의 컨텍포인트의 역량에 따라 참여와 국제협력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지정된 컨텍포인트 수사관은 인터폴의 사전·사후 작전 모임 등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인터폴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실제 같은 범죄분야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작전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 합동작전

합동작전의 다른 형태는 국가 간 경찰업무 협약, 지역적 국가 간 동의에 따라 특정 범죄 분야에 대한 동시 법집행을 목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대방 국가와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 국가에 도피 중인 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검거 작전을 함께 진행한다. 또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범죄 형태에 대해 관련 국가들의 법집행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검거 송환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콜센터가 동남아시아 일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법집행을 목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콜센터 소재 파악과 검거를

동시에 합동작전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었다.[274]

(다) 합동작전의 보도

합동작전의 관리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성과가 확인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업무를 알릴 수 있으나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가와 작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국의 수사가 종결되었는지 확인 후에 배포해야 한다. 범죄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국가 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합동작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활용은 합의된 대로만 수행해야 한다. 인터폴은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도자료나 홍보 수단 등에 대해 참여하는 국가 간의 합의를 거쳐 보도 시기와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 인터폴은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도자료나 홍보 수단 등에 대해 참여하는 국가 간의 합의를 거쳐 보도 시기와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 위반할 경우 공식적인 제재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다음 작전을 진행하거나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제기구 작전이나 국가 간 작전의 정도에 이른 범죄는 각 국가나 국제기구가 심각하게 평가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관련 정보 제공과 공유도 국가별로 민감한 부분이어서 상호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폴 작전의 경우 언론보도는 작전 기획서에 합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의된 대로 언론홍보나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대체로 작전 후 3개월 등 일정 기간은 관련 사건에 대한 활동과 수사결과 등 보도가 엠바고 형태로 합의된다. 국제기구와 국가 간 합의한 경우 상대국의 수사관 얼굴이 노출되거나 피해자·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초상권을 포함해 국적이 특정되거나 인적사항이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폴이나 해당국과 협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3) 증거물 처리

수사 중 압수한 증거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경우와 다른 나라에서 압수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절차 진행 중 다른 나라가 증거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인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소송 과정 등이 아니라 수사 등 진행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상태 등일 경우에는 수사과정상 압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다. 수사단계를 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규정에 따른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법집행기관의 확보한 증거물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거물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인터폴 등을 통한 여타 국제공조 사안과는 달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인도 요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찰과 다른 나라의 법

274) INTERPOL (2022.6.19.), Hundreds arrested and millions seized in global INTERPOL operation against social engineering scams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2/Hundreds-arrested-and-millions-seized-in-global-INTERPOL-operation-against-social-engineering-scams (최종방문일 2023.10.5.)

집행기관과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와의 현장 협력을 통해 증거물품을 바로 인도해주는 방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집행기관과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 간 협력약정, 상호조약 등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조 관계가 설정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4) 정보공유

정보공유는 실질적 수사 진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 조약 등 상호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법령 등에 범죄정보 공유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폴등은 각 회원국 간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자료 활용과 이를 통한 핵심 정보 기반 수사역량 강화인만큼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다.[275] 우선, 범죄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할 범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공유 가능한 범죄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죄첩보 차원의 정보부터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공식적으로 국제공조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공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등 여타 법익의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전문 등 공식적 방법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시간 소요되는 형사사법공조는 활용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존재한다.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정보공유는 국가 간 자발적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말한다. 인터폴은 자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식적인 정보공유와 별개로 각종 국제회의, 외국기관 방문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 수사관과 개인적 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공식적 수사자료 확보가 아니어서 보충적 참고자료로만 가능하다. 구축된 워킹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인터폴 채널 등 공식화된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사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과도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수사 요소를 누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75) 조윤오, 외사경찰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21(2), 2022, 282면.

2. 특수한 국제공조 제도

가. 국내·외 적색수배자 처리

(1) 국내 적색수배자 조치

(가) 외국 법집행기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적색수배를 발부한 경우

자국민이 외국에 의해 적색수배 대상자가 된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통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폴 채널을 통해 회원국 전체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 자국민은 자신의 국가를 출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적색수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색수배서 발부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적색수배 발부 국가에서 인터폴 채널을 활용하여 소재수사, 자료요청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이때,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은 형사사법공조의 대원칙인 상호주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쌍벌가벌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요청에 응한다.[276] 자국민이 다른 외국에 의해 적색수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출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출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나) 외국 법집행기관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적색수배 발부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가 적색수배가 된 경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유로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적색수배 발부 국가는 우리나라 경찰청에 출입국 확인, 소재수사, 추방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외교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인터폴 채널을 통한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다른 국가에서 발부한 적색수배 대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사회질서 등에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확인, 소재수사 등을 거쳐 자신의 국가나 적색수배서를 발부한 국가로 추방이나 송환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살인, 아동성착취 등 특정강력범죄나 테러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적색수배가 발부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체류 상태 비자 등을 확인하고, 범죄경력, 적색수배 대상 범죄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 체류 허가 연장 불허의 조치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방시킨다. 해외 국가들 역시 자국에 소재하는 타국의 적색수배 대상자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추방한다. 이때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행정적 조치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 외교적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 명령 형태로 추방하기도 한다.

---

27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박영사, 2013, 822면.

(2) 해외 적색수배자 조치

(가) 국제수배서

국제수배서[277]는 인터폴을 통해 국외 도피사범, 실종자, 우범자, 장물 등 인적, 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제수배서는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녹색수배서, 황색수배서, 흑색수배서,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와 테러리스트에서 한해 유엔안보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폴 수배서를 발부할 수 있다.[278] 2023년 9월 25일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들과 공유하며 인터폴 보라색수배서인 범죄수법수배서(Modus Operandi)를 발부하였다.[279]

(나) 국외도피사법 강제송환

국외도피사범 강제송환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 중에 국외로 도피한 내국인이 체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도피자의 출입국 관련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추방을 요청하여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제도를 말한다.[280] 국외도피사범을 강제송환하여 처벌하는 근거로는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으로 구분된다. 강제송환은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중 ①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②마약, 총기, 위폐, 인신매매 등 국제성 범죄, ③범죄혐의가 명백한 3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④첨단기술 유출 등 국익과 밀접한 범죄, ⑤기타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281] 송환절차는 ①경찰관서는 체포영장과 여권 행정제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제공조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 ②경찰청은 도피 예상국의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 확인과 강제추방 등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중요 도피사범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 ③도피예상국에 우리나라의 경찰주재관이 있는 경우 주재국 경찰과 이민국과 협력하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추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터폴 강제송환은 자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출입국관리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법무부가 수행하는 반면, 인터폴 강제송환은 각국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범죄인인도청구는 외국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국제법상 절차로 피요청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282]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반면. 인터폴 공조는 전용망(I-24/7)을 기반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어 신속하게 전 세계 수사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다.[283]

---

277) INTERPOL 홈페이지, https://www.interpol.int/How-we-work/Notices/About-Notices (최종방문일 2023.10.16.)

278) 유엔 안보리는 테러 단체 등 지정은 할 수 있으나, 유엔이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폴 수배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것이다.

279)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최신 산업 기술 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 -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수법에 대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2023.09.25. :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24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여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 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등 총 18건이었다.

280) 신상철·임영호,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1), 2016, 144면.

281)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매뉴얼 참조

282) 신상철·임영호,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1), 2016, 145면.

(3) 범죄수익 몰수 및 국내 환수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는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환수나 몰수 대상과 관련된 국가가 국제공조에 협조해야만 가능하다. 환수와 몰수는 범죄수익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대상 재산에 대한 소재, 명의자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개인 등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르다. 현금, 금괴, 자동차 등 현물은 국제공조수사의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범죄의 중대성, 환수·몰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명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환수·몰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과 명령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실무적으로는 외교적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연결을 통한 요청, 재산의 관리 주체인 민간에 직접 요청이 함께 진행된다. 금융기관에서 환수·몰수 대상을 관리하는 경우 형사사법공조 요청은 물론 인터폴, 에그몽 그룹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기도 한다.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면 경찰청이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당사국에 공식요청한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색수배서 발부 여부, 회원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채널과도 연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기 전에 긴급히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존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폴 공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터폴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규모의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스캠 등), 테러 관련 범죄 등으로 형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폴을 통한 긴급 동결조치는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지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통해 동결조치를 요청하여 범죄수익의 인출과 자금세탁을 차단하여야 한다.

(4) 이중국적자 처리

이중국적자의 처리는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먼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은 없이 다른 나라 국적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간주하되 각 국가의 범 체계를 고려하여 공조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제공조수사의 대상일 경우 전체적인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됨이 기본적 방향이다.

실무상 다국적 소유자에 대한 체포 구금 등 인신구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소재 대사관에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이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이행 조치로 통보 조치를 생략할 경우 외교적 문제도 비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금 등 인신구속이 이뤄졌음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국적 소지 여부에 대해 당사

283) 김태민·권헌영,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6), 2021, 187면.

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 출입국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비자 신청서류나 외국인 등록 요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자이민 등 명목이나 국가 자체의 개방성 등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체포나 재판 등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 외국 국적임을 내세워 외교적 항의 등 여러 형태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실무진에서는 수사 대상에 대한 국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상 경찰청 외사국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대사관 등 외교 기관과의 협력업무가 공식화되어 있는 만큼 여타 부서에서도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적 소지 여부 및 국적에 따른 통보 조치 등을 진행해야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다.

(5) 글로벌 ISP 공조수사

국제공조는 국가 대 국가 간 공조를 기본모델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민간기업과 직접공조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역외에 있는 페이스북, 구글 등 ISP와 금융기관에 가입자정보, 접속기록, 결제정보,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메일해킹 무역사기(BEC), 피싱·파밍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2015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이 해외은행으로 이체되자 홍콩경찰과 홍콩은행과 협력하여 은행계좌를 동결시키고 피해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284] 공조절차는 국내법과 ISP·금융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또는 공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ISP는 전 세계의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정보제공요청을 접수한다.[285]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민간기업은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 제공하고, 전자우편 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은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르고 있다.[286]

하지만, 글로벌 ISP가 가지고 있는 추적단서와 증거는 범죄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고, 요청국과 소재국 간의 상이한 법률과 관할권의 문제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2020년 2월 전국 경찰관서가 글로벌 ISP와 국제협력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신설하고,[287] 해당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경찰관서의 압수·수색 영장신청부터 번역, 자료요청, 회신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검토 절차를 두어 각 ISP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려·거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 일반적인 글로벌 ISP뿐만 아니라 게임, 인터넷결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가상자산 등 다양한 회사들과도 협력체계를 확

284)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5-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면.
285) 전현욱·탁희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7면.
286) 전현욱·탁희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7면.
287) 연합뉴스, "한국 벗어나도 잡는다…해외IT기업 사이버수사 협조율 '쑥'," 2022.11.27. https://v.daum.net/v/20221127070024108 (최종방문일 2023.10.18.)

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ISP는 사내에 준법감시팀(Compliance Team) 또는 법집행기관대응팀을 두어 전 세계 수사기관의 협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ISP마다 법률 해석이나 자료제공 정책이 상이하여 자료제공 여부, 자료제공의 범위, 요청절차와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가입자정보 요청시 요청국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는 반면, 애플은 요청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구글은 법집행기관 플랫폼 별도로 운영하여 자료제공을 접수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틱톡·라인·야후·트위치·아마존 웹서비스 등은 공문, 압수영장에 의한 자료제공 요청은 불가하고,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형사사법공조(MLAT)는 요청에서 회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보관기간 경과로 자료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보존을 요청하여야 한다. 글로벌 ISP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인적사항, 접속기록, 등록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한정하고, 이메일·메시지 등 콘텐츠정보는 형사사법공조(MLAT)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업에 따라 아동성착취, 테러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콘텐츠정보까지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더라도 글로벌 ISP 입장에서 영장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거절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글로벌 ISP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요청국 의사를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글로벌 ISP의 자료제공 역시 임의적인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상호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한편, 글로벌 ISP는 테러, 아동성착취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행위와 자살기도 등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간 상 모욕·명예훼손에 대해서 삭제·차단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면 심의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전 세계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도 협조하지 않은 텔레그램도 불법콘텐츠의 삭제·차단에는 협조하기도 한다.[288]

또한, 디지털성범죄, 테러·사기·명예훼손 게시물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행을 차단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콘텐츠 삭제·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수 있으나, 공문으로 요청 후 심의과정이 필요하여 수사관이 직접 해당 기업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료제공요청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으며, 기업별로 별도의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법집행기관 전용 이메일, 전용 플랫폼 등에서 요청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텔레그램도 콘텐츠 삭제 차단에 응하기도 한다.

288) SBS, “[스프] '마약 온상'이 된 텔레그램, 추적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2023.7.4., https://v.daum.net/v/20230704110301560, (최종방문일 2023.10.17.)

(6) 가상자산거래소 자료제공 요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는 가상자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27개,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 관리하는 사업자는 7개, 가상자산 매도 및 교환, 이전하는 사업자 1개,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업자 1개 등 총 36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2023년 6월 16일 기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전 세계 정부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협력한 전 세계 법집행기관의 요청 수는 4만 7,000건에 달한다고 하였다.[289]

가상자산 범죄는 지갑·거래소 해킹, 스마트계약 취약점 공격, 사기·횡령·배임, 유사수신, 환치기, 시세조정,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랜섬웨어의 등장과 확산으로 가상자산 추적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산금융(DeFi)·NFT 해킹, 모네로·대시 등 다크코인, 개인지갑 이용 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총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 체계 수립을 발표하여 회원국은 관련 입법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였다.

수사기관은 거래소를 통하여 가입자 정보, 금융결제 정보, 거래내역, 접속기록, 매매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요구하거나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에서 가상자산 주소를 확보하면 우선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명의자를 찾고, 만약 없다면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명의자를 찾는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수백 개가 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국제공조가 쉽지 않다. 채이널리시스(Chainanalysis)의 리액터(Reactor)나 블록체인인텔리전스(Blockchain Intelligence)의 클루(Clue)와 같은 분석 도구가 일정 부분 추적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한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믹싱 기술이 등장하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289) 코인데스크코리아, "수사기관과 손잡고 범죄 차단하는 거래소들", 2023.09.15.,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28, (최종방문일 2023.10.9.)

제3절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사례 및 문제점

1. 국내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사례

가. 디스플레이 유출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290]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 및 국내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직 피해기업 직원 5명과 중국으로 이직한 2명을 구속한 사례이다. 피의자 A는 2018년 국내 유수의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 퇴사 직전에 첨단기술인 Plastic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보상회로를 설계하는 자료를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사진을 찍거나 인쇄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의자는 기업에서 수년간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H씨로 부터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Y업체(경쟁업체)로의 이직과 기술 이전 시 계약금 및 국내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같은 기업 내 제품 개발부 직원 피의자 B에게 이직 권유하면서 기업 내 핵심 ① 배합비 자료를 빼내도록 하였고 중국업체로 이직하여 피해기업의 기술로 제품 개발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피의자 A는 이직을 위하여 자기소개 등을 작성하고, 유출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들을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경쟁업체)로 송부하였다.[291]

(2) 수사결과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인터넷 접속기록에서, 네이버에 '인쇄를 통한 기술자료 유출'을 검색한 내역, 중국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예약 내역을 확인하였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발견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출국 직전에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중국인 H는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핵심인력들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업체에 이직을 알선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알선행위를 한 중국인 H는 업체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2013년 중국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국내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을 소개하고 그 명목으로 98,784위안(한화 약 1,629만 원)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3회에 걸쳐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던 43명의 연구원을 중국 기업들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5,317,141위안(한화로 약 8억7,732만 원)의 소개료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292] 수사 결과, 기술 이전과 이직의 대가로 Y사로 부터 A는 연봉 1억과

290) 유출된 기술 자료는 ①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레시피) 기술 자료와 ② OLED 보호막 제조 기술 자료로써, ②OLED 보호막 제조 기술은 '13. 6.경부터 피해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2년간 20억 상당을 투자하여 '15. 10.경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제2015-101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291) 수원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363 판결.

292) 경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 OLED 패널 기술 빼돌려 중국업체로 이직한 국내업체 직원 검거 구속, 2020.10.18.

계약금 3,700만 원을, B는 연봉 8,000만 원과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A와 B, 두 명을 구속하였다. 추가로 피해기업의 제품개발 및 영업부서에 근무하였던 피의자 A, C, D, E는 순차적으로 국내 경쟁업체 K사에 이직하면서 피해기업의 ①배합비 기술자료와 ②OLED 보호막 기술자료를 K사의 연구원인 피의자 F씨와 G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중국인 H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기술인력들을 국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기술력 있는 국내 기술인력들을 스카우트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소개하여 대가를 받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며, 소개한 기술인력들의 수가 43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에 미친 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였다.[293]

(3) 시사점

피의자들이 기술을 유출할 경우 바로 형사처벌이 되면서 최근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등장하여 형사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브로커가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업안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형량이 낮아서 규제로서 실효성이 낮다. 하지만 브로커에 대해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상적인 스카우트 업체, 즉 헤드헌팅업체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수사[294]

(1) 사건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과 인터폴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295]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청자 총 1천7백여 명을 모집하여 월 30만 루피(약 25,000원) 시청료를 받고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의자 A, B, C는 친인척 관계로 해외 교민 사회에서 국내 실시간 방송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국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송출 방송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A는 인도네시아에 퇴직 비자로 거주하며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10만 8천 편을 인도네시아 서버로 송출하여 교민 등 상대로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였다. 피의자 B는 국내에서 케이블 TV 40개 회선을 가입하여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에 연결하고, A가 VOD 업로드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피의자 C는 불법 서비스 시청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서버를 운영하였다. 불법 서비스는 피의자들이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 또는 이용자들의 스마트 TV, 웹브라우저 접속을 통해 시청 가능

293)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7822 판결.
294)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인터폴(INTERPOL) 파견관의 서면 자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9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2023.12.05.

했다.

(2) 수사결과

국내 모 공중파 방송국 법무팀에서는 2021년경 위 서비스를 파악한 후 국내 수사기관과 인도네시아 법무법인 등을 통해 수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2022년 인터폴 최초 저작권 범죄 프로젝트인 I-SOP 프로젝트 구성 이후 수사 개시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과 지속해서 접촉 시도하여 사건 개시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연락 담당자(Point of Contact)의 퇴직, 전근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않았다. 2023년 5월 인도네시아 법·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 산하 지적재산권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자카르타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소장 접수는 인터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참여하에 이뤄졌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는 피의자 A의 주거지와 서버가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통보하여 주었고, 인터폴과 한국에 압수·수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파견을 요청하였다. 인터폴은 오퍼레이션 지원 인력팀을 구성하였고, 한국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관(디지털분석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였다.

압수·수색 당일 한국의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수사팀이 주거지를 나서던 B를 체포한 후, 재전송 서버가 있는 B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재송출 서버를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현장에서 셋톱박스, 인코딩장비, 셋톱박스, 앱 소스, 배포서버, 신호증폭기 등을 압수하였다. 같은 시간대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국과 인터폴,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합동수사팀이 피의자 A의 주거지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는 서비스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데이터센터에서는 스트리밍 서버, 동영상 서버를 압수하였다. 동영상 서버에는 270TB상당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그림 13] 합동수사팀의 인도네시아 온라인저작권 침해사범 압수수색 현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3) 시사점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지적재산권국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노력 덕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세안 국가 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사건 수사 회의 등의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지적재산권국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MOU, '21년 4월)에 따른 '온라인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저작물 침해의 경우 사건 접수시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통역인 동행 등이 요구된다. 단순 수사기관 간의 공조만으로는 변호사 선임과 같이 비용이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 부산경찰청의 미국 불법 IPTV 수사[296]

(1) 사건개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미국 IPTV 불법업체는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해외 22개 나라 교민에게[297]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 30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등은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국내 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등을 통하여 수신하여 이를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출하였다. 합법적 방송인 것처럼 소위 OTT 방식으로[298] 불법 유료방송을 제공하고 각종 영화, 방송물 등 VOD 파일을 별도의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등은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이용료 명목의 수익을 챙겼다. 피고인1은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로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직원을 관리했고 피고인2와 피고인3은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로 '○TV'등 사업자를 설립 후 피고인이 송출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장비를 설치, 관리하고 가입자 유치 등 대리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등은 서울, 경기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다른 직원의 명의로 가입한 S사, D사의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셋톱박스와 방송프로그램을 인코딩용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망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영화·드라마 VOD 파일을 H웹하드 사이트에 다운로드받고 이를 해외에 있는 자체 VOD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2는 해외 사무실에서 스트리밍 서버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1이 송출한 방송 신호를 수신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의뢰하여 자체 제작한 셋톱박스를 판매하여 해외에서도 VOD 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299] 피고인들이 구축한 미국 현지법인은 별도의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프로그램 25만여 편과 VOD 형식의

296) 해당 사건은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경찰청 경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97) 과테말라,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태국, 파라과이, 필리핀, 호주 등
298) '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콘텐츠 제공 서비스
299) 22개 국가에서 모집한 약 25,925명의 회원에게 월시청료 미화 29.99달러 상당을 받고 국내외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52개 채널을 실시간 방송하고, 2,604개 VOD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외에 있는 VOD 서버에 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 2600여 편을 유료 가입자에게 제공했다. [그림 14]

[그림 14] 미국 IPTV 범행 개요도

(출처: 부산광역시 경찰청)

(2) 수사결과

부산경찰청은 국내 방송사 3곳 MBC, KBS, JTBC와 미국영화협회 1곳 MPA(Motion Picture Association Korea)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네트워크 포렌식으로 셋톱박스의 서버 도메인 주소를 확보했다. 나아가 도메인 가입자 조회 당시 익명 가입자를 확인하고 도메인툴즈·도메인빅데이터에서 과거 도메인 가입자 내역과 결제정보 확인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였다. 이후 통신수사와 금융정보 수사, 셋톱박스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으로 국내 송출지를 서울, 경기 등으로 특정하였다. 확인된 국내 송출장소인 빌라에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 대, 불법 IPTV 고객용 중국산 셋톱박스과 현금을 압수했고[300] 피의자 검거하였다. 추가로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미국 현지법인 대표, 국내 송출조직 등 총 7명을 검거하였다. 국내 운영총책 1명을 국내에서 구속하였고 브라질 거주 주범도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의 적극 협조로 조기 검거되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다. 미국 현지법인 前대표 1명을 검거하여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중이고, 필리핀 소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였다.[301]

(3) 시사점

디지털저작권범죄 수사는 경찰청에서는 단속의 우선순위가 낮아서 수사를 꺼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특

300) 셋톱박스 243대, 엔코팅 장비(HDMI 방송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서버로 송출하는 장비 104대, 케이블신호증폭기 2대, 한화 및 미화등 현금 3억5천여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301) 부산경찰청 보도자료,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조직 검거, 2023.04.26.

별사법경찰은 사건의 규모가 크고, 국제공조가 개입되어 있어 수사가 어려워 성과를 못내고 있는 사이에 불법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I-SOP 일환으로 인터폴과 협력하여 단속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사하면서 국내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미국영화협회 등의 저작권까지 침해를 당했다고 하여 미국의 수사기관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국내 방송사(MBC, KBS, JTBC)와 미국 웨이브아메리카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302]

2.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사례

가. DuPont v. Kolon

(1) 사건개요[303]

본 사건은 듀폰(DuPont)에서 근무하던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이 다른 기업인 코오롱(Kolon)으로 스카웃되며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Mitchell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Richmond) 소재의 공장에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와 기술부서에서 25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직장 상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2006년 업무성과 미달로 해고되었다. Mitchell은 퇴사하기 마지막 2년간 Kevlar 섬유의 판매와 마케팅 업무를 하였다. DuPont은 Mitchell이 고용 종료 시 고용 계약의 비공개 조항을 알리고, 회사 정책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반환을 요구하였다. Mitchell은 모든 문서를 반환했음을 확인하고 DuPont의 자산인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DuPont 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코오롱은 Kevlar의 기술과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을 찾던 중 Mitchell을 찾았다. Mitchell은 2007년 유급 컨설팅 계약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와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Mitchell은 DuPont의 Kevlar와 경쟁하는 Kolon의 파라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Heracron의 생산 및 마케팅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DuPont의 고문변호사는 Mitchell의 퇴사 전후 활동들을 검토하였다. DuPont는 2007년 5월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상무부(DoC)에 Mitchell의 활동,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유출 가능성(the potential theft of trade secrets)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보했다.

(2) 수사결과

해당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Richmond에 DuPont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연방수사국(FBI) Richmond 지부가 수사를 담당하였다.[304] Mitchell은 2009년 12월 영업비밀 절도 및 사법 방해 혐의로

302) 매일신문, “부산경찰청, 국내 방송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2023.05.03.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50218411604982 (최종방문일 2023.10.01.)
303) E.I. DU PONT DE NEMOURS COMPANY v. KOLON INDUSTRIES, Civil Action No. 3:09cv58 (E.D. Va. Apr. 27, 2011)

유죄를 받아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상무부(DoC) 수출업무 집행실(Department of Commerce's Export Enforcement Office)의 도움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코오롱의 5명 임원진들을 영업비밀 절취혐의로 기소하였다.[305] 이후 2015년 코오롱은 DuPont의 Kevlar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훔치려는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회사는 벌금 8,500만 달러와 배상금 2억 7,50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306] 이 사건은 법무부, Virginia 검사, 법무부 형사국 사기범죄과, 형사국 컴퓨터/지적재산담당과 등에서 기소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고, 법무부 형사국 국제관계과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307]

(3) 시사점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함께 수사와 기소 업무에 임한 사건으로 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한 위장수사를 통해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던 사건이었다.[308] 미국은 시장에서 경쟁기업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관련 기업 간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경영/시장점유 상태도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은 내부고발자나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도의 위장수사와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ing) 전략과 절차를 활용한다.[309] 적발되었던 사건들은 대부분 내부자였고, 범죄 적발 단계에 이르면 수사/기소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내부 고발자 면책권의 확대로 수사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310]

나. US v. Ibrahim Dimson

(1) 사건개요[311]

본 사건은 Coca Cola Company의 근무하던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판매하여

304) 임준태.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대응과 시사점 -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4, 2019, 313면.
305) FBI 보도자료 (2015.4.30.) Kolon Industries Inc. Pleads Guilty for Conspiring to Steal DuPont Trade Secrets Involving Kevlar Technology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richmond/news/press-releases/kolon-industries-inc.-pleads-guilty-for-conspiring-to-steal-dupont-trade-secrets-involving-kevlar-technology (최종방문일 2023.10.11.)
306) FBI 보도자료 (2015.4.30.) Kolon Industries Inc. Pleads Guilty for Conspiring to Steal DuPont Trade Secrets Involving Kevlar Technology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richmond/news/press-releases/kolon-industries-inc.-pleads-guilty-for-conspiring-to-steal-dupont-trade-secrets-involving-kevlar-technology (최종방문일 2023.10.11.)
307) FBI 보도자료 (2015.4.30.) Kolon Industries Inc. Pleads Guilty for Conspiring to Steal DuPont Trade Secrets Involving Kevlar Technology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richmond/news/press-releases/kolon-industries-inc.-pleads-guilty-for-conspiring-to-steal-dupont-trade-secrets-involving-kevlar-technology (최종방문일 2023.10.11.)
308) 이순옥,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15(1), 2021, 162-163면.
309) 임준태.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대응과 시사점 -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4, 2019, 317면.
310) 임준태.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대응과 시사점 -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4, 2019, 318면.
311) US v. Ibrahim Dimson et al., case number 1:06-cr-00313, District Court, N.D. Georgia

기소된 사건이다. Ibrahim Dimson, Edmund Duhaney, Joya Williams는 이들은 모두 Coca Cola Company의 근무하던 자들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었다. 2006년 5월 19일 PepsiCo의 본사는 아틀란타에 소재하고 있는 Coca Cola Company의 본사에 한 편의 문서 사본을 송부했는데 그 사본은 누군가 Coca Cola의 공식 비즈니스 봉투에 문서를 담아 뉴욕의 Purchase에 소재한 PepsiCo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었다. 뉴욕 브롱크스에서 소인이 찍힌 이 편지는 자신을 "Dirk"라고 밝혔고, 그는 Coca Cola의 고위직에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내부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Coca Cola Company는 즉시 연방수사국(FBI)에 연락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잠복수사에서 "Dirk"가 뉴욕 브롱크스의 Ibrahim Dimson인 것으로 밝혀졌다. 잠복수사 끝에 기밀정보의 출처는 Joya Williams로, 당시 Coca Cola Company의 본사에서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라는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어 “Dirk”라고 설명한 사람이 갖고 있던 정보나 자료에 접근권한을 갖고 있었다. “Dirk”는 연방수사국(FBI) 잠복수사요원에게 14페이지의 Coca Cola 로고가 찍힌 보안문서를 전달했다. 피해기업은 이 문서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민감하며 독점적인 영업비밀자료라고 하였다. “Dirk”는 1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거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였다. 나중에 "Dirk"는 Coca Cola의 유효한 영업비밀이자 기밀임이 확인된 다른 문서를 생산했고 추가 거래를 위해 이번 문서에 대해서는 선의로 5,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Dirk"는 새로운 Coca Cola 프로젝트에서 기밀제품 샘플을 확보하는 데 75,000달러의 금액에 동의했다.

(2) 수사결과[312]

피고인들은 2006년 PepsiCo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이러한 정보를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PepsiCo에서는 수상히 여겨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고 연방수사국은 위장수사를 통하여 검거하였다. 연방 대배심은 Coca Cola Company의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절취·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사인 Pepsi Company에 넘겨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것, 즉 한 건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과 최대 $25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혐의를 적용했다. Coca Cola 보안요원의 협력과 지원으로 비디오 감시를 통해 Joya Williams가 책상에 있는 여러 파일을 살펴보고 문서를 찾고 가방에 넣는 것을 증거로 확보했다. 2006년 6월 16일 연방수사국(FBI) 위장 요원이 Hartsfield-Jackson 국제공항에서 Dimson("Dirk")을 만났다. "Dirk"는 "매우 기밀"이라고 표시된 문서가 있는 봉투 1개와 액체 제품 샘플이 들어 있는 흰색 라벨이 붙은 유리병 1개가 들어 있는 갈색 Armani Exchange 가방을 전달했다. 위장 요원은 제품 샘플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후 추가로 45,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동의와 함께 노란색 걸스카우트 쿠키 상자에 들어있는 "Dirk"에게 100달러와 50달러 지폐로 30,000달러를 지불했다. 2006년 6월 27일, 연방수사국 위장요원이 "Dirk"로부터 나머지 영업비밀 항목을 150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Duhaney와 Dimson("Dirk")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계좌에 사용된 주소는 Duhaney의 거주지였다. 계정의 목적은 150만 달러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2006년 7월 5일 애틀랜타에서 Dimson, Williams, 그리고 Duhaney는 150만 달러의

312) Department of Justice, Trade Secret/Economic Espionage Cases - U.S. v. Dimson et al. (N.D. Ga.), 2006. https://ipmall.law.unh.edu/sites/default/files/hosted_resources/CyberCrime/CyberCrime_TradeSecrets_Espionage_Dimson.asp).(최종방문일 2023.10.11.)

거래가 성사하기로 한 당일 그 현장에서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Dimson과 Duhaney를 보석 없이 구금되었고 Williams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구금에서 벗어났다.

(3) 시사점

미국 FBI는 영업비밀 사건에서 정보요원을 활용하여 위장수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쟁회사에 접촉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영업비밀과 신제품 관련 정보를 판매하고자 한 영업비밀 절취사건이다. Coca Cola Company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경쟁사인 PepsiCo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PepsiCo 측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은 위장수사관을 PepsiCo의 고위관계자로 투입하여 거래를 시도하여 검거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어 영업비밀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다. United States v. Yanjun Xu

(1) 사건개요[313]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자 국가안전보위부 장쑤성 부국장인 Yanjun Xu는 미국 보잉사 직원에게 벨기에로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Yanjun Xu는 2013년 12월부터 항공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는 미국과 해외 특정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고 가명, 위장 회사와 대학을 사용하여 항공 직원을 속이고 정보를 요청했다. Xu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GE Aviation[314]의 독점 복합 항공기 엔진 팬 모듈과 관련된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2017년 3월 신시내티의 GE Aviation 직원은 중국의 한 대학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달 후 중국을 여행한 뒤 Xu를 소개받았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은 GE Aviation 직원으로 가장하여 Xu와의 통신을 진행했다. 2018년 1월 Xu는 직원에게 "시스템 사양, 설계 프로세스" 정보를 요청했고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하고 있던 GE Aviation의 직원은 독점 정보를 두 페이지 분량의 문서 형태로 이메일을 보냈다. 2018년 2월 Xu는 직원에게 유럽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용 파일 디렉터리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Xu는 2018년 4월 1일 직원의 사진과 현금을 가지고 벨기에로 여행을 떠났고 벨기에에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되었다.

(2) 수사결과

이 사건은 GE Aviation의 소재지인 오하이오 남부 지역의 담당과 미국 국가 안보국 방첩 및 수출 통제 부서의 검사가 기소하였다. 미국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벨기에)에서 불법으로 넘겨받으려고 시도

313) United States v. Yanjun Xu, 1:18-cr-043 (S.D. Ohio Nov. 5, 2022)
314) GE Aviation은 상업용, 군용, 비즈니스용 항공기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공급업체이다. https://www.geaerospace.com/ 참조

하는 Yanjun Xu를 벨기에 경찰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한 후 범죄인인도받아 자국 법정에 세웠고, 결국 Yanjun Xu를 산업스파이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다.[315] 미국은 Yanjun Xu를 체포하기 위해 벨기에와 공조하였고 형사부 산하 국제처(The Criminal Division'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는 벨기에 정부와 벨기에 연방 경찰의 지원을 받아 범죄인인도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받는 성과를 이루었다.[316]

(3) 시사점

해당 사건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Yanjun Xu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벨기에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후에 벨기에 연방경찰과 협력하여 검거한 후에,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아서 미국으로 송환해 법정에 세운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국제공조수사는 해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으로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하고, 만약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주의에 의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이행의 강제가 어렵다. 이와 같은 수사는 실무상 쉽지는 않다. 수사를 담당하는 A국가에서 B국가의 시민을 C국가로 오도록 하여 C국가에서 B국가의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하도록 하여 A국가로 범죄인인도 형식을 거쳐 송환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이 그만큼 영업비밀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공조수사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다양한 국제공조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15) 변성은,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36면.
316) FBI 보도자료 (2021.11.05.) Jury Convicts Chinese Intelligence Officer of Espionage Crimes, Attempting to Steal Trade Secrets https://www.justice.gov/opa/pr/jury-convicts-chinese-intelligence-officer-espionage-crimes-attempting-steal-trade-secrets (최종방문일 2023.9.11.)

3. 기술유출 수사의 문제점

기술유출 수사는 국내에서도 지능화된 방법으로 유출을 하고, 외부의 목격자가 없으며 유출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장시간이 소요된다.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최근 첨단기술을 브로커에 의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 국제공조수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피의자들은 회사의 시스템 보안조치를 우회하고, 시스템에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국내가 아닌 해외의 이메일 서비스, 클라우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글로벌 ISP, 클라우드, 메신저 등의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카드회사, 가상자산거래소와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야 해서 협력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기술을 탈취한 후에 다크웹 등 익명통신의 공간에 일부를 게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공갈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기술유출범죄를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특정 기업의 자산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유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예방할 수도 없다. 특허청, 대검찰청, 경찰청의 수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보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범죄사실을 구증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기술유출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국제공조수사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간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인터폴공조를 비롯하여 해외 주재관 활용,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여 왔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경험도 미흡하다.

제4절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 수사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사례

가. 경찰청의 갠드크랩 랜섬웨어 수사

(1) 사건개요

갠드크랩 랜섬웨어(Gand Crab)는 국내를 타겟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바로가기의 링크파일, 매크로 기능, JS스크립트, 취약점 등을 통해 랜섬웨어를 유포한 사건이다. 사용자가 랜섬웨어를 다운받거나 실행하도록 유도하였다. 감염 시 .GDCB, .KRAB 등의 확장자로 변경되어 암호화되며, 암호화된 파일 복구를 위해 토르 브라우저 설치를 요구하고, 몸값으로 대시, 비트코인 등을 요구한다. 갠드크랩은 백신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RSA 키 관리 방법이 바뀌는 등 버전1에서 버전5까지 진화하고 있다. 버전5로 진화하면서 암호화 대상에 한글파일(.hwp)이 추가되었고 감염 후 배경화면 이미지가 변경되었다.[317] 랜섬웨어는 감염된 시스템 정보를 C2서버(명령제어서버)에 전달하고 랜섬노트에 명시된 다크웹(Tor)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발자는 러시아 언어의 다크웹에 러시아어로 랜섬웨어를 설명하고, 러시아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사용화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8] 나아가 피의자들은 VPN 사용 외에도 다크웹 서버 활용, 가상자산 추적 수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의자는 울산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등을 사칭하여 갠드크랩이 첨부된 출석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319] 또한 익명의 공범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메일 수상자 목록, 경찰관서를 사칭한 도메인 목록, 악성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유포한 피의자는 준비된 서버에 접속하여 이메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역할을 분배한 후, 랜섬웨어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2) 수사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된 도메인의 정보를 분석하였고 해당 도메인 회사가 미국인 것을 확인하였다. 랜섬웨어 첨부 이메일 원문을 확보하여 악성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명령제어(CnC) 서버가 네덜란드에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였고 경찰은 랜섬웨어 유포 최초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형사사법공조(MLA) 절차를 통해 증거로 수집하였다. 미국, 네덜란드 총 2개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2019년 2월, 5월에 각각 발송하였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발송 이전에 각각 인터폴 공조를 통해 요청 자료에

317)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악성코드 분석 기술 보고서 - 끝나지 않는 위협, ‘갠드크랩’”, 2019.2, 7면
3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2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8.07.
3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1고단17, 2021고단2024(병합) 판결.

대한 자료보존(data preservation)을 요청하였다. 회신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 5월경에 이루어졌다. 경찰은 미국에서 도메인에 대한 가입자 정보, 결제내역, 접속기록 등 받고, 해당 자료에 대해 2개월 가량 분석한 후 국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경찰은 인터폴, 유로폴 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와 공조하여 3년 동안 약 3천만 건의 가상자산과 2만 7천 개의 통신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찰관서 등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와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하였다.[320]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를 검거한 이후, 수사를 계속하여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 2명을 2021년 4월 및 10월 추가로 검거하였다.[321]

랜섬웨어 검거에 사용된 '퀵샌드' 공조 작전[322]은 2021년 11월 이후 유로폴과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 일명 '골드더스트' 공조 작전(Operation GoldDust)으로 이어졌다. 골드더스트 공조 작전에는 유로폴, 인터폴 그리고 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쿠웨이트, 영국, 미국 총 17개국이 참여했으며, 해당 공조 작전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검거한 피의자 3명을 비롯하여 총 7명(미국 1, 루마니아 2, 쿠웨이트 1, 한국 3)의 갠드크랩(Gandcrab), 소디노키비(Sodinokibi), 레빌(Revil) 랜섬웨어 관련자들이 검거되었다.[323]

(3)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랜섬웨어를 검거한 최초의 사례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이다. 그간 랜섬웨어는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았음에도 검거한 것이다.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는 '골드더스트' 공조 작전(Operation GoldDust)으로 연결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형사사법공조 제도가 장시간 소요되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여전히 랜섬웨어 조직의 주범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나. 경찰청·우크라이나의 클롭 랜섬웨어 공동수사

(1) 사건개요

클롭 랜섬웨어(CLOP)는 2019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대학과 제조업체 등 서버와 PC 810대를 감염시킨 사건이다. 클롭 랜섬웨어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기 위해 디지털서명을 포함한 악성코드가 유포하였다. 악성코드는 키보드 레이아웃 정보를 확인하여 러시아 등 특정 국가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파

320) 최호진등, 글로벌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1, 293-295면.
321) 경찰청 보도자료,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자 검거, 구속, 2021.03.10.
322) INTERPROL 보도자료 (2021.11.08.), Joint global ransomware operation sees arrests and criminal network dismantled,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1/Joint-global-ransomware-operation-sees-arrests-and-criminal-network-dismantled (최종방문일 2023.11.17.)
323) EUROPOL, Five affiliates to Sodinokibi/REvil unplugged,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five-affiliates-to-sodinokibi/revil-unplugged (최종방문일 2023.11.17.)

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코드 스스로 자체 삭제를 진행한다. 클롭 랜섬웨어는 파일의 확장자를 '.clop'으로 변경하고 주요 파일을 암호화여 암호화된 폴더에 랜섬노트(ClopReadMe.txt)를 생성한다.[324] 파일마다 암호키를 생성하고 RC4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사용한 공개키는 암호화된 파일 바이너리 내부에 존재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파일을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325] 공격자들은 복구의 대가로 4억 1천만원 상당의 65비트코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였다.

(2) 수사결과

경찰청은 클롭 랜섬웨어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해서 수사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2020년 2월 인터폴과 유로폴, 7개의 피해국 수사실무자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고 10월 화상회의에서는 14개의 피해국이 참여하여 수사실무자끼리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 총 3차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사실무자 화상회의와 캐나다 연방경찰, 미국 FBI 수사실무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총 16개의 피해국, 인터폴과 유로폴, 한국, 우크라이나, 미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을 진행하였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한국, 우크라이나, 미국(FBI)가 합동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작전 회의를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6개소 동시에 영장을 집행했다. 한국 경찰 4명, 우크라이나 경찰 70명(경찰특공대 포함), FBI 8명으로 총 82명이 동원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는 디지털 증거물을 위한 포렌식 분석과 가상자산 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였다. 비트코인 내역, 모바일에서 추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비트코인 추적과 약 1,500여 개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였다.[326] 체포영장과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입건하였다.

(3) 시사점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는 가상자산 추적과 네트워크 추적에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정보수집과 관계 기관과 수많은 회의가 필요하다. 클롭 랜섬웨어 사건 역시 수사 실무자끼리 화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현지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 사건은 국제공조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청에서 국내에서 제공받은 통신사실과 통신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하였고, 인터폴 공조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총 79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IP 주소 765개, 지갑주소 12,991개를 제공받았다.[327]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 대부분의 정보를 해외 수사기관, 글로벌 ISP,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확보했다는 것이다. 즉, 랜섬웨어 수사는 완전한 국제공조사건으로 우리나라 법제가 글로벌 표준에 맞아야 하고, 국제사회 수사기관과도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적·언어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

324)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신동향보고서_Clop 랜섬웨어 유포에 따른 감염 주의, 2019.02.26.
325) 한국인터넷진흥원, CLOP 랜섬웨어 암호기능 분석 보고서, 2019.09.18.
326) 경찰청 보도자료, 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2021.10.16.
3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랜섬웨어 수사사례 발표자료 참조.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정보수집과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확대수사를 위해 참여했다는 점이다.

다. 제주경찰청의 미국(HSI)와 허위영상물(Deepfake) 공조수사[328]

(1) 사건개요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미국에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국내로 송환하였다.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물리적·직접적인 성착취가 없고, 주로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의 심각성은 그 외 디지털성범죄에 비해 덜할 수 있으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유포할 경우 피해는 심각해진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크고, 피의자들 대부분 특별한 죄의식 없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청은 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처벌조항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사범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A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주거지와 미국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할 목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사진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2천 2백여 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위와 같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과 해외사이트에 5천 8백여 회 반포하였다. 피의자 행위 자체는 포토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것이나 적용법조는 행위태양(제작, 반포 등)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범죄시기(2020년 6월 허위영상물 제작 등을 처벌하기 전에는 일반 음란물유포 적용)에 따라 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제작), ③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4가지가 각각 적용되었다.

328) 해당 사건은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자의 서면자문과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15] 허위영상물 유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2) 수사결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주요 유통창구인 텔레그램 모니터링 중 피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하였다. 피의자가 기이 제주경찰청에서 송치한 별건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허위영상물을 구매하였고 미국이 본사인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들은 익명성과 검열이 약한 점 등으로 온리팬스(Onlyfans)와 같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도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별건 피의자에게 허위영상물을 구매할 때 자신이 미국에서 쓰던 학교 이메일과 해외 SNS 계정을 사용하였다. 경찰의 국제공조는 전자상거래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구매내역 확보와 피의자의 해외SNS 계정 가입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일부 해외SNS에 한정되기는 하나, 경찰은 형사사법공조가 아닌 국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을 해외 민간기업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수사자료를 획득하고 있고, 영장 송부 방법은 개별 수사관서가 아닌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사이버범죄수사과) 공조창구로 일원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해외SNS업체로부터 피의자의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수사착수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해외 소재 피의자의 신병은 범죄인인도와 같은 공식 외교경로보다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근거로 한 강제송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시사점

해당 사건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의 한국지부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HSI 서울지부와 미국 지부, 미국 주립경찰, 미국 이민청이 현지 피의자 검거와 국내 송환에 참여하였고, 최종 국내 송환에는 미국 이민청 호송관이 동행하였다. 이번 수사공조의 특이점은 이민법 위반 외에 별도 현지법 위반이 없었고 즉, 미국 측에서 별도로 수사개시(Case Open)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소재 파악, 감시조(surveillance) 배치, 피의자 체포까지 신속하게 협조하였다. 이민법이 적용되

지 않는 사건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미성년자 연령이 다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로 공조가 진행되었다. 범죄인인도가 아닌 수사기관 간 공조에서 해외 소재 피의자 송환은 '체포영장 신청 →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강제송환 신청'이라는 단계를 거쳤다.

국제공조의 성패는 해외 카운터파트와의 관계 여하에 달려있다. HSI 서울지부와 한국 경찰은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함은 물론, 주기적 상호방문, 다크웹과 아동성착취물 수사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지 합동수사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사건을 잘 아는 한국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하여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사안이 디지털성범죄임을 잘 알고 있어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를 변경없이 피의자의 신병과 함께 보내주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별도의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장소에서 외장하드와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허위영상물은 미국 해당 주에서는 아직 처벌조항이 없어 미국 HSI에서 수사개시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였다. 피의자에게 적용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미국에서도 수사가 가능하였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달라(우리 18세, 미국 17세) 적용이 불가하였다. 그럼에도 한·미 간 여러 차례의 온라인 수사공조 회의를 통해 미국 측에서도 피의자를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디지털성범죄 혐의자로 인지하고 공조절차를 진행하였다. 미국 측에서 어떤 시각으로 피의자를 바라보는지는 검거 이후의 국내 송환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의자는 2023. 6월경 검거된 이후 자진 귀국을 거부하고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반응은 사전 한미 공조회의에서 예견된 것이었고, 경찰은 HSI 서울지부를 통해 미국 검찰과 미국 재판부에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보석신청 기각을 끌어 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 한국 경찰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거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미국 내에서 별도로 수사개시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수사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받는 절차 없이 신속히 한국으로 송환한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해외 합동수사'를 못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청의 미국(HIS)와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공조수사

(1) 사건개요

경찰청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연방 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검거하였다.[329] 피고인은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에 기초한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용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이하 W2V)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W2V 운영권과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

329) 경찰청 보도자료, 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 한·미·영 등 32개국 공조, 운영자 · 이용자(310명) 검거 -, 2019.10.16.

였다. 2015년 7월 국내외 8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위와 같이 W2V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들어온 이용료를 지급받을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여 W2V 사이트를 운영하였다.[330] W2V 사이트에서 생성한 비트코인 가상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W2V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331]

(2) 수사결과

해당 사건은 미국 국세청이 자금추적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가상자산으로 영상 등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HSI 등을 중심으로 W2V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2017년 8월 W2V 사이트와 관련된 수천 개의 비트코인 계좌들을 이른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법'을 통해 그룹화한 결과, 해당 비트코인 거래소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7년 9월 W2V 사이트에서 은닉되지 못한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업체가 제공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HSI는 2017년 9월 28일 대한민국에 W2V 사이트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2017년 10월 내사에 착수하여 2018년 2월까지 미국, 영국 등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수사를 진행하여 W2V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8년 3월 4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2018년 3월 5일 한국경찰은 미국 국세청, HSI,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의 협조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그가 운영하던 서버를 압수했다.[332]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가 288개이며,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대한민국 223명, 청구국 53명 및 기타 7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333]

(3) 시사점

해당 사건은 미국, 영국 등 국제공조수사와 범죄인인도 결정에 있어 시사점을 가진다. 미국 연방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 음란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피고인의 송환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334] 피고인의 아버지는 미국

330) 서울고등법원 2020.7.6. 선고 2020토1 결정.
331) DOJ 보도자료 (2019.10.16.), South Korean National and Hundreds of Others Charged Worldwide in the Takedown of the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Website, Which was Funded by Bitcoin https://www.justice.gov/opa/pr/south-korean-national-and-hundreds-others-charged-worldwide-takedown-largest-darknet-child (최종방문일 2023.6.6.)
332) DOJ 보도자료 (2019.10.16.), South Korean National and Hundreds of Others Charged Worldwide in the Takedown of the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Website, Which was Funded by Bitcoin https://www.justice.gov/opa/pr/south-korean-national-and-hundreds-others-charged-worldwide-takedown-largest-darknet-child (최종방문일 2023.6.6.)
333) 서울고등법원 2020.7.6. 선고 2020토1 결정.
3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고단508 판결.

으로 송환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은 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우리 법원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서 양국간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죄인인도를 하는 데 있다. 국경을 넘어서 익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일원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하여 피고인의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았다.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다크웹이라는 네트워크 기반이므로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양단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게 되었다.[335]

마. 경찰청의 캄보디아 소재 도박사이트 공동수사

(1) 사건개요[336]

에이스스타(AceStar) 도박사이트 조직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조직원은 약 80여 명으로 개발팀, 누리팀, 시스템운영팀, 상황팀, 스튜디오팀 등 분업화하였다. 범죄조직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경 ‘다모아’, ‘A-PLUS 카지노’ 등 약 7개의 실시간 화상카지노 및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 토토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인터넷 도메인 25,000여개와 판돈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 1,000여 개 이상, 사이트 운영 서버 400여 대 이상을 동원하였다. 회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사이트 주소와 도박판 돈 입금 계좌를 받아 현금을 입금하였다. 약 5년간 7만 5,0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약 3조 7천억 원 이상의 판돈을 입금·충전하여 도박하도록 하였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수사결과[337]

해당 사건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아닌 수사기관 공조에 의해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현지 경찰의 승인하에 수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경찰청 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하드디스크, 휴대폰, USB 등에 저장된 다양한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배후 운영자, 핵심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IP에 대해 인터폴 공조를 통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캄보디아 내 용의자 주거지를 특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

335) 서울고등법원 2020.7.6. 선고 2020토1 결정.
336) 경찰청 보도자료, 판돈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 2014.11.14.
337) 전현욱·탁희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63-164면.

다. 다만,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와 수년 동안 유지된 경찰 간 협력, 공조수사의 경험이 있어 신뢰관계가 마련되어 가능했다. 경찰청에서 인터폴 인터넷 도박 대응 워킹그룹 회의(INTERPOL Project Aces Working Group Meeting)를 유치하고, 캄보디아 고위간부를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피의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협조가 용이한 것도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팀 파견, 공조수사 및 정보공유 등을 요구하였다. 캄보디아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과 공조수사를 수용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여 압수·수색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캄보디아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저장매체를 직접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이례적으로 한국경찰의 수사활동을 승인하여 주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도 의사결정이 쉬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경찰은 국제협력 관련한 법제 미비, 수사기관 간 공조의 법적 지위의 미흡, 형사사법관할권 침해 여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 보장 등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338] 국내·외 법제와 학설에 따르면, 외국의 승인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그 승인의 범위 안에서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임의수사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공조수사의 범위는 피요청국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범위도 임의수사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339] 외국의 승인된 범위 안에서 임의수사나 강제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수사관들이 고민하던 형사사법관할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보장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공조에 있어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의 승인하에 현지에서 정보저장매체 별로 해시값을 산출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였다. 현지에서 직접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현지 경찰이 서명이 날인된 '압수수색사실 증명 및 압수물 인계확인서'를 받아 연계보관성까지 입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국제공조의 결과로 해당국이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물을 송부한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당성, 진정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338) 전현욱·탁희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63-164면.
339) 전현욱·탁희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64면.

바. 관세청의 태국총국과 마약 합동단속(SIREN)[340]

(1) 사건개요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은 합동으로 2022년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태국의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SIREN)을 수행하여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였다.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적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필로폰 밀수가 증가하면서 마약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1년 11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의 25% 생산)'을 마약류 유통의 허브로 보고, 태국 관세총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하였고, 태국 관세총국에서 수락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341]

(2) 단속결과[342]

한국-태국은 2021년 11월 합동단속을 추진한 이후 태국 방콕에 위치한 수완나폼공항에 작전 통제본부(Operation Coordination Unit)를 운영하였다. 한국 관세청은 태국 현지 작전본부에 4회에 걸쳐 7명의 정보요원을 파견하였다.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합동단속으로 한국에서 71%(25건)에 달하는 마약을 단속하였다. 태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이 "과자상자 안에 야바를 은닉하는 수법"이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관세청에 통보하여 통제본부 운영 첫날인 5월 2일 인천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건을 적발하였다. 이후 태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이 동 수법을 합동단속 통제본부 태국 직원에게 "초콜릿에 은닉된 야바" 수법을 공유하여 해당 수법으로 은닉한 사례 3건 적발하기도 하였다. 양국 관세 당국은 마약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출입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중에 공항에서 검거한 것으로 밝혔다.

(3) 시사점

SIREN작전은 관세청에서 최초로 한국-태국이 양자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마약류공급지인 태국과 소비지인 한국이 합동 단속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양국이 마약 은닉수법과 단속기법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여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었다. 특히, 관세청이 태국으로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에 전파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양국은 SIREN 단속에 대한 성과보고회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 합동단속의 성과와 적발사례를 공유하였다. 관세청은 SIREN 작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태국과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SIREN 2)을 진행하여 정례화하고 있다.[343]

---

340) SIREN 작전은 수사사례는 아니지만,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과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여 마약 단속에 성과를 거두어 소개하고자 한다.
341) 관세청 보도자료,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2022.09.20.
342) 관세청의 보도자료와 브리핑자료, 성과발표 등을 참고하였다.

2. 해외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사례

가. 미국의 아동성착취 다크웹 '플레이펜'(Playpen) 수사

(1) 사건개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8월에서 15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운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Child Exploitation) 사이트인 'Playpen'을 폐쇄하기 위한 작전(Playpen)을 수행하였다. 플레이펜(Playpen Case)은 Tor 익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폐쇄 당시 21만 5천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였고 사이트에는 23,000개의 이미지, 동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이 존재하였다. FBI는 사이트를 바로 폐쇄하기 전 서버를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주 자체 시설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FBI가 운영하던 기간인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21만 5천 명의 이용자 중 10만 명이 사이트 방문한 결과를 통해 실제 이용자가 많음을 확인하였다.[344]

(2) 수사결과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도중 실수로 Playpen의 고유 IP 주소를 공개하여 외국 법집행기관이 발견하였고,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하였다.[345] 법원은 네트워크 조사기법(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NIT)을 사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한 이용자들을 해킹하는 것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하였다. 연방수사국(FBI)은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주 자체 시설로 이전 후 온라인수색(NIT) 코드를 삽입하여 방문한 접속자의 IP를 추적하였다. 토르(Tor) 웹을 이용하여 Playpen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콘허스커(Cornhusker)라는 악성코드를 통해 익명성을 무력화시켰다. 관리자 체포 이후 2015년 1월,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아동 착취 및 음란물 부서(Department of Justice Child Exploitation and Obscenity Section)와 협력하여 수천 명의 Playpen 회원을 추적하기 위한 작전인 Pacifier 작전을 시작했다. 코드삽입을 통해 사용자를 찾고 식별에 용이한 IP주소와 기타 정보를 찾았다. 수사관들은 전국의 연방수사국(FBI) 현장 사무소에 1,000개 이상의 단서를 보내어 사용자의 이름, IP 주소, 운영체제 등을 수집하였고 접속자 1천 300명 소재 파악 후 137명을 기소하였다. 2017년 5월 4일 기준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25명이 기소되었고 국제적으로 548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을 체포하였다. 55명의 미국 피해 아동 구조에 성공하였고 296명의 성착취 피해 아동들로 확인되었다. 유럽에서만 368명의 아동성착취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346]

---

343)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마약 주요 공급지 현지 단속으로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 전환, 2023.07.18.

344) DOJ 보도자료 (2017.05.01.), Florida Man Sentenced to Prison for Engaging in a Child Exploitation Enterprise https://www.justice.gov/opa/pr/florida-man-sentenced-prison-engaging-child-exploitation-enterprise (최종방문일 2023.11.07.)

345) FBI 보도자료(2017.05.05.) 'Playpen' Creator Sentenced to 30 Years, Dark Web 'Hidden Service' Case Spawned Hundreds of Child Porn Investigations https://www.fbi.gov/news/stories/playpen-creator-sentenced-to-30-years (최종방문일 2023.11.26.)

346) EUROPOL 보도자료, "Major online child sexual abuse operation leads to 368 arrests in Europe"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major-online-child-sexual-abuse-operation-leads-to

(3) 시사점

본 사건은 사이트 폐쇄와 이용자 검거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사이트 서버를 옮겨 온라인수색(NIT) 코드를 삽입을 통해 이용자들의 IP 주소를 탐지한 사건이다. 연방수사국은 Mozilla Firefox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전달했고 이와 같은 코드삽입은 2017년 아동성착취용의자의 ISP를 식별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사용되기도 하였다.[347] 연방수사국은 단일 영장에 근거하여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온라인수색으로 수천 건의 수색을 진행한 행위가 적법한지,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지 관할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348] 미국 법무부는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동성착취와 같은 중대범죄에는 온라인수색 등 고도화된 수사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349]

나. 미국의 호주·유럽 등과 아놈(ANOM) 작전 공동수사

(1) 사건개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0년 10월 호주와 유럽 경찰과 공동으로 아놈(ANOM) 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방수사국(FBI)은 마약거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를 단속한 후에, 해당 이용자들이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여 마약을 거래할 것으로 보아 새로운 ANOM이라는 종단 간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해당 앱으로 범죄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OM 장치는 암호화되어 있으나, FBI 및 AFP가 master key를 보유하고 있어 메시지 전송 시 수사기관이 암호를 해독하고 저장할 수 있다.

국제범죄조직은 에콰도르에서 벨기에로 코카인을 선적하여 참치캔 안에 숨겨진 선적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하였고, FBI는 이에 대한 ANOM 대화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화 내용 내부에는 국제범죄조직이 불법 수입물류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물류가 있는 컨테이너 정보에 대해 공유한 사실이 있다. 해당 컨테이너를 수색하기 위해 위의 정보를 벨기에의 법집행기관과 협력하는 브뤼셀의 미국 당국에 전달하였으며, 약 613kg의 코카인을 찾아내었다. 또한 ANOM을 통해 에콰도르 참치회사가 유럽과 아시아에 마약을 공급한 사실을 알아냈으며, 벨기에의 앤트워프로 향하던 이 회사의 컨테이너에서 약 1,523kg의 코카인을 추가로 압수하였다.

-368-arrests-in-europe (최종방문일 2023.07.26.)

347) Securityaffair (2017.09.09.) FBI masqueraded the NIT in a video-bait to unmask sextortionist on Tor https://securityaffairs.com/61850/cyber-crime/fbi-nit-sextortionist-tor.html (최종방문일 2023.07.26.)

348)EFF 홈페이지, The Playpen Cas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eff.org/pages/playpen-cases-frequently-asked-questions#howdidplaypenmalwarework (최종방문일 2023.07.26.)

349) DOJ 보도자료 (2017.05.01.), Florida Man Sentenced to Prison for Engaging in a Child Exploitation Enterprise https://www.justice.gov/opa/pr/florida-man-sentenced-prison-engaging-child-exploitation-enterprise (최종방문일 2023.07.26.)

[그림 16] FBI AFFIDAVIT(2021)

Case 3:21-mj-01948-MSB Document 1 Filed 05/18/21 PageID.44 Page 1 of 33

AO 106A (08/18) Application for a Warrant by Telephone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unsealed on 6/7/21 per order dlg for the

SEALED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n the Matter of the Search of
(Briefly describe the property to be searched or identify the person by name and address)
Google LLC
1600 Amphitheater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Host of expliamdavis@gmail.com

Case No. '21 MJ01948

APPLICATION FOR A WARRANT BY TELEPHONE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I,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request a search warrant and stat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on the following person or property (identify the person or describe the property to be searched and give its location):
See Attachment A,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located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there is now concealed (identify the person or describe the property to be seized):
See Attachment B,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The basis for the search under Fed. R. Crim. P. 41(c) is (check one or more):
☑ evidence of a crime;
☑ contraband, fruits of crime, or other items illegally possessed;
☐ property designed for use, intended for use, or used in committing a crime;
☐ a person to be arrested or a person who is unlawfully restrained.

The search is related to a violation of:

Code Section	Offense Description
21 USC §§ 841, 846	Conspiracy to Distribute Controlled Substances

The application is based on these facts:
See Attached Affidavit of FBI Special Agent Nicholas Cheviron,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 Continued on the attached sheet.
☐ Delayed notice of ____ days (give exact ending date if more than 30 days: _____) is requested under 18 U.S.C. § 3103a, the basis of which is set forth on the attached sheet.

Applicant's signature

Nicholas Cheviron, FBI Special Agent
Printed name and title

[그림 17] ANOM 실행 화면

(2) 수사결과

FBI와 호주 경찰이 암호 메신저 앱을 처음 기획한 것은 2018년이었다. 이 앱은 암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통하기 편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조직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앱을 설치하기 위해선 암시장에서 특수 전화기를 구매해야만 했다. 또 기존 사용자의 추천이 있어야만 앱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점조직 방식으로 보급되기까지 1만 2천 개 이상 휴대폰에 설치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100개국 이상의 300여 개 범죄조직이 이 앱을 사용하게 됐다[350]. 2018년 3월, 호주에서 50개의 ANOM 장치를 모니터하기 위한 법원 명령이 승인되었고, 해당 장치를 통해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 및 총기 구매를 추적하는 배타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자체 iBot 서버를 수령하고 ANOM 사용자 간 발생하는 통신 내용 공유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 iBot 서버를 복사한 뒤 상호 법률에 따라 FBI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 2019년 10월, 제3국과 관련된 법원 명령을 획득하였다. 2~3일마다 iBot 서버를 복사하고 그 내용을 수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추가 MLAT(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따라 서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매주 월, 수, 금요일에 FBI에 ANOM 서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9년 10월 이후 FBI가 MLAT에 따른 제3국의 iBot 서버 콘텐츠 속 메시지를 번역하였다. 그 결과 총 11,800개 장치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2,000만 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수사 경과는 ANOM 장치와 암호화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가능한 결과였다. 수사기관 즉, FBI는 ANOM의 암호화 시스템에 마스터키를 구축하여 메시지가 전송될 때 암호를 해독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외부에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내용인 BCC(Blind Carbon Copy)가 미국 외에 위치한 iBot 서버로 라우팅 되며, 메시지의 암호를 해독한 후 FBI가 소유한 2번째 iBot 서버로 전달된다. 두 번째 iBot서버에 전달된 BCC는 암호 해독 후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ANOM 사용자에게는 특정 JID(Jabber ID)가 할당되는데, 이는 고유한 영 숫자 또는 두 개의

350) zdnet, “FBI 최첨단 함정수사…가짜 메신저 앱으로 일망타진”. 2021.6.9. https://zdnet.co.kr/view/?no=20210609092230 (최종방문일 2023.11.09.)

영어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ANOM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이름 목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FBI는 사용자의 JID 목록과 대화명을 유지 및 관리하여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범죄자가 ANO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추천이 필요하였는데, Haken Aylk이 그의 지인들에게 해당 장치를 추천한 것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3) 시사점

ANOM을 활용한 수사사례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첫 번째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다. 해당 수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에 위반되기에 US 법 집행에서는 국내 ANOM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불가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351] 미국 연방헌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 따라서 FBI가 미국 외의 다른 서버에서 ANOM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ANOM 메시지 추적에 성공함에 따라 의도한 대상인 범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프라이버시 또한 감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FBI는 자국민의 통신내용을 감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MCC(이동통신국가코드)를 가진 ANOM 기기는 FBI 소유의 서버로부터 우회되도록 '지오펜스(Geo-Fenced)'를 도입하였다. 반면 1968년 제정된 범죄단속및가두안전종합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과 1986년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Privacy Act: ECPA)에서 범죄와 관련한 통신감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펼치는 의견도 있다. 호주의 경우, 통신감청법(Telecommnu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 'TAA')에 따라 '암호화된 통신에 대한 호주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감청 권한을 기술하고 있기도 한다.[352] 구체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보안정보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호주 통신사업자에게 가능한 기술적 자원을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규정인 것이다.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위장수사 관련 쟁점도 존재한다. ANOM의 경우 수사 및 추적 목적이 아닌 일반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속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영장주의는 대상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입장이 있다.[353] 미국의 경우 FBI의 'Undercover Operations guidelines' 위장수사 대상 범죄에 조직 및 마약범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354] 해당 사례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때문에 사전영장이 필요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ANOM 수사사례는 수사기관이 직접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죄자들의 행동을 추적했고, 그를 통해 실제로 마약 압수 등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351) Harper, D. J., Ellis, D., Tucker, I. "Covert Aspects of Surveillance and the Ethical Issues They Rais e.", In Ethical Issues in Covert, Security and Surveillance Research 8, pp.180.
352) 이해원.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제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67, 2019, 335면.
353) 김민수.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1(64), 2023, 581면.
354) 홍영선, 권헌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35(2), 2021, 181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위장수사와 같은 법적 쟁점들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프랑스·네덜란드·영국·독일의 Encrochat 공조수사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수사기관이 공조수사한 사례이다. 프랑스 수사기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약의 불법 거래(대마초 6~436kg, 헤로인 6kg, 크랙 코카인 1kg)와 관련하여 예비수사를 진행하면서 용의자들이 소위 'EncroChat'이라는 암호통신시스템을 사용하는 암호휴대전화(모델 OnePlus One, OnePlusX 및 BQ Aquaris X)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이 암호로 되어 있어서 분석할 수 없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용의자 중 일부가 암호휴대전화를 마약밀매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약 밀매,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프랑스 사이버범죄수사대(C3N)는 2018년 11월 해당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스 릴(Lille) 검찰(JIRS)에 제출했다. 검찰은 범죄단체 또는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될 범죄(특히 마약밀매) 혐의와 암호매체 불법 공급·양도·수입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네덜란드 수사기관과 유로폴(Europol)도 유로저스트(Eurojust) 산하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수사에 참여했다.[355]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합동수사팀(JIT)이 EncroChat의 서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영국 수사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은 '베네틱 작전'(Operation Venetic)을 수행하여 EncroChat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은 마약 수입 등 상당수 중범죄와 EncroChat에 대한 정보를 유로폴로부터 입수하여, 해당 범죄들이 EncroChat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해 독일에서 실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토대로 암호화 코드를 복호화하고, 휴대폰 수천여 개와 메시지 수백만 개를 분석하여 동부특수작전부(ERSOU), 유로폴, 지역 조직범죄수사대, 메트로폴리탄 경찰, 기타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였다.[356]

(2) 수사결과

EncroChat은 텔레그램과 유사한 암호통신시스템으로[357] 익명으로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디바이스 내에는 EncroChat(메시지), EncroTalk(인터넷 기반 음성 통화), EncroMail(암호화된 이메일 서비스), EncroNotes(암호화된 메모) 등 사전 설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358] EncroChat 운영체제와 표준 Android 시스템의 이중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부팅 방식에 따라 다

355) EUROPOL, "Dismantling of an encrypted network sends shockwaves through organised crime groups across Europe."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dismantling-of-encrypted-network-sends-shockwaves-through-organised-crime-groups-across-Europe. (최종방문일 2023.06.26.)
356) zdnet, "영국 경찰, 보안 메신저 해킹…범죄자 수백명 체포",2020.07.06. https://zdnet.co.kr/view/?no=20200706162004, (최종방문일 2023.12.04.)
357)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38면.
358) AFFIDAVIT IN SUPPORT OF APPLICATION FOR SEARCH WARRANT, 2021.

른 모드가 구동된다. 메모리 역시 EncroChat 디바이스 내 Realm, RAM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애플리케이션 RAM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종료 혹은 디바이스 종료 시 Realm으로 이동한다.[359]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를 원격 삭제 가능한 킬 코드 기능을 지원하고, 잠금 해제에 사용되는 PIN 코드를 반복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데이터의 빠른 삭제가 가능하여 악용 소지가 크다. 보안을 위하여 단말기의 GPS, 카메라, 마이크, USB 포트 사용이 제한되는 EncroChat 디바이스는 6개월 기준 이용료가 약 £1,500에 달하고 마약 밀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베이 등 우회경로로 개당 1,610유로 가격으로 판매된다. 타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ID가 필요하고, 수신자의 디바이스가 켜져 있고 EncroChat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어야 한다. EncroChat 시스템 내 메시지 전송 시, EncroChat 서버를 통과하면서 메시지가 암호화되며 해당 메시지는 수신 휴대폰에서 복호화할 수 있다.

[그림 18] Encrochat의 암호 휴대전화 [그림 19] Encrochat 시스템 구동

통신은 EncroChat의 고객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암호휴대전화는 공식 유통망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고, 이베이와 같은 우회경로를 통해서 개당 1,610유로로 제공되었다. 이 가격에는 6개월 동안 사용자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르면 'EncroChat'라는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회사의 책임자를 알 수 없어 공식적인 회사의 소재지도 식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된 수사에서 프랑스 경찰은 EncroChat가 이용하는 서버를 알게 되었다. 프랑스 경찰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Virtue Imports의 Eric Miguel로 등록된 EncroChat이 사용하는 서버가 프랑스 북동쪽 루베(Roubaix)시에 있는 SaaS(software-as-a-service) 회사인 OVH가 운영하는 프랑스 데이터센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이버범죄 대응 중점 검찰청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검찰청은 마약범죄 혐의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2020년 6월 프랑스가 보유한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유럽수사명령(EIO: European Investigation Order)이 발동되었다. 독일에서는 프랑스 형사법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검찰청 등 사법당국에 EncroChat 시스템을 이용한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EncroChat 수사 시 확보한 디지털 정보 전달 허가를 요청하였다. 유로폴은 2020년 4월에서 2020년 6월까지

359)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41면.

EncroChat 서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프랑크푸르트인 검찰청에 제공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독일 영토 내에 존재했던 EncroChat 휴대폰 내의 기존 저장 데이터, 독일 영토 내에 존재하는 EncroChat 소프트웨어 관련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해당한다.[360] EncroChat 서버로 전송된 각 송수신 메시지의 전송 번호를 근거로 이동전화기지국의 지리적 위치를 특정하고 독일 지방검찰청에서 데이터 확보 및 형사소추를 담당하였다.[361] 사법기관의 수사 착수를 인지한 EncroChat은 2020년 6월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폐기를 지시하고 서버 운영을 급히 종료하였지만, 총기 165개, 탄약 3,400발, A급과 B급 마약 2톤, £7,500만 개가 압수되었고 [362] 합동 조사팀에 참여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도 다수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363] 2020년 12월 EncroChat과 관련된 2,600명 이상 체포 및 1,380명 이상 기소로 260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차후 EncroChat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유로폴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에서 6558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364]

(3) 시사점

EncroChat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진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365]프랑스는 형사소송법 내 조직범죄에 온라인수색 규정을 적용하고, 암호 해독 시 국방 비밀인 국가수단을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온라인수색은 “컴퓨터 데이터 캡처”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수단을 미공개하였다.[366]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논란을 야기하여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하였으나, 2022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367] 이후 2022년 프랑스 대법원은 데이터 캡처의 기술적 과정과 데이터 수집 진정성에 대한 기밀수단 인증서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368] 또한 프랑스가 제공한 EncroChat 데이터를 두고 영국인 2인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69]

영국은 2016년 수사권한법(IPA: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은 온라인수색에 관한 실무지침(EICP

---

360)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56면.
361)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57면.
362) zdnet, “영국 경찰, 보안 메신저 해킹…범죄자 수백명 체포”,2020.07.06. https://zdnet.co.kr/view/?no=20200706162004, (최종방문일 2023.12.04.)
363) Europol, "Dismantling of an encrypted network sends shockwaves through organised crime groups across",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dismantling-of-encrypted-network-sends-shockwaves-through-organised-crime-groups-across-Europe, (최종방문일 2023.12.03.)
364) EUROPOL, "Dismantling encrypted criminal EncroChat communications leads to over 6 500 arrests and close to EUR 900 million seized",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dismantling-encrypted-criminal-encrochat-communications-leads-to-over-6-500-arrests-and-close-to-eur-900-million-seized,(최종방문일 2023.12.03.)
365)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49면.
366)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47면.
367)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48면.
368) Cour de cassation, “RÉPUBLIQUE FRANCAISE AU NOM DU PEUPLE FRANCAIS”, F-D, n° 21-85.148, https://www.dalloz-actualite.fr/sites/dalloz-actualite.fr/files/resources/2022/11/21-85.148.pdf, 1-3, (최종방문일 2023.12.03.)
369) Doctrine, "CEDH, A.L. c. FRANCE et 1 autre affaire, 8 décembre 2021, 44715/20;47930/21", https://www.doctrine.fr/d/CEDH/HFCOM/COMMUNICATEDCASES/2021/CEDH001-214862, (최종방문일 2023.12.03.)

- 제5편 및 제6편 제3장 관련)에 온라인수색이 규정되어 있다.[370] 영국 법원은 EncroChat 데이터 수집 당시 전송 전후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 온라인수색으로 보았다.

독일은 온라인수색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수색은 특별히 중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를 특정 사실이 뒷받침하거나 타 방법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371]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프랑스의 EncroChat 수사가 독일 형소법상 온라인수색, 암호통신감청과 상응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EncroChat 데이터를 우연발견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372] 연방대법원도 유럽의 수사명령하에 전달한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373]

베를린 지방법원은 EncroChat 데이터 증거능력에 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 형소법상 프랑스 수사기관의 EncroChat 데이터 확보 시 명령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법관이었어야 했고, EncroChat 휴대폰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 이하 목록범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데이터를 수집한 수단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공개 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등의 이유였다.[374]

네덜란드는 수집한 데이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쟁점이 존재했다. 프랑스 사법기관이 입수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있었다. 데이터가 EncroChat 휴대폰 디바이스 내 저장 데이터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압수된 디바이스 내에서 복호화되어 저장된 메시지와 같은 것으로 판명되었다.[375] 다만 수사기관이 사용한 해킹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는데, EncroChat 휴대폰의 메시지 서비스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았고 EncroChat 이용 도중 발신 및 수신 통화가 혼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법원은 프랑스 사법기관이 수집한 EncroChat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376]

라. 인터폴의 인도네시아 피싱툴 판매사이트[377]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서비스형 피싱킷(Phishing-as-a-service, PaaS) 범죄 플랫폼을 개설하여 판매한 뒤 신용카드, 인증서, 로그인 등 주요정보를 탈취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피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A를 개설하였고,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피싱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판매하였다. 피싱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글로벌 IT기업 서비스의 이용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인증서, 로그인 등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결제 등에 활용하였다. 공범 A가

370) 김학경, 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 온라인수색 법제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74, 2022, 70면.
371) 박희영, 국가의 합법적인 해킹행위로서 온라인수색에 관한 독일 법제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9, 60면.
372)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58면.
373)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61-63면.
374) 박희영,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 2023, 66면.
375) J.J.Oerlemans, D.A.G. van Toor, “Legal Aspects of the EncroChat Operation: A Human Rights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Justice 30, 2022, pp.312.
376) J.J.Oerlemans, D.A.G. van Toor, “Legal Aspects of the EncroChat Operation: A Human Rights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Justice 30, 2022, pp.312-316.
377) 이 사건은 필자가 근무 중 수사한 사건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피싱범죄를 통해 일본 피해자들의 카드정보, 인증정보를 탈취하여 온라인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면 공범 B는 일본에서 해당 제품을 배송받고 현금화하여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 수사결과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은 2020년 새로운 사이버범죄 트렌드로 자리잡은 서비스형 피싱킷(PaaS) 범죄 플랫폼이 신규 사이버 범죄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게 사기 행위의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여 인터폴 협력파트너 보안기업에 해당 사이트와 운영자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보안기업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여 인터폴에 제공하였고,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은 가공·추적하여 운영자의 은행계좌, 가상자산지갑, 도메인 등록정보, SNS 계정 등을 확인하였다. 인터폴은 해당 정보를 관련 회원국들과 공유하였고, 특히 운영자의 소재지로 의심되던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건수사 개시를 요청하였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경찰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수사를 개시하였고 2022년 운영자를 체포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인터폴은 운영자 검거에 이어 사이트에서 피싱킷과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싱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 등을 탈취한 피의자 2명에 대해 인도네시아 및 일본 경찰과 지속해서 공조하였고 각국 내에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피의자 2명을 2022년, 2023년에 걸쳐 추가로 검거하였다.

(3) 시사점

인터폴은 2020년 오퍼레이션을 계획하고, 협력 보안기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회원국들과 공유하여 피싱툴 판매 사이트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자 검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과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관련한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제공받거나 인도네시아 수사관이 일본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야 했다. 각 나라의 수사 법제와 시스템이 모두 다르므로 국제공조 초기에 이를 이해하고 원활하고 빠른 공조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공조수사는 각 나라의 수사법제와 공조시스템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국제공조,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사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시사점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는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국제공조수사가 잘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이버범죄 수사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공조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의 전담조직과 권한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공조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검찰·법원의 권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요국과 국제공조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정례회의, 실무자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협력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간 깊은 신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법률적·실무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폴에 대한 프로젝트 펀딩을 통해서 회원국의 자발적 수사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터폴에 펀딩한 것을 계기로 다수의 불법 온라인 저작권 사범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사관이 직접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관할권 문제가 있어서 참여할 수 없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장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진출하여 증거 수집을 보조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를 수행에 있어서 글로벌 ISP,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도메인등록 대행사, 클라우드 업체, 가상자산거래소, 메신저업체 등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공문으로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제공조수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절 기술유출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시사점

1. 우선, 기술유출 수사기관으로서 대외적 위상 확립

특허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까지 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된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그간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제6조 제35호)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378]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제6조 제35의2호)에 대한 사법경찰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허청이 특허·영업비밀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2. 검찰·경찰의 역량 활용과 특허청 역량 강화 등 투트랙 전략 추진

가. 대검찰청·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역량 활용 방안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채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빠르게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검찰과 검찰 간 직접공조, 경찰과 경찰 간 직접공조, 해외 주재관 활용, 인터폴·유로폴(Europol)과 공조, 유엔범죄및마약연구소(UNODC)·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그몽그룹(Egmont Group)[379]과 협력, 글로벌ISP·금융기관·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력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대검찰청·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만큼, 해당

3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일부개정]의 제정·개정 이유

379) egmontgrop 홈페이지, https://egmontgroup.org/ (최종방문일 2023.11.14.)

기관과 공동수사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쌓는 한편,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교육훈련 참여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검찰청의 법무연수원이나 경찰청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위탁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역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부족한 특허·영업비밀 관련 법률 해석, 범죄 관련 과학·기술과 감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 특허청의 자체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

특허청이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경찰청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자체적인 역량 확충을 해야 한다. 즉,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전담인력의 배치, 주요국 특허·영업비밀 수사조직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정례 컨퍼런스 개최, 해외 대사관·영사관 파견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협력업무 부과, 형사사법공조요청서와 글로벌ISP와 공조를 위한 서류작성 교육,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해외 대사관·영사관에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제공조수사 지원을 공식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특허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강구하여 사업을 발굴하면 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영업비밀 수사역량 강화는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수립, 법제 정비, 건축, 시설장비 보급, 초청연수 등으로 구성하면서 관련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특허청이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하여 특허·영어비밀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가독성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정당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수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특허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특성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주요국과 개별적인 국제공조수사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찰청과 협력하여 인터폴과 교류방문을 정례화하거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주소와 관련하여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금융·가상자산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그룹(Egmont Group)과 협력도 필요하다. 또한 개별적으로 미국, 중국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와도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특허·영업비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영업비밀·특허침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므로 상대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기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미국의 국익과 기업의 손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동수사 형태로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컨택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국제공조수사가 용이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안이 통제를 하고 있어 국제공조가 쉽지 않고, 정치적·외교적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장 결 론

제1절 국제공조 체계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380]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 지역의 공간 및 시간 거리가 축소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형사사건도 국제화되고 있다. 각종 국제범죄와 국외도피사범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발생과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범죄수사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범죄는 한 국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술유출범죄 또한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범죄인 소재수사와 체포·구속, 범죄인 강제추방 및 범죄인인도에 대한 각국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송달과 증거조사 등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공조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이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조).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신병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범죄 진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한다.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의 체계는 ①국내법률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을 통한 국제공조, ②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양자·다자 간 조약을 통한 국제공조, ③인터폴이나 유로폴과 같은 경찰기구 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국제공조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공조체계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에 있어서 단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현재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공조수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법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원칙적으로 공조자료의 요청이나 송부를 외교경로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조범위가 비교적 넓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조약의 형태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조의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국가별로 설정할 수 있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인터폴 공조의 경우 주된 업무인 국외도피사범 수사 등은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용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되지만, 이는 경찰기구 간의 자발적 협력체계에 가깝기 때문에 의무적 효과를 발하기가 어렵다. 당해 범죄인을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것까지 이행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신병처리를 하고 있다. 형사사법 국제공조 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업무는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 방법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 기관의 원활한 협조 체제

380) 김기범, 최호진, “I-SOP 프로젝트 성과제고 방안 및 국제공조체계 로드맵 제언 - 인터폴 디지털저작권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76-79면.

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양 법집행기관이 사전 협조 없이 각각 독자적으로 송환업무를 추진한다면 시간적, 인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공조는 형식상 공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제공조요청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 다른 국가의 공조요청은 부가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자국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유출범죄와 관련된 국제공조수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체결 등 외교적 경로를 통한 장기적·정책적 접근(제2절)과 인터폴 등 수사기관 중심의 단기적·사안적 해결(제3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술유출범죄 국제공조 인프라 확충(제4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조약체결 등 외교 경로를 통한 장기적·정책적 접근

1. 개관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형사사법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공조가 가능하지만, 전통적인 외교채널 중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인도 조약 운영방식으로 국제수사공조를 할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조수사의 영역에서는 큰 제약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피요청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침해사건에 있어서 실효적 범죄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조약체결 등을 통한 전략도 국제공조체계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침해범죄 등 우리나라 법익에 대한 침해가 많은 국가나 우리와 국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조약체결을(양자 간 조약 또는 다자 간 조약) 통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조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한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작성, 워킹그룹 조직 등을 상설화한다면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와의 교류 증대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약체결과 같이 장기적 접근방법에는 다자 간 조약에 가입하는 방안, 주요국가와 조약이나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있다.

2. 다자 간 조약 가입 방안

기술침해범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다자조약으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있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간의 협업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형사절차 관련규정으로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통신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일부 제출, 제출명령,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제19조),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제20조 및 제21조) 등이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범죄인인도(24조), 자발적 정보제공(제26조), 기밀성과 이용제한(제28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확보, 확보된 통신사실데이터의 신속한 전달(제30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접근에 있어서 사법공조(제31조), 동의 또는 공적인 접근가능에 의한 컴퓨터 데이터의 초국경 접근(제32조), 통신데이터와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시 사법공조(제33조와 제34조), 일주일 24시간(24/7) 네트워크(제35조) 등 효율적이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형사절차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약에 가입할 경우 관련 국내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행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기술침해사건에 있어서 국제공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라 지역적 공조를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 이하 'SEAJu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2020년 3월에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월에 가입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모든 형태의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와 관련한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이른바 적극적 중재자(active intermediaries)라는 공식 연락거점(contract appoint)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체계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국가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체결 방안

미국의 저장통신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일명 CLOUD법)과 행정협정 체결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CLOUD법의 입법을 통해 통신영장의 효력 범위 제한을 해제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행정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국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보 통신회사로부터 직접 이메일 및 감청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CLOUD법에 따른 행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국내입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절차법적 측면에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CLOUD법에 따라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CLOUD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4. 치안협력약정

치안협력약정도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협력약정은 양국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조약·협약의 수준에 이르는 구속성은 없지만 양국 수사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공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른바 코리안데스크와 같이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 간 치안협력약정(MOU)을 체결하여 주재국 내 한국 관련 수사공조,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범죄인 송환 등 수사협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필리핀 간 치안협력약정(2007)과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2013)이 주요한 사례이다. 특허청(특사경)과 경찰청에서 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특정하여 기술유출범죄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수사절차와 방법을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FBI), 영국(NCA), 프랑스(사이버수사국), 네덜란드(NFI) 등 주요국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에서 대상 국가의 시·도경찰청과 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중국의 지방공안청과 협력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한 사례로는 올해 8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경찰청의 치안업무 협약에 따라 양 국가에 체류 중인 양 국가의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허청도 기술침해사건과 관련된 국제공조가 필요한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관련기관 간에 다각적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유출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노하우 및 수사 관련 정보의 공유, 수사기관 간의 인적·학술교류, 상호 초청 교육을 통한 수사전문성 및 노하우 제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침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국가에서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 등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비단 기술침해사건뿐만 아니라 상표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3절 인터폴 등 수사기관 중심의 단기적·사안적 해결

1. 개관

개별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폴 등 해외 유관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하에서는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과 각국의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2. 인터폴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회원국 경찰 간 국제협력을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조직이다. 인터폴은 자체 경찰력을 운영하지 않으며, 각국마다 경찰이 처한 치안 여건과 이에 대응한 법집행 활동은 다르며, 해외 경찰기구 간의 자발적 협력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집행의 강제성에 대한 담보는 어렵다. 하지만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에 있어서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의 실제적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송환과 국제수배는 실효성이 있다. 인터폴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기구에 대한 정책적·운영영역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폴 이용 국제협력 네트워크 적극적 확대는 필수적이다. 특허청(특사경)는 해외 주요국의 경찰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에는 인터폴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폴은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이 통신망인 I-24/7로 연결되어 있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381] 경찰청의 국가중앙사무국에 협조요청서를 보내 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 국제공조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비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청(특사경)에서는 인터폴을 이용할 경우 경찰청에 있는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Seoul)을 활용하는 것을 내재화 또는 시스템화 해야 한다. 외국의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초 연락은 반드시 우리나라 경찰청의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초 연결 이후에 구체적 공조활동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과 대상 국가의 경찰, 검찰, 기업 또는 특별사법경찰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이 A국가에 위치한 경우, 우리나라 사행성감독위원회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A국가에서 온라인 도박 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NCB가 A국가의 NCB에 공식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태국은 TCSD(Technical Crime Suppression Division)에서 온라인도박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때는

381)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 국제공조과 인터폴계에서 NCB SEOUL의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국제공조 요청과 국제공조 수사 대상은 NCB Seoul을 통해 대상국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태국의 경찰청(NCB Bangkok)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다음 TCSD 기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016년 사행성감독위원회 수사팀은 태국 방콕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진 수사를 위해 NCB Seoul을 통해 NCB Bangkok에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 정보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다. NCB Bangkok에서 TCSD를 연결해 줌으로써 사행성감독위원회 수사팀이 방콕에 출장을 와서 태국 TCSD와 함께 한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합동 단속해서 운영자를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한 사례가 있다.

각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이 인터폴을 통한 경찰 연결망의 기본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 기술적 또는 실제 공조수사 진행 단계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국가중앙 사무국이 공조에 협조할지는 현지 국가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국제공조요청을 시작함은 물론, 사건 수사가 계속 동안 계속해서 국가중앙사무국과의 연결을 이어가야 한다. 싱가포르는 인터폴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싱가포르 국가중앙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공식적 요청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공조의 첫 시작을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대상 국가의 특별수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대상 국가에서 공식적인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습도 쉽지 않다.

3. 외국 수사기관과 공동수사팀 구축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동수사팀 구축을 하는 방법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공동수사팀이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2개국 이상의 유관기관이 하나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수사팀의 활동기간, 구성 등 구체적 운용방안은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질 것이지만, 국제수사팀의 구성을 통해 수사 과정 및 증거 등을 공유하는 것은 획기적인 공조수단이다.

미국은 2003년 EU와 형사사법공조약을 체결하면서 EU의 형사사법공조체계에 있던 공동수사팀(Joint Investigative Team, JIT)제도를 EU와의 형사사법공조체계에 편입시켰다. 다른 예로 2015.6. 미국 마약수사국(DEA)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벨기에 수사당국과 공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마약수사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상 국제공동수사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향후 외국과의 관련 조약을 제·개정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수사팀은 2개국 이상의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제도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공동수사팀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 간 공동수사팀 구성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약 등에 그 근거 조항을 둔다면 집행관할권 충돌 문제, 증거능력 문제,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절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술유출범죄 단속 관련 상호파견제 도입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국제공조 수요가 많은 주요국과 협의하여 상호 수사관을 교차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유출범죄 단속을 위해서 대상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다른 특정범죄 단속을 위해서 파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허청과 경찰청이 협의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교차 파견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허청의 특사경이 대상 국가에 파견을 나가서 국제공조수사를 주도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사관 상호파견 제도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청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필리핀 내에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를 운영하고 있다.[382]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는 한국 경찰관이 필리핀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소속 현지 경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에 도피한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현지 추적 수사 및 탐문 수사에서 좋은 성과와 사례를 만들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온라인도박 지휘부와 살인 수배자 등을 현지에서 검거 송환하는데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들과 필리핀 현지 경찰 이민청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코리안데스크 업무협약과 별개로 베트남 국내법에 따라 한국 경찰관의 베트남 경찰청 직접 파견은 불가하여 베트남 경찰청 내에 베트남 경찰관으로 구성된 코리안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관련 사안에 대해 전담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에 한국 경찰관을 직접 파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찰청에서는 태국과도 코리안 데스크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범죄, 마약 등 특수한 범죄영역에 대해서 별도의 협력약정을 통해 파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찰청과 일본 경찰청에서 마약·조직폭력배 단속을 위해 교차하여 수사관을 파견하였고, 미국 FBI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경찰청(사이버수사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 수사관 파견은 해당 국가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실시간 국제공조를 진행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연락관 제도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연락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코리아데스크 모델은 연락관 제도의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락관 제도는 코리안 데스크보다도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제도이다. 연락관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독일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이 있다. 독일 연방수사청은 처음에는 연락관 제도를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하였지만, 최근 독일 연방수사청은 다른 많은 범죄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수사청의 연락관의 기능은 계속해서 조정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마약 연락관으로부터 업무 영

382)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우리나라 수사관의 경우에는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면책특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되지 않는다.

역이 확장되어 마약/OC 연락관, 테러/국가안보 연락관 또는 보통 연락관 등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연락관의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기존의 업무와도 구분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독일 연방수사청은 1998년 5월부터 'BKA 연락관'이라는 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수사청은 기본적으로 연락관에게 범죄예방 및 억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연락관은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지원 활동,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 기타 조사 관련된 활동 등 독일 경찰이 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4절 기술유출범죄 국제공조 인프라 확충

1. 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특허청 특사경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의 출발은 국내협력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다.

국제공조를 요청할 때에도 경찰청과 협력이 되어야 인터폴 채널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제공조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을 활용한 국제협력은 경찰청 국가중앙사무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과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무부와 검찰과도 협력도 중요하다. 기술침해사건과 관련된 주요 국가와 조약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공조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해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국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분석,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석 등을 지원하는 것을 수단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 경찰청의 기술유출범죄 대응 제도화[383]

특허청은 경찰청과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대한 대응과 경찰청 내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우선순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허청장과 경찰청장 간의 정례회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경찰청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에도 특사경이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범죄 공조수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채널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경찰의 역량의 도움을 받아 수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교육훈련 참여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383) 김기범, 최호진, “I-SOP 프로젝트 성과제고 방안 및 국제공조체계 로드맵 제언 - 인터폴 디지털저작권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73-74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위탁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역시 경찰청이 부족한 특허·영업비밀 관련 법률 해석, 범죄 관련 과학·기술과 감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국 수사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국외도피사범의 소재지 파악 등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활한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중앙당국 등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서 관련 기관 간의 직접적인 교류·소통도 중요하나 국제기구 등 포럼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 포럼의 대표적인 예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월드뱅크와 UNODC가 공동으로 창설한 자산회복기구(Stolen Asset Recovery, StAR), OECD 반부패실무그룹(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월드뱅크 청렴국 주관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Corruption Hunters Alliance, ICHA) 등이 있다. 국제공조와 관련된 특허청의 자체적인 역량 확충을 해야 한다. 즉,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전담인력의 배치, 주요국 특허·영업비밀 수사조직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정례 컨퍼런스 개최, 해외 대사관·영사관 파견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협력업무 부과, 형사사법공조요청서와 글로벌 ISP와 공조를 위한 서류작성 교육 및 경찰청의 협조구축망 확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해외 대사관·영사관에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제공조수사 지원을 공식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4. ODA 사업 활용, 개발도상국의 수사역량 지원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량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또는 UNODC, World Bank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프로젝트와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은 향후 개도국 대상 전문가 파견, 초청교육, 기자재 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범죄 국제공조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2019년에 태국에서 불법스포츠도박 피의자 검거 및 송환에 협조한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하여 컨퍼런스 참석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국내 초청연수는 문체부·경찰청에서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국제컨퍼런스 참석하거나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5. 주요국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국 수사기관과 직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 기반으로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개발도상국에서 소재하면서도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미국 등 주요국의 서버와 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청, 검찰청, 특별사법경찰, 기타 수사조직과 직접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형사사법공조, 관할권 논란, 피의자 추방·증거물인도, 공조요청국의 자국 내 수사참여 허용범위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검찰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특정 범죄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경찰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6. 주요국 이민청과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충한 이후에는 주요국의 이민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 출입국을 규제 관리하는 기관은 이민청이다. 일부 국가는 단순 출입국관리를 넘어 외국인이 대상 국가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까지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만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행위나 대상 국가 자국민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국제공조수사의 특성상 이민청과의 공조는 직접 수사기관과의 공조만큼이나 중요하다.

국제공조수사는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하고, 해외로 도주한 국외도피사범 수사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국외범행사범 수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유출범죄에 있어서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범행하는 범죄자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대상 국가에서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A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할 경우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대상국가 입장에서 범죄자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된다. A국가는 외국인인 한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국 내 체류를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체류 자격인 비자, 영구 거주 등을 취소하거나 비자 기간의 연장을 불허 또는 출국 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이민청 수사대에서 불법행위 외국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여 필리핀으로 도망한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이민청에서 별도의 수사대를 운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은 동남아 국가 및 중국 등 주요 국제공조 국가들의 이민청과 연락체계 및 유대 관계를 형성해놓은 상태로 우리나라의 다른 특별사법경찰 부서에서도 부처 간 협조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미국·유럽과 공동수사 및 국제공조 요청 병행

우리나라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상국가에게 소극적일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공동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대상국가는 기술유출범죄 단속에 대한 낮은 인식, 추적 및 증거확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가마다 범죄현황과 수사능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술에 해당 국가로 이전될 경우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의 공동성을 이해시켜 관련 국가도 해당 수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침해사건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실제 아동성착취물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경우에도 영국에서 수사착수를 하여 우리나라에 통보하였고, 이때 미국, 영국 등과 협력을 통해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국제공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384]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주도적 수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영역에서는 같은 피해국가로서 합동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국제공조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기에 미국의 수사기관과의 유대 강화는 필요하다.

8. 외교부·대사관(외교채널) 활용, 공조수사 요청

수사기관 간 직접공조나 인터폴공조를 통한 국제공조 요청에 대해 대상국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사관을 통해 국제공조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교부와 대사관을 통해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될 경우 대상 국가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대사관은 현지 국가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며 비엔나 국제협약에 따라 지위와 활동이 보장되는 외교 채널의 중심이다. 대사관의 의견 표시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것으로 현지 국가에서는 양 국가의 국익을 고려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상호 연결 체제이다. 현지 대사관의 관심과 협조는 현지 국가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보다 공식적인 무게를 실어 줌으로써 현지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좋은 기법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지 대사관과 직접 접촉하여 현지 대사관 명의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2015년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단속할 때 대사관에 주재하는 경찰 영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 단속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공문을 태국 경찰청과 상급기관에 발송하여

384) 미국의 조직 및 수사력을 바탕으로 환경범죄에 관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유통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 9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대규모의 목재 불법 수출이 발견되었을 때 나미비아 경찰은 현지 미국 대사관의 협력을 받아 채취된 목재의 유전자 검사 및 수출입 업자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사안에 관련이 없더라도 사건 공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 국제공조를 이끌 수 있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인터폴 국제공조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도로 대사관의 레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수사활동이 외교적 공식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법집행임을 재차 확인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타 동남아 국가들도 피의자 체포 등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별도의 협조요청 레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교민 등 한국인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를 통해 협조요청 문서를 생산한다.

레터는 현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사관의 공식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지 경찰이나 법 집행기관들이 영어로 된 문서를 다시 번역해야 하면서 걸릴 수 있는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직인을 통해 외교적 공식적 요청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9. 기술유출범죄 국제협력센터 신설

특허청(특사경)에서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국제공조 수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주요국의 수사관들을 국내로 파견받아 국제협력의 허브로 “기술유출범죄 국제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서 아시아지역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의 수사관을 상호파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상국가의 수사관을 우리나라에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유로폴에서 사이버범죄수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도 EU회원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공동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국제협력센터에서는 양국 또는 다국 간 기술유출범죄 실태조사, 공조수사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유출범죄 법제 및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손승우·조용순·임형주·홍승희·이형진·장준환·안상수, 산업보안법, 케듀아이, 2021

신상철, 외사경찰론, 박영사, 2019

윤태식, 부정경쟁방지법, 박영사, 202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박영사, 2013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국내외 자료】

AFFIDAVIT IN SUPPORT OF APPLICATION FOR SEARCH WARRANT, 2021.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 T-CY Guidance Note #10 - Production orders for subscriber information(Article 18 Budapest Convention), T-CY(2015)16, 1 March 2017

Daniel Rohlff, Der Europäischer Haftbefehl, Peter Lang, 2003

Harper, D. J., Ellis, D., Tucker, I. “Covert Aspects of Surveillance and the Ethical Issues They Raise.”, In Ethical Issues in Covert, Security and Surveillance Research 8

INTERPOL„「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2020

J.J.Oerlemans, D.A.G. van Toor, “Legal Aspects of the EncroChat Operation: A Human Rights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Justice 30, 2022

Jennifer Daskal, “Microsoft Ireland, the CLOUD Act, and International Lawmaking 2.0”, Stanford Law Review Online, Vol. 71, 2018

Martin Böse, in: Momsen/Bloy/Rackow(Hrsg.), Fragmentatisches Strafrecht, Pater Lang, 2003

Silke Nürnberger, Die zukünftige Europäische Staatsanwaltschaft - Eine Einführung, ZJS 5/2009

Stephen P. Mulligan, “Cross-Border Data Sharing Under the CLOUD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2018,

Tiffany Lin and Mailyn Fidler. “Cross-Border Data Access Reform: A Primer on the Proposed U.S.-U.K. Agreement”, A Berklett Cybersecurity publication,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2017

William S. Dodge,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n Two Steps”, AJIL Unbound, Vol. 110, 2016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WIPO publication No.489, 2004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4

_____, 국제공조수사메뉴얼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3권 제1호, 2019

구상엽, 국제카르텔 역외 형사집행방법론에 대한 소고-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14호, 2019

금융정보분석원, 2021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22
김갑래,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2014
김경찬·정진수·정군남,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5-AA-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김기범등,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브로커 대응강화방안연구, 경찰청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2
_____등,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1
_____,·최호진, I-SOP 프로젝트 성과제고 방안 및 국제공조체계 로드맵 제언 - 인터폴 디지털저작권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1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5-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김민수,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4호, 2023
김민이, 온라인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78호, 국회도서관, 2021
김성원·이환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김승영·정제용, 범국가적 산업기술유출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기술유출사건의 특성 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 가천법학 제12권 제4호, 2019
김진수·이준규, 기업인수·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태민·권헌영,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6호, 2021
김학경, 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 온라인수색 법제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74권, 2022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2
대검찰청, 2022 범죄백서, 2023
문채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 형식,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2005
민영성·강수경,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
박동균·이재호. 중국경찰의 조직구조와 제도적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제32권, 2004
박선욱,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제30호, 2020
박성수·이정훈,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경찰학연구 제9권 제2호, 2009
_____,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제78호, 2023
백범석·김유리, [판례평석]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백진현·조균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백혜영, 마약류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검사 및 통제배달 관련 판례 평석 -통관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81권, 2023
변성은,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유출대응 실무 가이드라인, 2006
선종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의 재검토, 가천법학 제7권 제3호, 2014

설민수,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원인: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송동수·허정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조 제70권 제4호, 법조협회, 2021
송영지,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7
신상철·임영호,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6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14, 2004
신현구,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1호, 2019
예상균,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2015
유주성,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
윤한성, 내부자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한 디지털 지적자산의 집중화 방안:I사의 추진사례, 산업혁신연구 제29권 제2호, 산업개발연구소, 2013
이규호,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22권 제1호, 2020
이동률·정건희, 개인파산절차와 체납자 출국금지, 서울법학 제28권 제3호, 2020
이세련, 가상자산과 테러리즘: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
이순옥,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15권 제1호, 2021
이영준등,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원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2023
이은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의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창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럽헌법연구 통권 제31호, 유럽헌법학회, 2019
이해원,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제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7권, 2019
이효진, 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아주법학, 법학연구소, 2019
임준태.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대응과 시사점 -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제64권, 2019
전현욱·탁희성등,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정대용·김성훈·김기범·이상진, 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7
정 웅, 산업보안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정유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조윤오, 외사경찰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2호, 2022
중국 공안부, 인민공안보(人民公安報)
중소기업 중앙회, 2018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2018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2018
지식재산위원회,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2022
진병동, 중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제5권 제2호, 2017
진재근, 산업보안과 산업기술유출 대응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및 독일을 중심으로,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제5권 제2호, 2021
최 관,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5

최동준, 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관련법의 기술 개념, 침해유형 및 법적 보호수단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통권 제72호, 2021
최익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_____등, 글로벌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과제(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21
하민경등,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5,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2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8
_____, 랜섬워어 악성코드 분석 기술 보고서 - 끝나지 않는 위협, '갠드크랩, 2019
_____, CLOP 랜섬웨어 암호기능 분석 보고서, 2019
_____, 최신동향보고서_Clop 랜섬웨어 유포에 따른 감염 주의.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기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UNODC에 지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한종수, EU의 내적 안전과 유로폴, 유럽연구 제26권 제3호, 2008
허 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58호, 2018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 제54권 제8호, 2005
홍성삼, 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2015
홍영선, 권헌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2021

【보도자료】

Cour de cassation, "RÉPUBLIQUE FRANCAISE AU NOM DU PEUPLE FRANCAIS", F-D, n° 21-85.
Doctrine, "CEDH, A.L. c. FRANCE et 1 autre affaire, 8 décembre 2021
DOJ, 2017.05.01. "Florida Man Sentenced to Prison for Engaging in a Child Exploitation Enterprise "
____, 2019.10.16. "South Korean National and Hundreds of Others Charged Worldwide in the Takedown of the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Website, Which was Funded by Bitcoin"
EUROPOL, "Major online child sexual abuse operation leads to 368 arrests in Europe"
_____, "Dismantling encrypted criminal EncroChat communications leads to over 6 500 arrests and close to EUR 900 million seized"
_____, "Dismantling of an encrypted network sends shockwaves through organised crime groups across Europe."
_____, Five affiliates to Sodinokibi/REvil unplugged,
FBI, 2015.04.30. "Kolon Industries Inc. Pleads Guilty for Conspiring to Steal DuPont Trade Secrets Involving Kevlar Technology"
____, 2021.11.05. "Jury Convicts Chinese Intelligence Officer of Espionage Crimes, Attempting to Steal Trade Secrets"
____, 2017.05.05. "'Playpen' Creator Sentenced to 30 Years, Dark Web 'Hidden Service' Case Spawned Hundreds of Child Porn Investigations"
INTERPROL, 2021.11.08. "Joint global ransomware operation sees arrests and criminal network dismantled"
NEWSIS, 2023.07.31. "경기불황에 '돈벌이' 해킹 늘었다…상반기 침해사고 40% '껑충'"
Securityaffair, 2017.09.09. "FBI masqueraded the NIT in a video-bait to unmask sextortionist on

Tor”
SBS, 2023.07.04. “[스프] '마약 온상'이 된 텔레그램, 추적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zdnet, 2020.07.06. “영국 경찰, 보안 메신저 해킹…범죄자 수백명 체포”
_____, 2021.06.09. “FBI 최첨단 함정수사…가짜 메신저 앱으로 일망타진”.
경찰청, 2014.11.14. “판돈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
_____, 2019.10.16. “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 한·미·영 등 32개국 공조, 운영자 · 이용자(310명) 검거 ”
_____, 2021.03.10.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자 검거, 구속”,
_____, 2021.10.16. “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_____, 2022.11.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_____, 2023.03.14.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_____, 2023.09.18. “경찰청 조직재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_____, 2023.09.25., ”최신 산업 기술 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 -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수법에 대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_____, 2022.11.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_____, 정보공개청구 자료.
경북지방경찰청, 2020.10.18., “OLED 패널 기술 빼돌려 중국업체로 이직한 국내업체 직원 검거 구속”
관세청, 2022.09.20.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_____, 2023.07.18. “관세청, 마약 주요 공급지 현지 단속으로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 전환”
금융위원회, 2014.05.26.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준의 이행과 FIU의 발전을 선도”
대검찰청, 2022.10.27. “국제안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수사 대응체계 강화”
_____, 2023.02.17. “기술유출 수사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_____, 2023.11.03.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동아일보, 2022.02.04. “[단독]GM-포드, 韓 배터리 합작사에 기술공유 요구”
_____, 2023.06.07. “[단독]현지정부서 기술 요구, 해외인력 이탈… 곳곳에 기술 유출 구멍”
문화체육관광부, 2023.12.05.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매일신문, 2023.05.03. “부산경찰청, 국내 방송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2023.01.31.“대한민국 법무부,「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가입”
_____, 2023.04.26. “법무부,「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총회 서울 개최”
부산경찰청, 2023.04.26.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조직 검거”
조선일보, ““923억원 내놔라” 랜섬웨어 해킹에 TSMC도 당했다”, 2023.7.3.,
_____, 2022.08.26.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
_____, 2023.08.20. “최근 7년간 국가핵심기술 39건 유출... 반도체 최다”
채널A, 2023.10.03. “[단독]경찰 “‘기술유출’해도 강력범처럼 적색수배”
파이낸셜뉴스, 2008.07.04. “檢 ‘하이브리드 기술유출 의혹’ 쌍용車 압수수색(종합)”
한국일보, 2023.05.17. “중국 헤드헌터, 삼성·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 한국 인력 빼가려 '호시탐탐'”

【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01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대법원 2022. 6. 16. 2018도51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라2004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7.6. 선고 2020토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1고단17, 2021고단2024(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고단5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7822 판결

【미국 연방법원 판례】

E.I. DU PONT DE NEMOURS COMPANY v. KOLON INDUSTRIES, Civil Action No. 3:09cv58 (E.D. Va. Apr. 27, 2011)
Microsoft Corp. v. AT & T Corp., 550 U.S. 437, 454, 127 S.Ct. 1746, 167 L.Ed.2d 737 (2007).
Microsoft Corp. v. United States,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 Supp. 3d at *467 (S.D.N.Y. 2014).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010).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136 S. Ct. 2090 (2016).
U.S. v. Dimson et al. (N.D. Ga 2006.)
US v. Ibrahim Dimson et al., case number 1:06-cr-00313, District Court, N.D. Georgia
US v. Yanjun Xu, 1:18-cr-043 (S.D. Ohio Nov. 5, 2022)

기술유출 · 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인 | 특허청장 이 인 실

발행처 | 특허청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기술유출 · 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http://www.kipo.go.kr

ISBN : 979-11-6884-173-4 13500
DOI : 10.8080/P9791168841734